

월간

재정포럼

2024. April
Vol.334

04



권두칼럼

재정정보 문해력
제고를 위한 제언
| 김완희

현안분석

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를 중심으로
| 김빛마로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 정다운

정책연구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2025회계연도 대통령 예
산안 발표 외

Kipf

재정포럼

2024.04. Vol.334

월간 재정포럼 2024년 4월호 통권 제334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044) 414-2137 홈페이지 www.kipf.re.kr

CONTENTS

권두칼럼

02 재정정보 문해력 제고를 위한 제언 | 김완희

현안분석

08 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중심으로 | 김빛마로

33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 정다운

정책연구

58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61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66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

71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76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

83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을 활용한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체계 변화의 효과 분석

88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교육과 보건을 중심으로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94 미국 - 2025회계연도 대통령예산안 발표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재정정보 문해력 제고를 위한 제언



김완희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장

디지털 시대, 문해력의 필요성

디지털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정보의 양은 넘쳐나지만 정작 쓸 만한 정보는 부족하거나 심지어 가짜 정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정보 부족 문제는 필요로 하는 정보가 실제로 없거나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있는 정보를 찾아내지 못해서 발생한다. 가짜 정보 문제는 디지털 매체에 대한 과도한 신뢰와 검증 능력 및 노력이 부족해서 나타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디지털 문해력(Digital Literacy)을 높여야 할 것이다.

국가결산보고서의 한계와 재정정보의 실질적 활용

전 세계적으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의 비중 및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재정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금부담의 증가에 상응하여 납세자인 국민들의 정보 수요도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정부 ‘열린 재정’, 지방정부 ‘지방재정365’ 등을 통해서 다양하고 신속한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라 살림살이인 재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보는 국가결산보고서이다. 별책인 중앙관서별 보고서를 제외하고 중앙정부 전체의 통합 정보만으로 약 1,5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주요 내용은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2018년 회계연도부터는 핵심 정보와 그래프를 중심으로 25페이지 분량의 결산요약서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 조회수는 2018년 93회, 2019년 119회, 2020년 388회, 2021년 857회로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정보의 중요성에 비하면 이용률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다.

결산요약서의 첫 페이지에는 일반 국민들의 주요 예상 질문과 답을 찾을 수 있는 정보원천을 제시하여 기대감을 한껏 높여주고 있다.

국가가 거둬들인 돈은 얼마이고, 쓴 돈은 얼마일까?: 세입 및 세출
 돈이 어디에서 마련되고 또 어떻게 쓰였을까?: 세입 및 세출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었을까?: 기능별 세출 추이
 기금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쓰였을까?: 기금 결산
 국가는 살림살이를 잘 했을까?: 재정수지(통합 및 관리)
 재무제표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요약
 국가의 자산 및 부채는 얼마일까?: 재정상태표
 국가의 수익과 비용은 얼마일까?: 재정운영표

그러나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질문의 내용이다. 재정은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가, 향후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은 어느 정도인가, 재정운영의 세대 간 공평성은 어떠한가, 공공서비스의 질과 양은 충분하고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있는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지속가능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지출 규모와 효과는 무엇인가 등 국민의 공통적인 혹은 현안인 관심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

둘째, 발생주의를 적용한 국가재무제표의 의미를 기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상태표는 국가 자산과 부채의 단순 목록이 아니다. 국가는 담세력과 발권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민간기업과 같이 부채비율을 계산해서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보다는 국가의 자산과 부채의 차이인 순자산의 양(+), 음(-)이 핵심 요약 정보로 재정운영 결과의 장기적 건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부채는 재정수지 적자의 결과로 누적된 채무(debt)는 물론, 미래의 연금상환 의무 등 각종 보증부채 등을 망라한 재정의 중장기적인 실질 부담을 보여준다. 이러한 부채로 조달된 자원이 향후 활용가능한 자산으로 축적되어 있으면 순자산은 증가할 것이고, 소비성 지출로 이어졌다면 순자산은 감소하게 된다. 국가의 재정운영표는 민간기업에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이

나라 살림살이인 재정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정보는 국가결산보고서이다. 별책인 중앙관서별 보고서를 제외하고 중앙정부 전체의 통합정보만으로 약 1,5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따라서 국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얼마의 자원을 사용하였는지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보여주는 정보는 세입과 지출이 아니라 발생주의 비용 정보인 것이다.

의 혹은 손실이 났는지를 보여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재정의 수익과 비용은 상호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독립적인 활동이다. 민간기업에서는 상품과 용역을 생산(비용)하고 이를 판매(수익)하는 직접 연계 활동이 수행되지만 재정은 세금의 징수(수익)와 공공서비스의 제공(비용)과는 무관하다.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따라서 재정에서 두 항목을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국가 재정의 비용은 국가의 공공서비스 제공활동을 화폐금액으로 요약한 것이다. 수익은 현금주의 세입과 기금 수입의 합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비용은 세출과 기금지출의 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비용은 해당기간에 실질적으로 사용된 경제적 자원의 양을 측정하는 반면에 세출과 지출은 현금자산의 지출만을 측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가가 100억원의 건물을 취득하고 1년간 사용하였을 경우, 비용은 1년간 국가가 상용한 건물의 경제적 자원량(예를 들어 건물을 20년간 사용할 계획이라면 매년 5억원)을 기록한 반면 세입과 지출은 건물 취득 시 지급한 건물이 전체 100억원을 기록할 것이며, 만일 유휴 국유지와 교환으로 건물을 취득하였다면 어떤 기록도 남길 수가 없다. 따라서 국가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얼마의 자원을 사용하였는지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보여주는 정보는 세입과 지출이 아니라 발생주의 비용 정보인 것이다.

재정 건전성과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정보의 중요성과 한계


현금주의 세입세출·수입지출 정보는 예산 혹은 기금운용계획에 맞게 자원이 확보되고 집행되었는지의 적법성을 판단케 하는 매우 협의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담보하는 정보이며, 국민의 궁극적인 질문인 재정건전성과 공공서비스의 효과성 및 효율성은 발생주의 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적연금의 장기전망에 대해 상세 정보를 알고 싶으면 2022년 국가결산서의 1,234페이지부터 1,435페이지에 수록된 국가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인 연금보고서를 찾아보면 된다. 1,238페이지에는 공무원연금의 보전금 즉, 연금의 자체재원이 부족해서 국가재정이 부담한 금액의 추이가 나온다. 2013년 1조 9,982억원에서 2022년 4조 4,451억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인 미래연금부담액인 연금충당부채 9조 3,970억원은 현재 재직자 해당분 5조 5,450억원

과 퇴직수급자 해당분 3조 8,52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재직자는 매년 근무연수가 증가할 때마다 자동적으로 해당금액이 증가하고 퇴직수급자는 기대 여명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구조이므로 공무원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사학연금의 경우에도 국가결산서 1,373페이지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29년에 최초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2050년 기금잔액이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다. 국가결산서 1,428 페이지의 국민연금보고서에 기금적립금은 2041년 1,778조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불과 15년만인 2057년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되어 있다. 부과방식을 적용할 경우 2025년 소득 대비 국민연금부담비율은 7.1%에서 2055년에는 23.3%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가늠하려면 각 부처가 제공하는 성과보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매 3년 단위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를 제시하고 그 달성정도를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있는 중요한 정보원천이다. 공공서비스 수혜자 수, 만족도, 공공시설 공정률, 이용도 및 만족도 등이 대표적인 지표이다. 그런데 문제는 가성비(價性比)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궁극적인 효율성은 투입자원의 금액 대비 결과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는 전무하다.

납세자 중심의 정보 제공을 통한 재정정보 문해력 강화

재정정보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인 국민 개인 혹은 법인 등 납세 주체가 보다 이해하기 쉽고 실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확보 활동과 관련하여 국가가 총액으로 세목별 얼마를 징수 하였는가를 제공하는 것은 완전히 공급자의 시각이다. 납세주체별로 세금, 부담금, 사회보험 등 각종 명목으로 공적 부조에 얼마를 기여하였으며 보조금, 보험금 등으로 직접적인 수혜 금액은 얼마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요자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서비스 생산 제공 활동과 관련하여 기능별, 성질별로 총액을 제시하는 것 역시 공급자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다. 성과보고서의 지표와 결합하여 공공서비스의 단가(單價)를 공개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본격적인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정정보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이용자인 국민 개인 혹은 법인 등 납세 주체가 보다 이해하기 쉽고 실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안분석

+ 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중심으로

김빛마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전자적 영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정다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01

조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중심으로¹⁾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bmrkim@kipf.re.kr

1. 서론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촉진’으로 구분된 조세지출액은 약 2조 3천억원(2022년 실적 기준)이며, 2024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행,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의 영향으로 그 규모가 5조 8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기업의 투자·고용 촉진 등 민간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제시된 바 있어, 기업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현재, 투자금액의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가속상각을 허용하는 설비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제도 등이 기업 투자에 대한 대표적인 조세지원제도로 운용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투자에 대한 지원의 성격은 아니지만, 일부 규모가 큰 기업²⁾이 환류하지 않은 소득(미환류소득)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 고용 및 상생 관련 지출을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역시 운용하고 있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는 해외 주요국에서도 자주 관측되는 데 반해, 투자 등 기업의 특정 행위가 ‘충분히’ 이루어

1) 본 원고는 ‘김빛마로·홍병진·홍용기, 『기업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성 연구』 2023(발간 예정)’의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2) 202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만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며, 제도 연혁 등 보다 상세한 설명은 제 II 장에 제시되었다.

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과세하는 형태의 제도는 그 비슷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일종의 페널티를 통해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가 기업 투자를 유의미하게 증대시키는데 대한 실증 연구는 많지 않다.³⁾ 특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지속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⁴⁾이 있는 만큼 해당 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및 해당 제도의 전신으로 볼 수 있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 후, 조세 원칙에 근거하여 해당 제도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원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제도 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고, 제Ⅲ장에서는 분석출처에 대해 소개한 후 실증분석 방법 및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II. 제도 개요 및 연혁

1. 제도 개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임금증가 등으로 지출되지 않은 기업소득에 추가 과세함으로써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로 최초 도입되었으며, 2018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제도 명칭과 내용이 변경되었다.⁵⁾

제도 적용 대상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의 형태로 환류된 금액이 해당 기업 소득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 2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추가 법인세를 과세하며, 기업은 ‘투자 포함형’과 ‘투자 제외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투자를 포함하는 기업의 경우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금액의 합계가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α) 이상이어야 추가 과세되지 않으며, 투자를 제외하는 기업의 경우 임금증가 및 상생협력 금액의 합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β) 이상이어야 추가 과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비율 α , β 는 「법인세법」에 상한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율은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2024년 현재 α 는 70%, β 는 15%로 설정되어 있다.

특히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에 대해서는
제도의 지속 여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해당 제도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3) 동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한 연구로는 김학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개발연구원, 2020. 등이 있다.

4)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제도를 2022년 12월 일몰종료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도를 3년 더 연장하되 제도 적용 대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한정하는 안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5)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법인세법」(제56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조특법」(제100조의32)에 규정된 별도의 제도이지만 사실상 동일한 제도를 변경하여 유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투자, 임금증가 등으로
지출되지 않은 기업소득에
추가 과세함으로써
기업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이다.

A(투자 포함)형: 추가세액=[기업 소득×0.7- (투자×임금증가+상생)]×0.2

B(투자 제외)형: 추가세액=[기업 소득×0.15- (임금증가×상생)]×0.2

투자는 유형 및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⁶⁾을 의미하며, 임금증가는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 환류액, 청년정규직 근로자 임금증가 환류액, 정규직전환 근로자 임금증가 환류액의 합계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증가 환류액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 또는 같은 경우의 환류액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임금증가액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의 임금증가 환류액은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의 50%, 신규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의 100%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청년정규직 임금증가 환류액은 청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되며 환류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이다. 또한 정규직전환 근로자 임금증가 환류액은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며 해당 환류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이다.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은 ①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출연금상생협력 출연금 ②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③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대출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 ④ 은행·신탁업자가 중소기업 등 보증·대출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출연금 등의 합계액이며 해당 금액의 200%를 가산(300% 가중치 적용)하여 상생 환류액을 계산한다.

제도 적용 대상은 2022년까지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었으나 202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2. 제도 연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전신 제도인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고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상

6) 투자액은 사업용 유형자산(기계장치 등) 및 무형자산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취득액이다. 유형자산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업무용 건물의 신·증축 건설비 및 신·증축용 토지 등이, 무형고정자산은 개발비, 특허권·상표권·광업권 등이 포함된다.

생협력축진세제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지속적으로 일몰연장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2015년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후 주요 변경사항을 소개한다.

2015년에는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단일세율 10%로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법인세법」 제5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하였다.⁷⁾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며, 과세방식은 기업·업종별로 투자소요가 다양한 점 등을 감안하여 기업들이 특성에 맞춰 투자 포함형과 투자 제외형 중 하나를 선택(최초 선택 3년간 계속 적용)하도록 하였다.

A(투자 포함)형: 추가세액=[기업소득×0.8-(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0.1

B(투자 제외)형: 추가세액=[기업소득×0.3-(임금증가+배당액 등)]×0.1

2016년에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15~29세의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임금증가액 계산 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변경사항이 도입되었다.⁸⁾ 청년상시근로자의 근로소득증가액은 50% 가산하여 임금증가액에 반영되며, 그 외 근로자의 근로소득증가액(임원, 고액연봉자 등은 여전히 제외됨)은 별도의 가산 없이 임금증가액에 그대로 적용된다.

2017년에는 기업소득이 투자와 임금증가 중심으로 환류되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부 변경하였다.⁹⁾ 과세방식 선택 후 3년간 유지해야 했던 조항을 수정해 투자 제외형에서 투자 포함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또한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직원의 근로소득 증가액을 50% 가산하여 임금증가액에 반영하도록 하여 기업의 고용 인원 증대에 대한 유인을 확대하였으며 벤처기업에 신규출자한 금액도 투자액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반면 배당액에 대해서는 0.5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기업의 배당 유인은 축소하였다.

2018년에는 기업의 투자·고용·상생협력에 대한 유인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일몰종료하고 투자·상생협력축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를 신설하였다.¹⁰⁾ 적용 대상은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와 동일하게 유지(중소기업 제외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

투자·상생협력축진세제의
전신 제도인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2015년
세법개정을 통해
신설되었고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투자·상생
협력축진세제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 지속적으로
일몰연장되고 있다.

7) 「법인세법」 제56조로 2014년 12월 23일 신설
8)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로 2016년 2월 12일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로 2017년 2월 3일 개정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로 2018년 2월 13일 신설

기존 제도에서는 배당을 통해서도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었으나 신규 제도에서는 투자, 임금증가, 상생 관련 지출을 통해서만 추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집단에 속하는 법인)하였으며 과세방식도 투자 포함형과 투자 제외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다만, 기존 제도에서는 배당을 통해서도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었으나 신규 제도에서는 투자, 임금증가, 상생 관련 지출을 통해서만 추가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추가과세 세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인상하였다. 다만, 세율이 인상되고 배당 금액을 제도에서 제외하면서 기업의 추가 과세부담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소득 조정계수(α , β)는 각각 80%와 30%에서 65%와 15%로 하향 조정하였다.

A(투자 포함)형: 추가세액=[기업소득×0.65-(투자+임금증가+상생)]×0.2

B(투자 제외)형: 추가세액=[기업소득×0.15-(임금증가+상생)]×0.2

또한 기업소득 산정 방식에도 몇 가지 변경사항이 도입되었다. 먼저 개별기업 기업소득 중 3천억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적격 투자금액에서 기존 업무용 부속토지는 제외하였다. 또한 투자회사¹¹⁾ 등의 경우 배당소득 공제액을, 외국기업지배주회사¹²⁾는 해외자회사 배당수익을 각각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중·저소득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임금증가에 대한 가중치 및 적용 대상도 조정하였다. 먼저, 환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연봉자의 임금 기준을 기존 1억 2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에 추가로 가산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청년정규직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적용되는 청년정규직 임금증가 환류액,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정규직전환 근로자 임금증가 환류액도 2018년에 최초 도입되었다. 또한 상생협력출연금의 가중치를 기존 1에서 3으로 상향하였다. 상생협력출연금의 범위도 확대하여 은행·신탁업자가 중소기업 등 보증·대출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합회)에 출연하는 출연금을 포함하도록 변경하였다.

2019년에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 중 본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중소기업뿐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¹³⁾ 또한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받는 기업의 기업소득 합계액 3천억원 초과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다.¹⁴⁾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등
 1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항 1. 외국법인 주식 등만 보유하고 자산총액의 50% 이상 보유 2.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 등
 1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9년 2월 12일
 14) 연결집단 내 개별기업의 과세대상 기업 소득 계산 방법은(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개별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연결법인의 기업소득의 합계액). 또한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 초과 시 3천억원으로 간주하고 개별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및 연결법인의 기업소득의 합계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책정

<표 1>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대상 및 과세방식 변화

구분	적용 대상	과세방식
2015년	중소기업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법인	㉠ [기업소득×80%- (투자+임금증가+배당액 등)]×10% ㉡ [기업소득×30%- (임금증가+배당액 등)]×10%
2016년		
2017년		
2018년	중소기업,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기업소득×65%- (투자+임금증가+상생)]×20% ㉡ [기업소득×15%- (임금증가+상생)]×20%
2019년		
2020년		
2021년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 [기업소득×70%- (투자+임금증가+상생)]×20% ㉡ [기업소득×15%- (임금증가+상생)]×20%
2022년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주: 1. 연도는 사업연도 기준

2. 2015~2017년 사업연도는 기업소득환류세제, 2018년 사업연도 이후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적용

3. '임금증가'와 '상생' 등 금액에 적용되는 가중치는 본문을 참조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각 연도; 국세청,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2020년에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기업 중 본 제도의 적용제외 대상에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뿐 아니라 유동화전문회사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¹⁵⁾

2021년에는 투자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환류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포함형인 과세방식 ㉠의 α를 기존 65%에서 70%로 상향하는 한편, 초과환류액의 이월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연도별 투자금액 변동성 등으로 인해 추과 과세되는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환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연봉자의 임금 기준을 기존 7천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2022년에는 기업소득 차감항목을 보완하였다. 기존에는 60%의 한도를 적용한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였으나, 개정을 통해 60%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인세액과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차감 방식도 변경하였다.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였다.

2023년에는 적용 대상을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제외한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으로 축소하였다.

15)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12월 31일 개정

도입 2년 차인 2017년 신고연도에 추가 세수입이 4,279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과세액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과세 실적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조세지출이 아닌 추가 과세를 하는 제도이므로 조세지출예산서나 국세통계연보에서 별도의 출처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해당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한 김학수(2020)는 당시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내부출처를 통해 동 제도를 통한 추가적인 세수입 규모를 제시(<표 2> 참고)하고 있다. 도입 첫 해인 2016년 신고연도에는 제도로 인한 추가 법인세액이 533억원으로 크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미환류소득이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된 결과로 보인다. 제도 설계상 차기환류대상으로 적립된 미환류소득이 다음 사업연도까지 환류되지 못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도입 첫 해의 과세실적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반면 도입 2년 차인 2017년 신고연도에 추가 세수입이 4,279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 과세액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의한 추가세수 추이

(단위: 억원)

구분	기업소득환류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추정)
법인세	533	4,279	7,191	8,530

주: 연도는 신고연도 기준

출처: 김학수,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020.

- 16) 연구에 사용된 한국평가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도움을 주신 장우현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1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공정거래위 기업집단 포털 출처를 참조하여 식별하였다(<https://www.e-group.go.kr/egps/wi/stat/kap/psitnCmpnySummaryList.do>).
- 18) 본 연구에서 활용한 기업재무출처에서는 독립 기준 등 관계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기업의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 및 자산 기준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별하였다.

Ⅲ. 분석출처 및 실증분석

1. 분석출처¹⁶⁾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기업재무출처를 활용하였다. 기업재무출처에서는 기업별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고내역을 포함한 과세 관련 정보는 관측할 수 없으나, 상세한 기업 기초 및 재무정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분석 대상 제도의 적용 요건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¹⁷⁾ 자기자본 금액 등 변수를 기업재무출처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구분¹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분석 기간은 2015년에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2018년에 도입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13~201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분석 표본으로는 데이터상 각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 제도 적용 기업과 ‘유사’한 기업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인 처치군과 대조군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한다.

분석 기간은
2015년에 도입된
기업소득환류세제와
2018년에 도입된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2013~2019년까지로
설정하였다.

2. 주요 변수 구축 및 실증분석 전략

가. 변수 구축

1) 기업 투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기업 투자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변수를 사용한다.

$$\begin{aligned}
 TA_{i,t} &= \frac{\text{유형고정자산투자 증가액}_{i,t}}{\text{총자산}_{i,t-1}} \\
 &= \frac{\text{유형고정자산}_{i,t} - \text{유형고정자산}_{i,t-1} + \text{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_{i,t}}{\text{총자산}_{i,t-1}}
 \end{aligned}
 \tag{1}$$

$TA_{i,t}$ 는 대부분 선행 연구에서 기업 투자로 고려하는 유형고정자산투자이며, 시점 $t-1$ 부터 시점 t 까지의 유형고정자산투자 증가액을 시점 $t-1$ 의 연말 총자산의 크기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유형고정자산투자 증가액은 재무상태표의 유형고정자산의 변화에 현금흐름표상의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를 더하여 계산한다. 또한, 이철인(2020) 등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로그 자본량 변화 ($\Delta \ln(K)$)¹⁹⁾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회귀모형도 고려하였다.

2) 통제변수

(i) 법인세 비용

투자 관련 조세제도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세 관련된 부분을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법인세와 관련된 변수를 아래와 같이 고려할 수 있다.

19) 자본 감가상각률을 무시할 경우, $\Delta \ln(k) \approx \frac{\Delta K}{K_t} \approx \frac{I}{K_t}$ 의 관계가 성립한다.

투자 관련 조세제도의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법인세 관련된 부분을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법인세와 관련된 변수를 다음과 같이 고려할 수 있다.

$$\tau_{i,t} = \frac{\text{법인세비용}_{i,t}}{\text{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_{i,t}} \quad \text{식(2)}$$

여기서 법인세비용 $_{i,t}$ 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_{i,t}$ 는 기업 i 의 시점 t 에 발표한 손익계산서 상 계정을 의미하며, 법인세납부액 $_{i,t}$ 는 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세납부(환급)액을 의미한다.²⁰⁾

(ii) 현금(Cash)

현금 보유가 높거나 현금 흐름이 많을수록 자금 조달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Almeida, Campello and Weishach(2004)).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고려한다.

$$\begin{aligned} \text{Cash}_{i,t} \text{ 또는 } & \frac{\text{Cash}_{i,t}}{\text{총자산}_{i,t}} \\ \text{CashFlow}_{i,t} \text{ 또는 } & \frac{\text{CashFlow}_{i,t}}{\text{총자산}_{i,t-1}} \end{aligned} \quad \text{식(3)}$$

$\text{Cash}_{i,t}$ 는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며, $\text{CashFlow}_{i,t}$ 는 현금흐름표상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과 감가상각비를 합한 값을 의미한다. 총자산 대비 현금 또는 현금 흐름의 비율을 살펴보는 이유는 전체 자산 대비 내부 자금의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함이다.

(ii) 부채비율(Leverage Ratio)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부도확률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외부 자금 조달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상태표의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나누는 값을 활용한다.

$$\text{Leverage}_{i,t} = \frac{\text{총부채}_{i,t}}{\text{총자산}_{i,t}} \quad \text{식(4)}$$

(iv) 기업 업력(Firm Age)

기업 업력이 짧을수록 외부 자금 조달 시 정보비대칭 비용(Information Asymmetry Costs)이 큰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재무정보에서 할

20) 법인세 비용의 경우, 결손금의 소급공제 및 이월공제로 인하여 음(-)의 값이 나올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자료상 음(-)의 값을 가진 법인세 비용 변수가 계산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실증분석에서는 법인세 관련 변수에서 음(-)의 값을 허용하였으며, 0-1 절삭으로 변수 정의를 바꾸어도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용할 수 있는 기업 업력을 사용하여 재무적 제약의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Rauh(2006); Fee, Hadlock and Pierce(2009)).

(v) 혼합지표: Whited-Wu 지수

위에서 제시한 변수들은 재무적 제약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이지만 각 변수가 기업이 가지는 재무적 제약을 종합적으로 대리하기 어렵고, 해당 변수가 다른 함축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Kaplan-Zingales, Whited-Wu, Hadlock-Pierce와 같은 다양한 혼합 지표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혼합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재무적 제약과 관련된 지표를 하나로 고정하여 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hited and Wu(2006)에서 제안한 Whited-Wu(*WW*) 지수를 활용하였다. *WW* 지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WW_{i,t} = -0.091 \times \frac{CashFlow_{i,t}}{TA_{i,t}} - 0.062 \times DD_{i,t} + 0.021 \times Leverage_{i,t} - 0.044 \times \log(TA_{i,t}) + 0.102 \times ISG_{i,t} - 0.035 \times SG_{i,t} \quad \text{식(5)}$$

여기서 $DD_{i,t}$ 는 배당발행 여부를 알려주는 더미변수, $SG_{i,t}$ 는 기업 i 의 매출액 성장률, $ISG_{i,t}$ 는 기업 i 가 속한 산업의 매출액 성장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WW* 지수가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적 제약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Whited-Wu 지수의 장점은 주시가격을 파악할 수 없는 비상장기업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본시장에서 평가하는 기업 가치와 관련된 요소가 지표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다.

나. 제도변화 및 식별전략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각 제도가 도입된 정책 변화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첫 번째로, 2015년 사업연도부터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최초로 도입되었을 때 제도의 적용을 받은 자기자본(재무상태표상 자산 합계액에서 부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500억원 초과법인(중소기업은 제외)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투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앞서 언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각 제도가 도입된 정책 변화를 활용하여 이중차분법을 적용하였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환류소득' 산정 시 배당액이 제외되고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액이 추가되었으며, '미환류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되면서 투자, 고용, 상생 관련 지출에 대한 유인이 확대되고 제도 적용 기업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급한 바와 같이 제도 적용 대상 기업은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을 일정 수준 이상 하지 않을 경우 '미환류소득'이 발생하고 해당 소득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따라서 제도 적용 기업들은 추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 투자 유인이 증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2018년 사업연도부터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도입된 변화가 기업 투자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미환류소득' 산정 시 배당액이 제외되고 상생협력을 위한 지출액이 추가되었으며, '미환류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되면서 투자, 고용, 상생 관련 지출에 대한 유인이 확대되고 제도 적용 기업에 대한 과세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새로운 제도가 적용된 2019년 신고연도에 동 제도로 인한 추가 세수입은 8,530억원(잠정)으로 기존 7,191억원에서 약 1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¹⁾

이중차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처치군을 제도 적용 대상 기업 중 자기자본이 500억원에 가까운 기업으로, 대조군은 제도 비적용 대상 기업 중 자기자본이 500억원에 가까운 기업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처치군은 자기자본이 500억~700억원인 일반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대조군은 자기자본 300억~500억원인 일반기업과 자기자본 300억~700억원인 중소기업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y = \alpha + \beta_1 TREAT_i + \beta_2 POST_t + \beta_3 (TREAT_i \times POST_t) + \gamma X + \delta_t + \lambda_i + \epsilon \quad \text{식(6)}$$

y 는 기업 투자 변수로서 $TA_{i,t}$ 와 로그 자본량 변화를 고려한다. $TREAT_i$ 는 처치군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고, $POST_t$ 는 제도 변화 이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POST_t$ 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분석에서는 2015년 이후 1의 값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한 분석에서는 2018년 이후 1의 값을 취한다.²²⁾

$X_{i,t}$ 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기업의 관측 가능한 특성으로 기업의 법인세 비용, 현금흐름 및 현금성자산, 부채비율, 업력, WW 지수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λ_i 는 기업 고정효과, δ_t 는 연도고정효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도 적용 기업 중에서도, 투자·고용 등이 일정한 범위

21) 김학수,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2020.

22)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제도 설계상, 도입 첫 해에 미환류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환류 필요 소득과 합산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증대 효과가 1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났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해당 분석 결과는 김빛마로·홍병진·홍용기(2023)에 제시되었으며, 2015년을 기준으로 한 분석과 질적으로 동일하였다.

내에 있는 특정 기업군에게만 영향을 주는 본 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분표본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제도는 기업소득을 투자·고용 등으로 “충분히” 사용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과세한다. 즉, 기업이 자신의 소득 대비 충분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 본 제도는 해당 기업의 투자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투자지출액이 특정 기준점을 넘은 경우 추가로 투자 지출을 늘려도 본 제도에 의한 추가 과세액은 줄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기업의 소득(이익) 대비 투자지출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표본을 분석에서 제외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효과가 기업이 직면한 재무제약 수준에 의해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인 부분표본 분석을 수행하였다. 여러 실증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이 직면한 재무제약 수준에 따라 투자에 대한 정책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Edgerton(2010)은 자산 대비 현금흐름의 비중이 높아 재무제약 수준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업들이 투자 조세지원제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Zwick and Mahon(2017)과 Liu and Mao(2019) 등은 재무적 제약 수준이 높은(혹은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기업일수록 투자 조세지원제도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결과를 보였다.

제도의 효과가 기업이 직면한 재무제약 수준에 의해 달라지는지 살펴보기 위해 추가적인 부분표본 분석을 수행하였다.

3. 실증분석 결과

가.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효과

1) 기본 분석

<표 3>과 <표 4>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종속변수를 총자산 대비 유형고정자산 투자 비율(TA)로 설정한 경우의 정책효과에 대한 회귀계수는 양(+)의 값을 취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제약과 관련된 다양한 통제변수를 포함하더라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도가 로그 자본량 변화($\Delta \log(K)$)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역시 대체로 제도가 유의미한 투자 증대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WW 지수를

<표 3>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업 투자 효과: TA

구분	(1)	(2)	(3)	(4)	(5)	(6)
POST × TREAT	0.0007	0.0027	0.0024	0.0023	0.0032	0.0063
법인세 비용 비중(τ)	-0.0009***	-0.0009***	-0.0011***	-0.0011***	-0.0012***	-0.0011***
현금흐름 비중	0.0592	-	-	-	-	-
현금흐름	-	0.0000	-	-	-	-
lag. 현금성 자산 비중	-	-	0.0063	-	-	-
lag. 현금성 자산	-	-	-	0.0000*	-	-
lag. 부채비율	-	-	-	-	-0.0826**	-
업력	0.0219	0.0176	-0.0124***	-0.0121***	-0.0113***	-0.0055***
lag. WW 지수	-	-	-	-	-	0.4245***
산업 매출액 성장률	0.0550	0.0517	0.0541	0.0319	0.0254	-
기업 고정효과	Y	Y	Y	Y	Y	Y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표본 수	9,410	9,410	7,563	7,563	7,569	7,440
기업 수	2,072	2,072	2,048	2,048	2,049	2,022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을 의미(산업 대분류 군집 표준오차 사용)

출처: 저자 작성

<표 4>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업 투자 효과: $\Delta \log(K)$

구분	(1)	(2)	(3)	(4)	(5)	(6)
POST × TREAT	0.0148	0.0171	0.0242	0.0243	0.0164	0.0361**
법인세 비용 비중(τ)	-0.0008	-0.0009	-0.0019*	-0.0019*	-0.0013**	-0.0018
현금흐름 비중	0.0758	-	-	-	-	-
현금흐름	-	0.0000	-	-	-	-
lag. 현금성 자산 비중	-	-	0.0034	-	-	-
lag. 현금성 자산	-	-	-	0.0000	-	-
lag. 부채비율	-	-	-	-	1.1442***	-
업력	0.3114	0.3067	-0.0918***	-0.0881***	-0.0235***	-1.0112***
lag. WW 지수	-	-	-	-	-	0.9331***
산업 매출액 성장률	0.0335	0.0366	0.0142	0.0147	0.0814	-
기업 고정효과	Y	Y	Y	Y	Y	Y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표본 수	9,482	9,482	7,805	7,805	7,812	7,510
기업 수	2,093	2,093	2,118	2,118	2,120	2,048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을 의미(산업 대분류 군집 표준오차 사용)

출처: 저자 작성

재무적 제약을 반영하는 통제변수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밖에 기타 조세제도 등으로 인한 기업의 세부담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한 법인세 비용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는 예측한 것과 같이 음 (-)의 부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 부분표본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제도는 제도 설계상 과세 대상 소득 대비 투자금액이 큰 기업들에게는 추가적인 투자 유인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2015년 기준 영업이익 대비 총투자액 비중이 양 극단에 있는 기업들²³⁾을 제외한 경우에 본 제도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유의미하게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총자산 대비 유형고정자산투자 비율(TA)로 설정한 경우의 정책효과에 대한 회귀계수는 현금성 자산, 부채비율, *WW*지수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제약 수준을 통제한 회귀모형에서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로그 자본량 변화($\Delta \log(K)$)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2015년 기준 영업이익 대비 총투자액 비중이 양 극단에 있는 기업들을 제외한 경우에 본 제도의 효과가 실증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유의미하게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영업이익 대비 총투자액 비중 상위 20% 및 하위 20% 표본을 제외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상·하위 10%를 제외한 경우에도 분석 결과는 질적으로 동일하였다.

<표 5>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업 투자 효과: TA, 부분표본 분석

구분	(1)	(2)	(3)	(4)	(5)	(6)
POST × TREAT	-0.0009	0.0026	0.0156*	0.0155*	0.0161*	0.0155*
법인세 비용 비중(τ)	-0.0006**	-0.0006**	-0.0010***	-0.0010***	-0.0010***	-0.0010***
현금흐름 비중	0.1040*	-	-	-	-	-
현금흐름	-	0.0000	-	-	-	-
lag.현금성 자산 비중	-	-	0.0037	-	-	-
lag.현금성 자산	-	-	-	0.0000	-	-
lag.부채비율	-	-	-	-	-0.0575	-
업력	0.0561	0.0551	-0.0225***	-0.0226***	-0.0219***	-0.0038***
lag. <i>WW</i> 지수	-	-	-	-	-	0.4268**
산업 매출액 성장률	0.0295	0.0296	0.0310	0.0308	0.0268	-
기업 고정효과	Y	Y	Y	Y	Y	Y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표본 수	5,150	5,150	3,696	3,696	3,697	3,656
기업 수	1,311	1,311	1,177	1,177	1,177	1,169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을 의미(산업 대분류 군집 표준오차 사용)
출처: 저자 작성

<표 6>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업 투자 효과: $\Delta \log(K)$, 부분표본 분석

구분	(1)	(2)	(3)	(4)	(5)	(6)
POST × TREAT	0.0157	0.0178	0.0246*	0.0245*	0.0163	0.0254*
법인세 비용 비중(τ)	0.0005	0.0005	-0.0013**	-0.0013**	-0.0011***	-0.0013**
현금흐름 비중	0.1908***	-	-	-	-	-
현금흐름	-	0.0000**	-	-	-	-
lag. 현금성 자산 비중	-	-	-0.0010	-	-	-
lag. 현금성 자산	-	-	-	0.0000	-	-
lag. 부채비율	-	-	-	-	1.0395***	-
업력	0.3324	0.3326	-0.0783***	-0.0732***	-0.0087	-0.9956***
lag. WW 지수	-	-	-	-	-	0.9517***
산업 매출액 성장률	-0.0759	-0.0678	-0.1533	-0.1542	-0.0850	-
기업 고정효과	Y	Y	Y	Y	Y	Y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표본 수	5,156	5,156	3,719	3,719	3,720	3,670
기업 수	1,312	1,312	1,182	1,182	1,182	1,170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을 의미(산업 대분류 군집 표준오차 사용)

출처: 저자 작성

<표 7>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업 투자 효과: TA 및 $\Delta \log(K)$, 부분표본 분석, 재무제약 수준 낮은 기업

구분	종속변수: TA			종속변수: $\Delta \log(K)$		
	(1)	(2)	(3)	(1)	(2)	(3)
POST × TREAT	0.0262*	0.0260*	0.0248*	0.0234	0.0228	0.0214
법인세 비용 비중(τ)	-0.0010***	-0.0010***	-0.0010***	-0.0011**	-0.0011**	-0.0011**
현금흐름 비중	0.0031	-	-	-0.0007	-	-
현금흐름	-	0.0000	-	-	0.0000	-
lag. 현금성 자산 비중	-	-	-	-	-	-
lag. 현금성 자산	-	-	-	-	-	-
lag. 부채비율	-	-	-	-	-	-
업력	-0.0102***	-0.0102***	-0.0080***	-0.0247***	-0.0242***	-0.0199***
lag. WW 지수	-	-	0.5622*	-	-	0.9526*
산업 매출액 성장률	0.0550	0.0546	-	-0.2115	-0.2132	-
기업 고정효과	Y	Y	Y	Y	Y	Y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표본 수	1,699	1,699	1,681	1,705	1,705	1,686
기업 수	492	492	492	492	492	492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을 의미(산업 대분류 군집 표준오차 사용)

출처: 저자 작성

다음으로 제도의 효과가 기업이 직면한 재무제약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해 별도의 부분표본 분석을 수행하였다. 앞서 제시한 부분표본 분석에 포함된 기업 중 기업의 재무적 제약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WW 수치의 처치연도 수치가 하위 50%인 기업을 ‘재무적 제약 수준이 낮은 기업’, 상위 50%인 기업을 ‘재무적 제약 수준이 높은 기업’으로 구분하였다. 각 그룹에 대해 별도의 독립적인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 재무제약 수준이 낮은 기업에서 제도의 효과가 대체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반면 제약 수준이 높은 기업에서는 효과가 관측되지 않았다. 즉, 재무적 제약수준이 낮아 현금흐름 등이 원활한 기업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제도에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Edgerton(2010)의 실증분석 결과와 유사한 반면 Zwick and Mahon(2017) 및 Liu and Mao(2019)와는 상반된 결과이다.²⁴⁾

즉, 재무적 제약수준이 낮아 현금흐름 등이 원활한 기업들이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 제도에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4) 해외 선행연구에서는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지원’제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표 8〉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기업 투자 효과: TA 및 $\Delta \log(K)$, 부분표본 분석, 재무제약 수준 높은 기업

구분	종속변수: TA			종속변수: $\Delta \log(K)$		
	(1)	(2)	(3)	(1)	(2)	(3)
POST × TREAT	0.0098	0.0103	0.0104	0.0215	0.0254	0.0122
법인세 비용 비중(τ)	-0.0016	-0.0013	-0.0009	-0.0264*	-0.0246	-0.0248*
현금흐름 비중	0.0879***			-0.0536		
현금흐름		0.0000			0.0000***	
lag. 현금성 자산 비중						
lag. 현금성 자산						
lag. 부채비율						
업력	-0.0093**	-0.0077	-0.0007	-0.0706***	0.0192	-0.9850***
lag. WW 지수			0.1019			1.1130***
산업 매출액 성장률	0.0142	0.0175		-0.0340	-0.0203	
기업 고정효과	Y	Y	Y	Y	Y	Y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표본 수	1,766	1,766	1,752	1,776	1,776	1,759
기업 수	498	498	496	498	498	496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을 의미(산업 대분류 군집 표준오차 사용)
출처: 저자 작성

<표 9>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 투자 효과: TA

구분	(1)	(2)	(3)	(4)	(5)	(6)
POST × TREAT	0.0039	0.0190	0.0095	0.0095	0.0098	0.0085
법인세 비용 비중(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현금흐름 비중	0.7935***					
현금흐름		0.0000				
lag. 현금성 자산 비중			0.0571**			
lag. 현금성 자산				0.0000***		
lag. 부채비율					-0.0938**	
업력	-0.4007*	-0.3235	-0.6839***	-0.6844***	-0.6854***	-0.0050***
lag. WW 지수						0.2009
산업 매출액 성장률	-0.0355	0.0225	-0.0423	-0.0430	-0.0365	
기업 고정효과	Y	Y	Y	Y	Y	Y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표본 수	9,680	9,680	7,289	7,289	7,294	7,101
기업 수	2,636	2,636	2,607	2,607	2,609	2,547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을 의미(산업 대분류 군집 표준오차 사용)

출처: 저자 작성

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 효과

1) 기본 분석

<표 9>와 <표 10>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이 기업 투자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분석 결과 동 제도는 투자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속변수를 총자산 대비 유형고정자산투자 비율(TA)로 설정한 경우와 로그 자본량 변화($\Delta \log(K)$)로 설정한 경우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2) 부분표본 분석

투자금액이 양극단에 있는 표본을 제외한 부분표본 분석 결과에서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의 투자를 유의미하게 유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종속변수를 총자산 대비 유형고정자산투자 비율(TA)로 설정한 경우 다양한 회귀분석 모형에서 일관되게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로그 자본량 변화($\Delta \log(K)$)로 설정한 경우 역시, 대체로 제도의

<표 10>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 투자 효과: $\Delta \log(K)$

구분	(1)	(2)	(3)	(4)	(5)	(6)
POST × TREAT	0.0068	0.0085	0.0033	0.0009	0.0036	0.0158
법인세 비용 비중(τ)	0.0000***	0.0000***	-0.0001***	-0.0001***	-0.0000***	-0.0001***
현금흐름 비중	0.2240***					
현금흐름		0.0000***				
lag.현금성 자산 비중			-0.0761			
lag.현금성 자산				0.0000**		
lag.부채비율					1.6286***	
업력	-0.4015*	-0.3861	-0.8083***	-0.8152***	-0.8205***	-0.0485***
lag. WW 지수						0.6274**
산업 매출액 성장률	0.1064	0.1130	-0.0112	-0.0122	-0.1412	
기업 고정효과	Y	Y	Y	Y	Y	Y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표본 수	9,792	9,792	7,619	7,619	7,627	7,227
기업 수	2,677	2,677	2,713	2,713	2,715	2,589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을 의미(산업 대분류 군집 표준오차 사용)

출처: 저자 작성

<표 11>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 투자 효과: TA , 부분표본 분석

구분	(1)	(2)	(3)	(4)	(5)	(6)
POST × TREAT	-0.0035	0.0245	0.0025	0.0033	0.0040	0.0017
법인세 비용 비중(τ)	-0.0003	-0.0016**	-0.0035*	-0.0035*	-0.0034*	-0.0040*
현금흐름 비중	1.0060***					
현금흐름		0.0000				
lag.현금성 자산 비중			0.0915**			
lag.현금성 자산				0.0000*		
lag.부채비율					-0.0179	
업력	-0.4135*	-0.3246	-0.6735***	-0.6754***	-0.6771***	-0.0024
lag. WW 지수						0.1343
산업 매출액 성장률	-0.0469	0.0095	-0.0403	-0.0433	-0.0402	
기업 고정효과	Y	Y	Y	Y	Y	Y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표본 수	5,272	5,272	3,515	3,515	3,516	3,478
기업 수	1,632	1,632	1,403	1,403	1,404	1,398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을 의미(산업 대분류 군집 표준오차 사용)

출처: 저자 작성

<표 12>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 투자 효과: $\Delta \log(K)$, 부분표본 분석

구분	(1)	(2)	(3)	(4)	(5)	(6)
POST × TREAT	0.0031	0.0071	0.0112	0.0173	0.0249	0.0065*
법인세 비용 비중(τ)	-0.0080***	-0.0082***	-0.0305**	-0.0299**	-0.0291***	-0.0403***
현금흐름 비중	0.3067***					
현금흐름		0.0000				
lag. 현금성 자산 비중			-0.1451			
lag. 현금성 자산				0.0000***		
lag. 부채비율					1.7275***	
업력	-0.3783	-0.3571	-0.7764***	-0.7879***	-0.7818***	-0.0325***
lag. WW 지수						0.8811*
산업 매출액 성장률	0.4107***	0.4114***	0.0723	0.0909	-0.0086	
기업 고정효과	Y	Y	Y	Y	Y	Y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표본 수	5,272	5,272	3,539	3,539	3,540	3,494
기업 수	1,635	1,635	1,410	1,410	1,411	1,400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을 의미(산업 대분류 군집 표준오차 사용)

출처: 저자 작성

기업 투자 유인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기업의 재무제약 수준을 WW 지수로 통제된 경우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도입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그 도입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함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직면한 재무제약 수준에 따른 이질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역시 제도의 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재무적 제약 수준과 관계 없이 모든 그룹에서 제도가 투자를 유의미하게 증대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재무적 제약 수준이 낮은 기업군에서 유의미한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난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분석 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

25) 실제로 김빛마로·홍병진·홍용기(2023)는 국세청 미시출처 분석을 통해 투자 미포함형을 선택한 기업들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높고, 특히 제도에 의한 추가과세액이 0보다 큰 기업으로 한정할 경우 그 비중이 90% 이상이라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다. 요약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한 분석 결과, 동 제도는 ‘평균적’으로는 유의미한 투자 증대 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제도 적용 기업들이 주로 ‘투자 제외형’을 선택²⁵⁾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표 13>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 투자 효과: TA 및 $\Delta \log(K)$, 부분표본 분석, 재무제약 수준 낮은 기업

구분	종속변수: TA			종속변수: $\Delta \log(K)$		
	(1)	(2)	(3)	(1)	(2)	(3)
POST × TREAT	0.0060	0.0068	0.0017	0.0145	0.0167	0.0063
법인세 비용 비중(τ)	-0.0205**	-0.0189**	-0.0179**	-0.0287	-0.0266	-0.0222
현금흐름 비중	0.1010			-0.0884		
현금흐름		0.0000*			0.0000*	
lag.현금성 자산 비중						
lag.현금성 자산						
lag.부채비율						
업력	-0.6772***	-0.6794***	-0.0045	-0.7843***	-0.7896***	-0.0310***
lag. WW 지수			0.0387			1.2494
산업 매출액 성장률	0.0230	0.0191		0.2584	0.2810	
기업 고정효과	Y	Y	Y	Y	Y	Y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표본 수	1,663	1,663	1,641	1,671	1,671	1,649
기업 수	610	610	610	610	610	610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을 의미(산업 대분류 군집 표준오차 사용)

출처: 저자 작성

<표 14>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기업 투자 효과: TA 및 $\Delta \log(K)$, 부분표본 분석, 재무제약 수준 높은 기업

구분	종속변수: TA			종속변수: $\Delta \log(K)$		
	(1)	(2)	(3)	(1)	(2)	(3)
POST × TREAT	0.0080	0.0087	0.0068	0.0099	0.0243	-0.0064
법인세 비용 비중(τ)	-0.0012	-0.0014	-0.0022	-0.0309**	-0.0304**	-0.0440**
현금흐름 비중	0.0904**			-0.2076		
현금흐름		0.0000			0.0000***	
lag.현금성 자산 비중						
lag.현금성 자산						
lag.부채비율						
업력	-0.0033	-0.0040	-0.0009	-0.0434*	-0.0409*	-0.0317***
lag. WW 지수			0.1813			0.4128
산업 매출액 성장률	-0.1144	-0.1168*		-0.1047	-0.0917	
기업 고정효과	Y	Y	Y	Y	Y	Y
연도 고정효과	Y	Y	Y	Y	Y	Y
표본 수	1,678	1,678	1,669	1,687	1,687	1,675
기업 수	619	619	620	619	619	620
Prob. > F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주: ***는 $p < 0.01$, **는 $p < 0.05$, *는 $p < 0.1$ 을 의미(산업 대분류 군집 표준오차 사용)

출처: 저자 작성

본 제도의 최초 도입 시에는 기업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지속되는 과정에서 제도가 더 이상 추가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함의하는 결과이다.

수 있으며, 투자 포함형을 선택한 기업들로 한정할 경우 제도 도입 이후 해당 기업들의 투자가 증대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제도 적용 대상 기업들 중 애초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들이 주로 ‘투자 포함형’을 선택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의 투자 증대분을 순수한 제도 효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실제로 본 제도의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원인은 제도의 설계상 특징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제도는 이미 특정 임계점을 초과하여 고용, 투자 등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못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기업소득 대비 투자금액이 양극단에 있는 표본을 제외한 부분표본 분석에서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기업 투자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가 추정되었다. 즉, 본 제도는 기업의 투자금액이 일정 구간에 속하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투자 증대 효과는 재무적 제약 수준이 낮아 상대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군에서 더욱 명확하게 추정되었다. 다만, 2018년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대체하여 도입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부분표본으로 한정된 분석에서도 투자 증대 효과가 대체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본 제도의 최초 도입 시에는 기업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지속되는 과정에서 제도가 더 이상 추가적인 투자 유인으로 작동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함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몇 가지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시에 활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완전히 통제되지 못하였다. 또한 투자 뿐 아니라 기업의 R&D, 고용, 배당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제도²⁶⁾도 기업의 투자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다만, 분석 대상 제도 외 다른 제도들이 ‘처치군’과 ‘대조군’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면 그 자체가 추정 결과에 체계적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정책에 대해 명시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분석 결과를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추정된 제도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들이 투자의 시기만을 조정하는 효과로 인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기업들이 투자 관련 조세제도가 한시적으로만 운영될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투자의 시기

26)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도입 당시 기준으로 기업 행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적 조세지원제도는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배당소득증대세제 등이 있다.

를 조정하여 제도에 의한 추가 과세액을 최소화할 유인을 갖게 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이러한 요인이 명시적으로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제도는 유형 및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데 비해, 실증분석에서 활용된 투자 변수는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단기적 투자 반응에 집중해서 분석하였으므로, 기업이 제도에 반응하여 중장기적 시계에서 투자 의사결정을 변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IV. 결론 및 정책 시사점

기업 투자는 경제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도 정부가 조세 및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세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그중 하나이다. 특히 기업 투자 관련 조세제도가 막대한 직·간접적 비용²⁷⁾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기업 투자 유인 체계의 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 유인 조세제도인 기업소득환류세제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효과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소득 대비 투자 비율이 지나치게 크거나 작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투자 증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전체 표본과 부분 표본 분석 모두에서 유의미한 투자 증대 효과가 추정되지 않았다. 종합하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적어도 특정 기업군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 제도의 일차적 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달성하였으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조세정책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일차적 효과 달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해당 제도가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타당한 제도인지도

종합하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적어도 특정 기업군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 제도의 일차적 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달성하였으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투자 증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27) 세수입 손실(조세지원제도의 경우), 의사결정 왜곡을 통한 효율성 비용(efficiency cost) 등이 대표적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평가할 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보다는 가속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타 투자 관련 조세제도에 비해 비교 열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본 제도는 기업이 투자를 “충분히”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과세함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 수준은 각 기업이 직면한 경제 여건 및 내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정부가 기업의 “적정” 투자 수준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제도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과세 대상 소득의 일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본 제도는 필연적으로 기업 행태에 큰 왜곡을 줄 수밖에 없다. 반면 투자세액공제와 가속상각제도의 경우 기업의 투자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조세지원제도로써 일종의 가격 변화를 통해 투자를 유인한다는 점에서 제도로 인한 효율성 상실이 더 적게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기업 투자에 대한 적절한 유인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물론 동 제도의 목적이 투자 증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금 및 상생협력 관련 지출 증대를 함께 도모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겠으나 기업의 임금 및 상생협력 지출에 대한 “적절한 수준” 역시 정부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제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²⁸⁾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와 조세 중립성 관점에서 평가할 때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보다는 가속상각제도와 투자세액공제 방식으로 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에 대해서는 다음 일몰 도래 시점 전에 해당 제도가 투자, 임금, 상생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평가를 추가로 수행하여 제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해당 제도를 일몰연장할 경우 긍정적 기업 행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유인하고 경제적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8)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임금 지출액은 투자 지출에 비해 더욱 경직적이기 때문에 기업이 임금 지출액 변화를 통해 해당 제도에 대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로 본 제도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한 김학수(2020)는 해당 제도의 투자·임금증가·상생협력 확대 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각 연도.
- ____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각 연도.
- ____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각 연도.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개정세법해설」, 각 연도.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각 연도.
- 김학수,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한국개발연구원, 2020.
- 이철인, 「한국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국제경제연구』, vol.26, no.2, 2020, pp. 1~33.
- 홍병진, 「법인세가 기업의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Almeida, H., Campello, M. and Weisbach, M.S. “The Cash Flow Sensitivity of Cash,” *Journal of Finance*, 59, 2004, pp. 1777~1804.
- C. Edward Fee & Charles J. Hadlock & Joshua R. Pierce, “Investment, Financing Constraints, and Internal Capital Markets: Evidence from the Advertising Expenditures of Multinational Firms,” *Review of Financial Studies*, Society for Financial Studies, vol. 22(6), 2009, pp. 2361~2392.
- Eric Zwick and James Mahon, “Tax Policy and Heterogeneous Investment Behavior,” *American Economic Review*, 107(1), 2017, pp. 217~248.
- Fazzari, Steven M., R. Glenn Hubbard, Bruce C. Petersen, Alan S. Blinder, and James M. Poterba. “Financing Constraints and Corporate Investmen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no. 1, 1988.
- Jesse Edgerton, “Edgerton, Jesse, Investment Incentives and Corporate Tax Asymmetries,” JP Morgan, 2010.
- Joshua D. Rauh, “Investment and Financing Constraints: Evidence from the Funding of Corporate Pension Plans,” *The Journal of Finance*, Vol. 61, No. 1, 2006, pp. 33~71.
- Kaplan, S.N. and Zingales, L. “Do Investment-Cash Flow Sensitivities Provide Useful Measures of Financing Constrain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2,

1997, pp. 169~215.

Whited, Toni M., and Guojun Wu. "Financial Constraints Risk," *The Review of Financial Studies*, 19, no. 2, 2006.

Yongzheng Liu and Jie Mao, "How Do Tax Incentives Affect Investment and Productivity? Firm-Level Evidence from China,"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1(3), 2019.

02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¹⁾



정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dwjung@kipf.re.kr

I. 서론

전자적 용역이란(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s)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써 이동통신 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모바일 게임, 음성·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은 물론이고, 클라우드와 같이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 컴퓨터 등에 저장되는 형태도 포함한다. 우리가 보통 휴대폰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앱 등이 전자적 용역의 대표적인 예이다.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와 함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논의는 EU와 OECD를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히 시작되었다. 재화의 거래와 달리 용역의 거래에 대해서는 공급 장소를 확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라 각 국가별로 과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국가별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구글, 애플과 같이 전자적 용역의 거래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세금(디지털 서비스세)을 고안하는 것도 급증하고 있는 용역의 거래에 대한 과세권과 관련 있다.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 기준은 2012년부터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행위(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와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 및 공조가 본격화되면서 정비되어 왔다. 과거에는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공급하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였다. 따라서 용역의 B2C(Business to Customer) 거래에 있어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는

1) 이 원고는 2023년 12월에 작성된 원고로써 사용된 자료 및 배경은 2023년 12월까지가 기준이다.

최근에는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와 같이 전자적 용역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사업주들에 대한 납세 협력 요구를 강화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있다.

공급자의 사업장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으나, 디지털 경제에서 공급자의 소재지의 중요성은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EU의 경우 역외 사업자든 역내 사업자든 관계 없이 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의 경우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적용하면서 기준의 명확성을 높였다. 최근에는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와 같이 전자적 용역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사업주들에 대한 납세 협력 요구를 강화하면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의지를 높이고 있다. 추가적으로 EU는 2021년 7월부터 새로운 부가가치세 지침을 적용하면서 방송·통신·전자적 용역 이외의 상품 판매에 대해서도 EU 역내 회원국에 오픈마켓 및 플랫폼 등 전자 장터(인터페이스)를 통해 원거리 판매를 촉진하는 사업주들은 플랫폼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이를 납부할 의무가 부여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 7월 1일부터 전자적 용역 중 모바일 앱, 게임 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에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2015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급자의 관점에서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를 공급장소로 파악하였다. 이 경우 전자적 용역 등 국제 거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외국 법인 등이 공급하는 용역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 모바일 앱 개발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모바일 앱, 게임 등)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국외의 앱 개발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아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2015년 7월 1일부터는 우리나라의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국외 사업자(비거주자 또는 외국 법인)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생겼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를 만들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국외 모바일 앱 개발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오픈마켓에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의무를 부여하였다. 2019년 7월부터는 과세 대상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 광고 게재, 중개 용역 등으로 확대하여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국외사업자가 오픈마켓 등을 통해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적은 2015년 233억원, 2016년 612억원, 2020년 3,319억원, 2022년에는 4,828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오픈마켓을 비롯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국외 사업자의 수도 2016년 66개, 2020년

168개, 2022년에는 238개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국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와 관련한 논란이 있다. 국외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용역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신고하지 않아 새로운 용역에 대한 수익 창출이 있을 때 독과점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의 가능성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또한 여전히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 간 과세 형평과 관련한 논란도 있다.

최근 진선미 의원 등이 2023년 11월 1일에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 국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가 있는 반면, 국외 사업자의 경우 오픈마켓이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어 사업자 간 형평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 징수 체계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개발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내 사업자가 아닌 오픈마켓이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전자적 용역과 관련한 여러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박명호(2015), 정유석(2015), 정건용·김병일(2015)은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한 EU 등의 논의를 정리하였고, 정규언·심충진(2017)은 전자적 용역의 B2B(Business to Business) 거래에 있어 국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국내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의 과세 형평을 개선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권성준 외(2019)는 비거주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하였다. 서보국(2020)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 규정에 대한 해외 사례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전자적 용역에 대한 적용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 더해 세 가지를 추가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전자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의 세수입 확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둘째, 간편사업자 등록 제도 등 제도 개편의 효과성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셋째,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EU의 최근 변화 사항을 정리하고, 과세권의 확보와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징수 체계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개발자가 오픈마켓을 통해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국내 사업자가 아닌 오픈마켓이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는 등 전자적 용역과 관련한 여러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용역의 특성상 역무의
생산 또는 제공이
물리적 형태를 취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역무의 제공과정이
동시에 소비과정으로
나타난다.

II.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법」의 배경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거래는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이다. 재화의 공급에서 재화의 범위는 상품, 제품, 원료 등 유체물과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외의 모든 것, 즉 무체물을 포함한다.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공급으로 정의하고 있다.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의미한다. 용역의 특성상 역무의 생산 또는 제공이 물리적 형태를 취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역무의 제공과정이 동시에 소비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이 사업상 발생해야 한다. 용역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용역의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 등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표 1> 재화의 공급

구분	내역
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연불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가공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
교환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경매·수용, 현물출자 등에 따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보세창고 등에 임치된 물품의 국내 재반입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보세구역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소의 지정창고로 한정)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재반입하는 것

출처: 저자 정리

<표 2> 용역의 공급 범위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담·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출처: 저자 정리

재화 수입의 경우 재화의 공급자는 외국의 과세권이 미치는 외국인이며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지만,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소비자의 거주 국가에서 간접세를 거래 징수하고 있다. 재화 수입의 범위는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 포함),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 등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 그리고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반면 용역의 수입은 현행법상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에 그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 세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사실을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화 수입의 경우 세관장이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지만,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이러한 절차를 적용하기 어렵다. 국외 공급 용역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경우 국내 사업자의 국내 공급 용역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별도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는 위와 같은 용역의 수입과 관련하여 국외 사업자로 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하는 자(국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 납부하도록(reverse charge mechanism) 규정한다. 매출자의 거래 징수가 아닌 매입자의 거래 징수 제도를 적용하여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규정은 공급받는 용역 등이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과세 사업에 사용될 경우 매입자는 결과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징수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대리납부의 과세 대상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특허권, 상표권 등이다.

하지만 국외 공급 용역의 거래 상대방이 최종 소비자인 경우 이들에게 대리 납부 규정을 적용하는 것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OECD 및 EU의 부가가치세 지침은 B2B 거래에 대해서는 대리 납부제도를 적용하지만, B2C 거래에 대해서는 대리 납부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이 경우에 국외 사업자들의 국내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는 ‘간편사업자 등록’제도 등을 적용한다.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에서 국외 사업자가 국내의 위탁 매매인 등(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대리인, 중개인)을 통해 국내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 매매인 등에게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에서

국외 공급 용역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경우 국내 사업자의 국내 공급 용역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별도의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전자적 용역 관련 제도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EU의 부가가치세 지침(EU VAT directive 2006/112/EC)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적 용역을 <표 4>에서 살펴본다.

는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전자적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국외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외 사업자의 간편 사업자 등록을 유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국외 제공 용역의 대리 납부 대상(부가세법 제52조)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

출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

본고에서 검토하는 전자적 용역 관련 제도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우선 EU의 부가가치세 지침(EU VAT directive 2006/112/EC)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자적 용역을 <표 4>에서 살펴본다. EU 부가가치세 지침의 전자적 용역의 예는 웹사이트의 공급, 소프트웨어 이용, 컴퓨터, 핸드폰 등에서 이용 가능한 음악, 벨소리 등이

<표 4> 전자적 용역의 범위(EU 부가가치세 지침)

유형	예시
웹사이트 공급, 웹 호스팅, 프로그램 및 장비의 원격 유지보수 용역	- 웹사이트, 웹페이지 호스팅 - 프로그램의 원격 유지보수 - 원격 시스템 관리 - 온라인 데이터 저장 - 사용자 요구에 따라 디스크 공간 저장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제공 용역	- 소프트웨어 이용, 다운로드, 업데이트 - 배너 광고를 차단하는 소프트웨어 - 장치와 연결시키기 위한 드라이버 다운로드(예: 프린트 드라이버) - 웹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 웹사이트 보안을 위한 자동 보안 프로그램
그림, 문자, 정보의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제공 용역	- 컴퓨터 화면 접속, 다운로드 - 화면 보호기 이미지 접근, 다운로드 - 전자책, 전자신문 등 전자출판물 제공 - 웹 방문기록과 같은 웹 통계자료 - 온라인 뉴스, 교통정보, 일기예보 - 법령, 재무자료를 고객이 입력하면 자동으로 정보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예: 주식시장 데이터) - 배너광고, 웹페이지상 보여지는 광고공간 제공
음악, 영화, 게임 및 정치, 문화, 예술, 과학, 오락 방송과 이벤트	- 컴퓨터, 핸드폰에서 이용 가능한 음악, 벨소리 등 소리, 영화, 게임 등 - 사용자가 채널을 선택하면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듣고, 볼 수 있는 라디오, TV 프로그램(방송국에서 편성표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라디오, TV는 제외, 방송용역에 포함됨)
원격 화상수업의 공급	- 원거리에서 인터넷, 전자통신을 통해 사람의 중재 없이 제공되는 수업(선생과 학생의 의사소통을 위한 용역은 포함되지 않음) -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문학생(pupil)의 작업물 등

출처: 방효창(2018)

다. 우리나라도 앞서 언급했듯이 전자적 용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않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표 5>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전자적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구글, 애플 등 국외 오픈마켓 사업자 등이 국내에 게임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외 오픈마켓사업자 등이 해당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공급장소를 국외가 아닌 국내로 간주하여 해당 사업자에 납세의무를 지운다. 이를 위해 이들에게 간편사업자 등록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전자적 용역 국외 오픈마켓사업자인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 등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이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국내 재화 및 용역의 거래와 재화의 수입은 기본적으로 거래징수 체계를 따르며,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이 공급자인 경우에는 매입자 대리납부 형태 혹은 간편사업자 거래징수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

<표 5> 전자적 용역의 범위(우리나라)

유형
1.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써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과 위에 따른 전자적 용역을 개선(upgrade)시키는 것
2.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에 연결된 중앙컴퓨터에 저장공간 대여 또는 중앙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 대여하는 서비스
3.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4. 국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의 범위(국내에서 물품, 장소 등을 대여하거나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출처: 저자 정리

위의 논의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살펴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에 대해서는 권성준 외(2019)에서 잘 정리하였다(<표 6> 참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국내 재화 및 용역의 거래와 재화의 수입은 기본적으로 거래징수 체계를 따르며,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이 공급자인 경우에는 매입자 대리납부 형

<표 6> 과세대상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방안

구분	공급받는 자	
	사업자	소비자
재화와 용역의 공급(국내 거래)	거래징수	거래징수
재화의 수입	거래징수	거래징수
비거주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등(전자적 용역 제외)	대리납부*	대리납부
전자적 용역	대리납부*	간편사업자 거래징수**

주: * 과세사업자(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제외)는 제외

** 간편사업자 거래징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면제

출처: 권성준 외(2019)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적 용역을 증개 및 공급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는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 윈스토어 등 3개사로 이 시장은 독과점 시장이다.

태 혹은 간편사업자 거래징수 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전자적 용역에 대해서는 오픈마켓에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등 국제적인 변화에 맞춰 제도를 신설하여 적용해 오고 있다.

III. 전자적 용역 시장 및 과세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자적 용역을 증개 및 공급하는 대표적인 사업자는 애플 스토어, 구글 플레이, 윈스토어 등 3개사로 이 시장은 독과점 시장이다(<표 7> 참고). 구글 플레이의 점유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들어 윈스토어의 점유율이 상승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경쟁 앱마켓에 게임 출시를 막고 자사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압박한 사실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고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애플 등에 대해서는 국내 개발자에게 공급가액 기준이 아닌 공급대가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한 것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하는 등 일부 불공정 경쟁에 대해 제한을 가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향후 바뀔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의 점유율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표 7> 국내 앱 스토어 시장 점유율(매출액 기준)

(단위: %)

업종	분류	시장 점유율				
		회사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통신 판매 증개업	앱	구글	63.2	63.4	66.5	66.9
		애플	24.8	24.4	21.5	21.2
		윈스토어	11.1	11.2	11.7	11.8

출처: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간편사업자 등록 제도는 위에서 언급한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써 2015년 7월 이후 공급 거래분부터 적용되었다. <표 8>에서 확인하듯이 간편사업자 신고 사업자 수는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2016년 66개에서 2020년 168개, 2022년에는 238개까지 증가하였다. 이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은 2016년 612억원에서 2022년 4,828억원까지 증가하였고, 상위 10개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전체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비 90% 이상이다. 2019년 이

후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의 크기가 크게 증가한 것은 2019년 7월부터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중개 용역 등이 전자적 용역의 과세 대상 범위에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이 4,828억원으로 전체 부가가치세 국세분의 0.6% 이상이어서 세수 확보 측면에서도 작지 않은 규모라 할 수 있다.

<표 8> 간편사업자 연도별 부가가치세 신고 규모

(단위: 개, 억원)

연도	신고 사업자 수	과세표준 신고총액	상위 10개 사업자 과세표준 신고총액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상위 10개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세액
2016년	66	6,121	5,980	612	597
2017년	86	9,250	8,990	925	899
2018년	92	13,345	12,995	1,335	1,299
2019년	134	23,666	21,204	2,367	2,120
2020년	168	33,190	31,036	3,319	3,103
2021년	209	39,846	37,086	3,983	3,708
2022년	238	48,304	43,812	4,828	4,381

출처: 국세청 제공, 진선미 의원실 자료

EU 역내·역외 공급자는 소비자가 소재하는 각 국가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EU 회원국 한 국가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간편사업자 등록 (Mini One-Stop Shop scheme, MOSS)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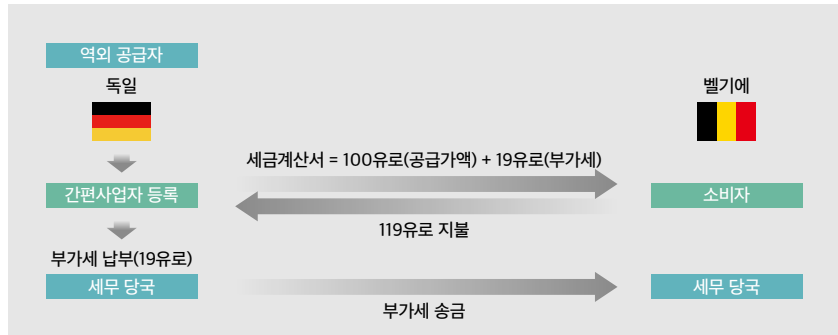
IV. EU 전자적 용역 과세 지침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에도 전자적 용역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EU의 경우 전자 상거래가 거의 없었던 2003년 이전까지는 B2B 및 B2C 용역의 거래에 대해 공급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하였다(박명호, 2015). 전자 상거래가 증가하면서 EU의 경우 2003년 7월부터 EU 역외 사업자의 역내 소비자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시작하였다(정유석, 2015). 2007년 부가가치세 지침에서는 2010년부터는 B2B 거래의 공급장소는 공급지국에서 소비지국으로 변경하여 적용키로 하였으며, B2C 거래의 공급장소는 그대로 공급지국을 일반규정으로 적용하였다.

2015년부터는 새로운 EU 부가가치세 지침에 따라 EU 역내 사업자가 EU 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통신·방송·전자적 용역(Telecommunications, Broadcasting and Electronic services, TBE)의 B2C 거래에 대해 처음으로 소비지국 원칙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EU 역내·역외 공급자는 소비자가 소재하는 각 국가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EU 회원국 한 국가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는 간편사업자 등록(Mini One-Stop Shop Scheme, MOSS)을 해야 한다([그림 1] 참고). 예를 들어, 역외 공급자가 벨기에의 최종 소비자에게 119유로의 공급

2017년에 발표되고
2021년 7월부터
적용 중인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전자 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침으로써, EU 역외
공급자가 EU 역내 거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새로운 공급지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림 1] EU 간편사업자 등록(예시)



출처: 저자 작성

대가를 받고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역외 공급자는 EU 회원국 중 한 곳인 독일을 선택하여 간편사업자 등록을 하고 벨기에의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징수한 19유로 만큼의 부가가치세는 독일의 세무 당국에 납부한다. B2C 거래에 대해서도 소비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권은 최종 소비자가 위치한 벨기에가 갖는다. 결국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독일에서 벨기에로 송금한다.

또한 B2C 거래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중개자가 있는 경우(온라인 포털, 플랫폼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는 이들 중개자를 전자적 용역의 공급자로 간주하여 이들에게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토록 한다. 따라서 구글, 애플 등 전자적 용역을 중개하는 기업들에 부가가치세의 거래 징수 의무가 생겼다. 이러한 형태는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의 규정 내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021년 7월부터 EU는 새로운 부가가치세 지침을 적용하며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주었다. 새로운 지침은 2015년 1월부터 적용된 전자적 용역에 대한 새로운 공급지 규정 개정 에 이은 두 번째 변화이다. 2017년에 발표되고 2021년 7월부터 적용 중인 이번 조치는 새로운 전자 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침으로써, EU 역외 공급자가 EU 역내 거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새로운 공급지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EU 역내로 수입되는 재화의 면세점 기준을 삭제한 것, 둘째, 전자 상거래(재화의 거래)에 대해서도 전자적 용역과 마찬가지로 IOSS(Import One-Stop-Shop) 제도가 적용되는 것, 셋째, 전자적 용역뿐만 아니라 전자 상거래에 대해서도 오픈마켓을 공급자로 간주(deemed supplier)하

여 이들이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토록 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변화는 2021년 7월 이전에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재화가 22유로 이하의 소매 물품일 경우 면세하였으나, 이 규정이 삭제되었다.²⁾ 따라서 면세점이 없어지고 22유로 이하의 모든 B2B·B2C 대상 수입 재화의 경우 더 이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정식 통관이 요구된다. 두 번째 변화는, 전자 상거래 공급 사업가 직접 150유로 이하의 B2C 대상 재화를 판매할 경우에는 공급업체는 간편사업자 등록(IOSS)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한 국가에만 등록, 신고 및 지불하게 된다. 2015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적 용역 거래와 동일한 방식이다. 세 번째 변화는,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150유로 이하의 B2C 대상 재화의 경우 오픈마켓이 IOSS 시스템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지불하게 된다. 이는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대해 오픈마켓에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의무를 이행시키는 것과 동일하다. 150유로 기준을 초과하는 재화의 경우 통관 신고를 통해 수입 시점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거나 최종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책임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와 동일한 시스템을 유지한다.

이러한 변화에 담겨있는 정책 의지를 해석하자면, EU 각 국가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강화하고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도의 변화 과정을 재요약하면, EU는 전자적 용역 거래가 빈번해지기 전인 2003년부터 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에 관해 한시적으로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는 전자적 용역 및 일반적 용역의 B2B 거래에서는 소비자의 소재지를 공급장소로 규정하였고, B2C 거래에서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역내 사업자가 역외 소비자에게, 역외 사업자가 역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소비자의 소재지를 공급장소로 규정하였다. 2015년부터는 앞서 소개하였듯이 새로운 부가가치세 지침을 적용하였는데, B2B 거래에서는 전자적 용역 및 일반적 용역은 계속하여 소비자의 소재지를 공급장소로 규정하였고, B2C 거래에서는 역내 사업자가 역내 소비자 및 역외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외 사업자가 역내 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까지 소비자의 소재지를 공급장소로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EU는 용역의 B2C 거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공급장소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지 과세원칙에 따른 과세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그리고 재화의 거래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예외 없는 과세 방침을 적용하여 각 국가의 부가가치세수 확보와 간접세의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확립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담겨있는 정책 의지를 해석하자면, EU 각 국가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을 강화하고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참고로 호주는 2018년 7월부터, 뉴질랜드는 2019년 12월부터 소매 수입물품에 과세한다.

우리나라도 EU의 제도 변화 과정과 유사한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적용해 나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V. 제도 도입의 정책 타당성

우리나라도 EU의 제도 변화 과정과 유사한 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적용해 나가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의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관련한 정량 자료가 부족하여 엄밀한 분석을 진행하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

1. 선행 연구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도 도입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는 저자가 파악하기로는 이승윤·임병인(2022)이 유일하다. 이 연구는 제도의 전반적인 효과를 살펴본 것은 아니고 제도의 도입이 소비자의 모바일 앱의 구매 패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미디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해외 개발사들의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유료 애플리케이션 구입 개수(유료 앱 구매량)와 애플리케이션 내 아이템 및 확장기능 구입 개수(인앱 구매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유료앱과 인앱 구매량이 모두 감소했음을 보였다. 이러한 수요의 변화는 제도 도입 이후 모바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하여 수요 감소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 소비의 감소는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 감소로 이어지고 부가가치세의 추가 부담은 소비자 후생 감소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2015년 7월 제도 도입의 효과를 처음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연구는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4년부터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데, 자료의 제약으로 2014년 이전의 자료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제도의 정확한 효과를 추정하는데도 걸림돌이 된다. 제도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추이에 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모바일 소비자물가지수라는 변수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저자가 파악하기로는 온라인 콘텐츠 이용료 소비자 물가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이 변수는 이 연구가 초점을 맞춘 모바일 앱 시장의 가격 변화를 정확히 대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한계라 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유료 앱 및 인앱의 공급가액 자체가 상승했는지에 대한 논의는 소비자 후생 증감 평가에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생략되어 있다. 다만 이

러한 분석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접근성이 제약된 데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지는 못하고, 추가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데 의의를 둘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과세 형평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소비자 후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제도의 효과성 검토

전자적 용역에 대한 간편사업자 등록 제도의 사전적 기대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부가가치세수 확보와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목적이다.

첫 번째로 해외 개발자가 판매하는 전자적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니 이를 포함하면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사전적 기대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 2의 신설에 따라 부가가치세수가 추가로 확보되고 있으니 제도의 도입이 세수 확보에 기여한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세수 증대가 실제로 간편사업자 등록에 따른 효과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최정희·양인준(2019), 서보국(2020)이 지적하듯이 동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이미 부분적으로는 기존 제도에 의해 전자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루어져 왔다는 점, 그리고 간편사업자 등록을 회피하는 국외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점 등으로 동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이 제도가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사전적 기대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결과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의 직접적인 과세 형평성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내 개발자가 만든 모바일 앱에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해외 개발자가 만든 모바일 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면, 이는 간접적으로 과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비슷한 성격, 비슷한 유형의 모바일 앱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로 인해 국내 개발자가 만든 모바일 앱의 공급가액이 해외 개발자가 만든 모바일 앱의 공급가액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게 책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사업자 간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과세 형평의 문제

전자적 용역에 대한
간편사업자 등록 제도의
사전적 기대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부가가치세수 확보와
국내 사업자와 국외
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성 제고가
목적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은 기대한
만큼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측면에서 간접적으로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을 개선했을 가능성이 있다.

1) 세수의 확보

첫째, 부가가치세수는 제도의 도입과 함께 추가 확보된 것은 앞서도 검토했듯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 세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희·
양인준(2019), 서보국(2020)의 지적처럼 간편사업자 등록 제도가 세수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지 따져봐야 하는 것은 기존의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및
제53조 등에 의해서도 부가가치세는 일부 과세되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에 기존에 걸렸던 세수가 새로운 세제의 도입에 따른 이전(transfer)에 불과하다
면 세수 증대의 실질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53
조의 2는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는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B2C 거
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수의 확보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
고 할 수 있다.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
항은 기대한 만큼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다.

관련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오픈마켓의 매출 규모(여기서 매출 규모는 오픈마켓이 개발자와의 계약 이행에서 얻는 수수료 수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
니라 오픈마켓에서 거래된 국내 시장 유료앱, 인앱 결제의 판매 금액(공급금액의
합계)을 의미)와 현재 간편사업자 등록에 따라 납부된 부가가치세수를 비교해보
았다. <표 9>는 앱 마켓별 매출액 현황을 보여준다. 3사의 합계 매출액은 2017년

<표 9> 앱 마켓별 매출액

(단위: 억원,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구글 플레이	48,824	53,999	59,996	67,999
애플 스토어	19,383	21,062	23,086	25,866
원스토어	8,605	9,403	10,561	12,020
총합(3사)(A)	76,812	84,464	93,643	105,885
단순 추정 부가가치세수(B)	7,681	8,446	9,364	10,589
상위 10개 간편사업자 부가세수(C)	899	1,299	2,120	3,103
추정 부가세수 대비 실제 부가세 비율(D=100*C/B)	11.7	15.4	22.6	29.3
국내 앱 판매 부가세 비율(E=100-D)	88.3	84.6	77.4	70.7
국내 앱 판매 매출액 추정(F=A*E)	67,822	71,474	72,443	74,855
국세통계연보 정보통신업 총수입금액(F)	43,755	47,359	51,748	56,533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ZGX7BA2>, file:///C:/Users/dwjung/Downloads/2020%EB%85%84%2011%EC%9B%94%ED%98%B8.%EC%A0%84%EB%AC%B8%EA%B0%80.pdf, 검색일자: 2023. 12. 15.

7.7조원, 2018년 8.4조원, 2019년 9.4조원, 2020년 10.6조원이다. 이 매출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수를 단순 계산해보면 2017년 7.6천억원, 2018년 8.4천억원, 2019년 9.4천억원, 2020년 10.6천억원이다. 추정된 부가가치세수 대비 실제 납부세수의 비율은 2017년 11.7%, 2018년 15.4%, 2019년 22.6%, 2020년 29.3%로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추정된 부가가치세수와 실제 세수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매출액 가운데 면세 매출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면세분 매출로 이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모바일 앱 시장 내 모바일 교육과 전자책 매출 등 면세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설명은 <표 9>에서 살펴 본 오픈마켓의 매출액은 국내 개발자가 공급하는 모바일 앱과 해외 개발자가 공급하는 모바일 앱의 매출액을 모두 포함한다. 국내 개발자가 제공하는 모바일 앱의 매출분에 대해서는 국내 개발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오픈마켓의 매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가운데 간편사업자 등록분으로 납부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국내 사업자에 의해 납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가능성은 부가가치세 일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다. 간편사업자로 등록한 비거주자 혹은 외국 법인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의 발급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매출에 대한 정확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실무적으로 모바일 앱의 종류별 매출 및 부가가치세 관리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고 거래 징수에 있어서도 관리가 완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세수 확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오픈마켓이 정상적으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하였다는 가정을 한다면 <표 9>에서 단순 계산한 매출액으로 추정한 부가가치세수 대비 실제 부가가치세수의 비율은 결국 오픈마켓의 매출 가운데 해외 사업자의 모바일 앱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대로 그 나머지 비율, 즉 2017년에는 88.3%, 2018년에는 84.6%, 2019년에는 77.4%, 2020년에는 70.7%는 국내 사업자의 모바일 앱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매출 규모를 단순 역계산 해보면 2017년에는 6조 7,822억원, 2018년에는 7조 1,474억원, 2019년에는 7조 2,443억원, 2020년에는 7조 4,855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추정되는 매출액의 연도별 증가율을 계산하면, 2018년에는 5.38%, 2019년에는 1.36%, 2020년에는 3.33%이다.

오픈마켓이 정상적으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하였다는 가정을 한다면 <표 9>에서 단순 계산한 매출액으로 추정한 부가가치세수 대비 실제 부가가치세수의 비율은 결국 오픈마켓의 매출 가운데 해외 사업자의 모바일 앱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내 과세 통계에서 파악되는 업종의 매출 증가율과 오픈마켓의 매출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국내 모바일 앱 개발 사업자들의 매출 증가율의 숫자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 비율을 우리나라 모바일 앱 개발 사업자들의 매출 정보와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았다. 우선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하여 국내 모바일 앱 개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살펴본다.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업자들의 사업자 등록은 앱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업종코드(722000)) 등으로 신고하여 일반적으로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된다. 이들의 연도별 총수입금액을 국세통계연보로 확인해본 결과 2017년 4조 3,755억원, 2018년 4조 7,359억원, 2019년 5조 1,748억원, 2020년 5조 6,533억원이다. 이는 앱 마켓 매출액을 토대로 추정한 국내분 매출 과표보다 그 크기가 작다. 모바일 앱 개발 사업자가 정보통신업 외에 기타 자영업 등 업종 분류를 다르게 하여 일부 신고되어 납부한 경우에 따른 차이로 추측된다.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연도별 매출액 증가율을 계산해보면 2018년 8.24%, 2019년 10%, 2020년 10.9%이다. 증가율은 앞서 추정된 모바일 앱 마켓 국내 매출액 증가율보다 훨씬 크다. 국세통계연보의 정보통신업의 범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업자들 전부가 오픈마켓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과세 통계에서 파악되는 업종의 매출 증가율과 오픈마켓의 매출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국내 모바일 앱 개발 사업자들의 매출 증가율의 숫자와는 큰 차이가 있다. 국내 모바일 앱 개발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에 대한 정보를 오픈마켓에 제공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국내 모바일 앱 개발 사업자의 매출분에 대해 오픈마켓이(의도와 상관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9>의 오픈마켓의 매출 자료 가운데 해외 사업자의 앱 판매의 비중으로 추정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25%를 하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data.ai’에서는 실시간으로 각 국가별 모바일 앱 시장을 분석하고 있어서,³⁾ 국내의 모바일 앱 시장의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다. <표 10>은 2023년 12월 15일 기준 국내 모바일 앱의 다운로드 순위이다. 애플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에서 각각 집계된 통계에서는 외국 개발사들이 공급하는 모바일 앱의 다운로드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위를 조금 넓혀서 확인하여도 국내 모바일 앱보다 해외 모바일 앱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다. 일별·월별 자료의 통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추이는 동일하다. <표 11>은 2023년 12월 12일 기준 모바일 앱의 인앱 구매량 순위를 집계한 자료이다. 인앱 구매에 있어서는 해외 모바일 개발사들이 공급하는 모바일 앱에서의 구매가 큰 부

3) 3개월 전 자료까지 제공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자료를 구입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보고는 그 정보에까지 접근하지는 않았다.

<표 10> 한국 무료 앱 다운로드 순위(2023년 12월 15일 기준)

애플			구글		
앱 이름	사업자 소재지	카테고리	앱 이름	사업자 소재지	카테고리
1 리버스 아레나	한국	게임	Temu: Shop Like a Billionaire	미국	쇼핑
2 고고 고수들	-	게임	Hunter Ignition: Idle RPG	한국	게임
3 Temu: Shop Like a Billionaire	미국	쇼핑	히어로킹 나와호랑이	-	게임
4 Threads, an Instagram App	미국	소셜 네트워킹	드래곤반지 오리진	-	게임
5 Zombie Defense	(외국)	게임	Melon Maker: Fruit Game	한국	게임
6 Solitaire- Awesome Card Puzzle	(외국)	게임	Super Zombies: 7B Zombies	한국	게임
7 듀얼 스피릿 블레이드	-	게임	쿠팡 플레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8 Wood Block Brain Puzzle Game	-	게임	Chat GPT	미국	생산성
9 Tile Connect-Candy Matching	-	게임	삼국! 뽕뽕!	중국	게임
10 등글등글 거위헬스장	중국	게임	SMASH LEGENDS: Action Fight	한국	게임
11 쿠팡 플레이	한국	엔터테인먼트	TikTok Lite	싱가폴	동영상
12 삼점삼	한국	금융	Threads, an Instagram App	미국	소셜 네트워킹
13 LastWar: Survival	중국	게임	LastWar: Survival Game	중국	게임
14 Chat GPT	미국	생산성	AliExpress	중국	쇼핑

출처: data.ai 정보 이용 저자 정리

<표 11> 한국 인앱 판매 순위(2023년 12월 12일 기준)

애플			구글		
앱 이름	사업자 소재지	카테고리	앱 이름	사업자 소재지	카테고리
1 마인크래프트	스웨덴	게임	마인크래프트	스웨덴	게임
2 A dance of fire and ice	미국	게임	A dance of fire and ice	미국	게임
3 Forest	대만	생산성	Five Nights at Freddy's	미국	게임
4 Pou	(외국)	게임	DungeonSquad	한국	게임
5 Negative-Film Look Filter	(외국)	사진 및 비디오	Five Nights at Freddy's	미국	게임
6 Plague Inc	영국	게임	삼국지 천하포무	중국	게임
7 Five Nights at Freddy's	미국	게임	서울 2033: 후원자	한국	게임
8 삼국지 천하포무	중국	게임	Kingdom Rush Origins TD	우루과이	게임
9 Pocket Build	영국	MoonBear	던전 공주 3	한국	게임
10 서울 2033: 후원자	한국	게임	Hitman Sniper	영국	게임
11 DungeonSquad	한국	게임	Game Booster 4x Faster Pro	영국	도구
12 Money Manager	한국	금융	This War of Mine	폴란드	게임
13 Five Nights at Freddy's 2	미국	게임	RFS-Real Fight Simulator	이탈리아	게임
14 피크닉 카메라	한국	게임	Kingdom Rush Frontiers TD	우루과이	게임

출처: data.ai 정보 이용 저자 정리

결론적으로 동 제도의 도입이 분명히 해외 모바일 앱 사업자 공급분의 국내 소비에 대한 과세로 추가 세수 확보를 창출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앞서 오픈마켓의 매출 자료에서 파악하는 시장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것을 시사한다. 오픈마켓의 매출 자료에서는 해외 개발사들의 모바일 앱에 대한 비중이 낮았지만, 시장의 수요는 해외 개발사들의 모바일 앱에 상대적으로 더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관찰된다. 해외 오픈마켓의 고정 사업장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과세 차원에서 국내 세무 당국이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모바일 앱 판매로부터 걷는 부가가치세수는 이론적으로 걷혀야 하는 세수보다 작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동 제도의 도입이 분명히 해외 모바일 앱 사업자 공급분의 국내 소비에 대한 과세로 추가 세수 확보를 창출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오픈마켓을 비롯한 해외 사업자에 대한 불투명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노력 등으로 추가 부가가치세수 확보의 가능성이 있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들 사업자들의 법인세수 확보 등 국제 조세 차원에서의 다각적 협력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2) 과세 형평성의 제고

동 제도의 사전적 기대 효과 중 두 번째는 국내의 모바일 앱 개발 사업자와 해외의 모바일 앱 개발 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이다. 국내 사업자들은 모바일 앱 판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거래 징수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동 제도 도입 이전에 해외의 모바일 앱 개발자들은 공급가액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앱을 판매하다가 제도 시행 이후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앱 판매 금액의 30%를 오픈마켓에 수수료로 낸 후 70%를 사업자가 갖는 구조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제도의 시행으로 국내 모바일 앱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지, 그래서 국내 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돌아가 과세 형평 차원의 문제를 개선했는지 여부, 둘째, 오픈마켓의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의무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납세 협력 비용을 사업자에게 전가하여 국내 사업자들은 추가적으로 의도치 않은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다.

첫째, 국내 모바일 앱에 대한 2015년 전후의 수요 정보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한다. 대안으로 모바일 앱 수요와 관련한 전반

적인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미디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12>는 미디어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모바일 앱에 지출한 규모의 변화를 계산한 통계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인앱 구매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2014년부터는 인앱 구매 개수를 별도로 조사하였다. 안타깝게도 유료 앱 다운로드와 인앱 구매의 지출에 대한 정보를 각각 조사하지 않고 모바일 앱과 관련한 총지출 금액만을 조사하여, 이들 둘을 구분하기는 어렵다.

2015년 이후 모바일 앱에 지출한 금액은 증가하였지만, 유료 앱 다운로드 개수와 인앱 구매량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출액과 구매량을 바탕으로 계산한 앱 다운로드 혹은 인앱 구매량 한 건당 평균 가격이 2015년에 1.4만원에서 16년 1.8만원, 2017년에는 3.3만원으로 증가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제도의 시행 이후 해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10% 증가하였으니, 앱 구매 한 건당 평균 가격이 인상된 것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이 점을 고려하더라도 미디어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계산한 앱 구매 한 건당 가격의 인상 폭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오픈마켓이 거래 징수에 따른 납세 협력 비용을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독점적 지위를 갖는 오픈마켓의 가격 책정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픈마켓이 거래 징수에 따른 납세 협력 비용을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독점적 지위를 갖는 오픈마켓의 가격 책정은 더욱 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 12> 응답자 애플리케이션 지출 금액 및 구입 개수(1년 기준)

(단위: 만원, 개)

연도	지출금액	구입(다운로드) 수	유료 앱 다운로드 수	인앱 구입 수	평균 가격
2011년	0.401	1.852	1.852	-	2.558
2012년	0.617	0.210	0.210	-	3.566
2013년	0.657	0.179	0.179	-	4.390
2014년	0.460	0.603	0.084	0.520	1.543
2015년	0.645	0.901	0.086	0.816	1.353
2016년	0.692	0.734	0.058	0.676	1.801
2017년	0.972	0.447	0.067	0.380	3.345
2018년	1.285	0.496	0.079	0.417	3.541
2019년	1.179	0.422	0.116	0.306	3.764
2020년	1.285	0.391	0.098	0.293	4.919
2021년	2.134	0.556	0.119	0.438	4.771

주: 2014년부터는 애플리케이션 내의 아이템 구입(인앱 결제) 개수도 포함. 따라서 2014년부터 조사 항목이 세분화되어 이전 연도의 정보와의 연계가 일부 단절이 있어 직접적인 비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음
출처: 저자 작성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오픈마켓에서의 모바일 앱의 가

구글의 가격 설정 방식은 애플의 앱스토어 가격 방식과 다르다. 구글의 경우 개발자들이 가격을 설정할 수 있지만, 애플의 경우 애플이 미리 정해놓은 등급에 따라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가격 책정 방식의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애플 앱스토어는 최근 들어 모바일 앱의 가격 정책을 15년 만에 수정했다. 애플은 기본적으로 등급별 가격 책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달러화로 가격을 책정하고 자체적으로 적용하는 환율을 사용하여 각 국가별 모바일 앱의 등급(티어, tier)별 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앱스토어 앱과 인앱 결제 가격 기준이 등급별로 0.99달러에서 시작하여, 1.99달러, 2.99달러 등 0.99달러로만 책정하여 정해진 자체 환율로 환산된 원화를 적용한다. 적용된 금액의 경우 티어 1에서는 1,200원, 티어 2는 2,500원이다. 이러한 기준이 2022년 10월부터 인상되어 각각의 기준이 1,500원, 3,000원 등으로 인상되었다(<표 13> 참고). 또한 2023년 봄부터는 가격 설정의 폭을 확대하였는데, 기존 94개의 가격 포인트에서 900개의 가격 포인트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따라서 기존에 설정할 수 없었던 가격, 예를 들어 3,500원 등의 설정이 가능해졌다(<표 14> 참고).

구글의 가격 설정 방식은 애플의 앱스토어 가격 방식과 다르다. 구글의 경우 개발자들이 가격을 설정할 수 있지만, 애플의 경우 애플이 미리 정해놓은 등급

<표 13> 애플 앱스토어 앱 가격(공급대가)

(단위: 원)

구간	기존	변경
1	1,200	1,500
2	2,500	3,000
3	3,900	4,400
4	4,900	6,000
5	5,900	7,500
...
27	33,000	41,000
28	35,000	43,000
29	36,000	44,000
30	37,000	45,000

<표 14> 애플 앱스토어 가격

인상 단위	가격 범위	예시
100원	400~2만원	400원, 500원, ..., 1만 9천원, 2만원
500원	2만~10만원	2만원, 2만500원, ..., 9만 9,500원, 10만원
1,000원	10만~20만원	10만원, 10만 1천원, ..., 19만 9천원, 20만원
5,000원	20만~50만원	20만원, 20만 5천원, ..., 49만 5천원, 50만원
1만원	50만~160만원	50만원, 51만원, ..., 159만원, 160만원
10만원	160만~759만원	160만원, 170만원, ..., 749만원, 759만원
50만원	759만~1,590만원	759만원, 809만원, ..., 1,540만원, 1,590만원

(tier)에 따라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또한 애플의 경우 각 국가별 환율의 적용도 독자적으로 정한다. 구글 플레이의 경우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애플 스토어의 가격과 큰 차이가 나면 시장을 뺏기기 때문에 크게 차이를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참고로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23년 9월 모바일 앱 시장(구글, 애플, 윈스토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오픈마켓 3사에서 모두 유통 중인 84개의 인앱 구매 상품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애플의 경우 평균 2만 6,714원, 구글은 2만 6,396원, 윈스토어는 2만 4,214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시 논의로 돌아가면, 결과적으로 2015년을 전후해서 애플 스토어를 비롯한 오픈마켓의 가격 책정 방식 자체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패널조사에서 평균 가격의 상승 폭이 크게 관찰되었다는 얘기는 사업자들의 티어 조정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 티어의 상향 조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사실이라면 과세 형평이 일부 제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렵다.

3) 소결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갖추고 국내외 사업자들의 과세 형평을 제고하면서 세수입을 확보하는 제도 개편은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과세 형평과 관련한 논쟁에 대해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사업자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오픈마켓에서의 매출 가운데 30%를 수수료로 오픈마켓에 지불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사실은 애플의 경우 국내 개발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는 공급대가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하고 해외 개발 사업자들에게 대해서는 공급가액의 30%를 수수료로 책정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다. 국내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수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수료율이 33%였던 것이다. 국내 개발사의 경우 수수료 외에 앱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고 있고, 해외 개발사들의 경우 오픈마켓이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는 구조적 차이도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최근 개정된 해외 수입차와 국내 양산차의 개별 소비세 부과와 과세 형평과 유사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도의 도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 체계를 갖추고 국내외 사업자들의 과세 형평을 제고하면서 세수입을 확보하는 제도 개편은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과세 형평과 관련한 논쟁에 대해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제도의 개편이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해외 모바일 앱을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공급가액 자체의 인상에 따른 부담도 고스란히 얻게 된다.

입이 국내외 사업자들의 과세 형평을 보장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영향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하는 부분은 이러한 제도의 개편이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해외 모바일 앱을 구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고, 공급가액 자체의 인상에 따른 부담도 고스란히 얻게 된다. 여기에 추가로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납세 협력 비용이 일부 사업자들에게 전가가 되었다면 궁극적으로 이러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VI. 시사점 및 결론


그렇다면 현재의 체계는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가? 진선미 의원 등은 국내 개발자와 해외 개발자 사이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에 대해 보완책으로서 개정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해외 개발자 모바일 앱에 대해서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오픈마켓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반면, 국내 개발자 모바일 앱에 대해서는 국내 개발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고 있어 해외 개발자와 국내 개발자 간 차별이 존재하여 조세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개발자의 국적에 관계 없이 오픈마켓이 앱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신고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은 EU의 최근의 움직임과 개별 국가의 과세권 확보 및 세수 확보와 관련한 국제적인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이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사업자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사업자들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를 오픈마켓에 이행케 하는 것은, 앞선 논의에서 살펴봤듯이 오픈마켓의 납세 협력 비용이 국내 사업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과 궁극적으로 이는 소비자 후생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 확보 관점에서도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록 단순한 계산으로 살펴본 바이지만, 해외 사업자들의 모바일 앱 매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수가 오픈마켓을 통해 제대로 걷히고 있는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국내 사업자들이 그나마 정상적으로 잘 납부하고 있던 부가가치세가 오픈마켓에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케 할 경우, 현재보다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논의는 급변하는 국제 조세의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논의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앞서 논의되어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먼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최정희·양인준(2019), 서보국(2020)에서 지적하듯이, 우리나라는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 용역의 “주된” 공급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현행 제도의 명확한 개선이 선제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EU가 오픈마켓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배경도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EU의 새로운 부가가치세 지침이 오픈마켓에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토록 하면서 동시에 재화의 거래에 대해 소액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폐지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대해 오픈마켓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면서 재화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면 재화 공급 사업자와 용역 공급 사업자 간의 과세 형평의 문제를 추가적으로 야기할 수도 있다. 최근 입법 움직임이 있는 국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의무가 오픈마켓에게 이전되는 것 역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따른 과세 형평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다국적 기업과 전자적 용역의 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세수를 정확하게 걷기 위해 세무 당국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을 위한 법적 정비 작업에 대한 검토도 추후 필요할 것이다. 국내 사업자들의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고, 과세 형평을 달성하고자하는 선한 의도가 자칫 국내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가 확보할 수 있는 세수를 정확하게 걷기 위해 세무 당국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을 위한 법적 정비 작업에 대한 검토도 추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성준·박수진·김효림, 『비거주 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 신고·징수 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박명호, 「전자적 영역에 대한 EU 부가가치세 과세동향과 시사점」, 『재정포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방효창, 「해외 글로벌 인터넷 기업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나?」, 발표 자료, 2018.
- 서보국,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역의 공급장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일의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서울법학』, 2020.
- 이승윤·임병인, 「모바일 앱의 수요 결정요인 분석」, 『경제연구』, 2022.
- 정건용·김병일, 『국제간 전자적 영역의 부가가치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5.
- 정규언·심충진, 「전자적 영역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017.
- 정유석, 「국외 전자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논의 발전과정과 최근 개정안 고찰」, 『경영사학』, 2015.
- 최정희·양인준, 「부가가치세법상 영역의 공급 장소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租稅와 法』, 2019.

정책연구

- +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김문정·정다운
- +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정다운·성명재
- +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최인혁·문지웅
- +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고지현·김정환·박정흠
- +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
정다운·강동익
- +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을 활용한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체계 변화의 효과 분석
권성준·김정환
- +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교육과 보건을 중심으로
김현아·박노옥·김정환

01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 +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1. 도입

고용보험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포괄하여 노무제공자로 정의하고 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세법상 노무제공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자와 자영자 중간에 위치한 취업형태에 놓여 있다. 취업 이후 정년이 보장되는 평생일자리 감소, 온디맨드(on-demand)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등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전보다 흔해졌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는 전통적인 전일제·상용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과세 및 지원 제도에 도전과제를 안긴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인적용역 사업자를 위한 각종 사회안전망 및 재정 지원이 확대된 바 있다.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를 활용하여 2021년 7월에는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인적용역 사업자 대상의 고용보험(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도입되었고, 관련 산재보험의 제도적·실질적 적용 범위도 크게 확대된 바 있다. 이러한 제도와

정책의 변화는 인적용역 사업자가 공식적인 과세 및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있음(혹은 포함되는 과정에 있음)을 함의한다. 이러한 제도 변화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와 관련된 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한다.

2. 제도와 정책의 검토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분석 대상은 소득세와 4대 보험이며, 지원제도의 대상에는 고용보험 급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장려세제 등을 고려하였다.

본고에서 연구자가 검토할 때 분석의 관건은 인적용역 사업자 관점에서 고용형태 다변화를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고용형태 다변화)과 인적용역 사업자와 근로자 간의 적용 및 부과 측면에 문제가 존재하는지(근로자와의 적용-부과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어떠한 제도가 고용형태 다변화를 포용하지 못하면, 고용형태별로 형평

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검토 결과, 소득세 제도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관련된 매출을 과세당국이 적절히 포착하고 있다고 판단되나 경비율 제도 및 관련 관행에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제도는 다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한 소득과익이 무리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과세당국의 소득과익은 사실상 매출과익이며, 실질적인 비용(경비) 측면을 과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 인적용역 사업매출에 대한 관대한 경비율이 적용되면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사회보험 제도의 경우, 다양한 취업형태를 포용하여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 유연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가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그러한 소득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높은 수준의 소득금액인 경우에만 반영하고 있다.

지원제도의 경우, 취약한 인적용역 사업자의 포착 수준 및 제도 간 관련 기준의 정합성 측면을 검토하였다. 근로장려세제나 자녀장려세제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자 여부에 상관 없이 모두 가구단위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두 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에서는 지원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를 개인단위에서 판별한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관련 재산 및 소득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데, 이와 관련한 합리적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

한편 본 연구는 실시간 소득과익 인프라 및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대상 고용보험의 도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정태적 이중차이법을 적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의 효과가 존재하지만, 동태적 이중차이법을 적용하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정태적 이중차이법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실시간 소득과익 인프라,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대상 고용보험으로 인한 소득신고 및 고용보험 가입에 순응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향후 정책방향


향후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세당국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관련 경비율 수준을 현실화하고, 인적용역형 기타소득에 대해서도 업종코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보험공단의 보험료 적용·부과 행정은 과세당국의 과세자료(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기반하는 만큼, 과세당국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비율 조정이 갖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업종코드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과세당국 자체적으로 업종코드를 판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자 중에서도 인적용역 사업자 성격이 강한 경우를 판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제도의 경우, 개인의 취업소득의 합산 소득에 기반하여 사회보험료가 부과·징수되면 고용형태 다변화를 가장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의 자격기준을 없애는 것이 어렵다면,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인적용

역 사업소득을 보험료 부과 대상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고용보험에서는 별도의 유형(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대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보험제도 중 가장 유연한 편이다. 그러나 상용직 일자리의 복수취업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고,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인적용역 사업업종이 일부 업종으로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미 월별 기준의 취업소득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으로부터 협조받고 있으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고용보험 적용 업종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의 경우, 현행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으로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고, 자산기반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제도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배타적인 고용형태로 간주하기보다는, 다른 유형의 소득(특히 근로소득) 동반 발생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개인의 합산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과세자료를 통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발생이 다른 소득과 결부되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즉 부수입의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자’라는 고용형태를 배타적으로 간주하고 과세 및 지원 제도를 설계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3-01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02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 +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1.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를 전망하고 정책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부가가치세는 우리나라 국세 수입의 주요 3대 세목 중 하나로서 세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022년 연간 국세 수입 395.9조원 가운데 부가가치세수는 약 81.6조원으로 전체 국세 수입의 약 20.6%를 차지하며, GDP 대비 약 3.94%를 차지한다. 주요 3대 세목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는 부가가치세에 비해 경기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아 세수의 변화 폭이 큰 반면, 부가가치세수는 비교적 세수의 확보 측면에서 안정적인 점이 차별화된 특징이다. 부가가치세 세수 확보의 안정성은 부가가치세의 넓은 세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소비 행위를 지속하는 한 원칙적으로는 세원의 확보가 명확하다.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갖는 원론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넓은 세원 확보가 앞으로도

용이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변화는 부가가치세 세원 확보에 불투명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감안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부가가치세수의 확보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더해 우리나라의 경제 생산성이 낮아지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도 우려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변화는 대부분의 세목에서 세원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기 변동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고, 다른 세목에 비해 세수의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수 전망은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선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수 전망에 대한 연구는 저자들이 파악하기로는 성명재(2012)의 연구가 최근이다. 그 이후 우리나라 사회는 매우 빠르게 구조적인 변화를 겪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경제 구조 역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매우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더욱 낮아져, 장래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장기 세원 분포 전망을 재작업한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 전망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 번째는 기존에 부가가치세 장래 전망에 사용된 전통적인 방법으로 거시 집계 자료와 산업연관표 자료를 사용하여 전망한다. 산업연관표의 부문 분류에 따라 과세소비와 면세소비를 구분하고, 각 부문별 소비지출의 소득 탄력성 값을 산출하여 각 부문별 장래 부가가치세 세수 전망치를 도출한다. 두 번째는 미시 가구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존 연구에서는 활용된 적이 없는 방법이다. 본 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개별 가구의 소비지출액과 소득·인구 구성 등의 관계를 추정하고 이러한 관계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한 상황에서 미래의 인구 구조 변화, 소득 변화 등의 추정값을 이용하여 장래 가구의 소비지출을 전망한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전체 부가가치세수를 전망한다.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장래 전망을 하는 것은 기존의 거시 집계 자료만을 사용한 방법과 비교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가. 거시적 방법

거시적 방법은 거시 경제 변수 자료와 산업연관표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산업연관표(투입산

출표)는 1960~2015년 동안 구축된 실측표를 분석에 사용한다. 이 기간 동안 실측표는 1960년, 1963년, 1966년,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3년, 2005년, 2010년, 2015년의 14개가 존재한다. 1960~1970년의 4개년은 통합소부문(109~153부문) 기준 표, 1975년부터 최근까지는 기본부문(381~405부문) 기준 표이다. 1960~1970년의 통합소부문 표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다운로드받았으며, 1975~2015년의 기본부문 표는 한국은행 내부자료를 협조받아 사용하였다. 산업연관표의 가장 최근 자료는 2015년으로 이 자료를 기준으로 장래를 전망한다.

부가가치세 세원분포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각 부문별 소득탄력성 값이 필요하다. 부문별 민간소비지출에 탄력성 값을 적용하여 미래 시점의 GDP 값을 대입해줌으로써 각 부문별로 민간소비지출액 전망치를 도출할 수 있다. 부문별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면세 여부를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비와 면세소비 분포를 전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래 세원분포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소득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이 선결조건이다.

부가가치세 장기 세원분포를 추정·전망하기 위해서는 민간소비지출을 과세분(민간)소비(이하 과세소비로 지칭)와 면세분(이하 면세소비) 소비로 구분하여야 한다. 과세소비를 추정하는 목적은 주로 최종소비단계에서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직접세수를 추정하기 위한 세원을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면세소비를 추정하는 목적은 최종소비단계 또는 그 이전의 생산·유통 중간단계에서 누적효과의 형태로 부가가치세 세수를 구성하는 간접세수를 추정하기 위한 세원을 구성하기 위해서이다. 간

접세수는 면세부문과 과세부문 모두에서 생성된다. 다만 비율적으로는 면세부문에서 누적효과 형태로 생성되는 세수규모가 과세부문에서 생성되는 세수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다.

분석 모형은 SUR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다. 과세 소비와 면세소비 분포는 2가지 방법으로 추정·전망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부가가치세 과세 민간소비 지출과 면세 민간소비지출에 대한 회귀방정식 추정식에 경상GDP 전망치를 대입하는 방법으로 장래 전망치를 추정하였다. 다만 회귀식으로부터 추정한 추정치와 실적치 사이에 괴리 또는 일정한 오차가 발생한다. 오차를 조정하기 위해 회귀분석 자료의 마지막 연도인 2015년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끝주소정(end-point adjustment)을 시행하고, 동 조정률을 2016~2035년 초기전망치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비례적으로 조정해줌으로써 최종 전망치를 추정하였다.

두 번째 방법은, 민간소비지출을 30개의 세부부문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부문별 민간소비지출 추정 결과와 소득탄력성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위의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한 방법을 각 부문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30개 부문별 과세 또는 면세 민간소비지출을 추정하고, 과세부문과 면세부문으로 재분류하여 합산한 합계치를 각각 과세소비와 면세소비 전망치로 설정하였다.

두 가지 방법으로 추정한 결과, 첫 번째 방법에 의한 민간소비지출 값이 두 번째 방법보다 조금 더 크게 추정되어 부가가치세 세수 또한 전자의 추정치들이 후자의 경우보다 조금씩 더 크게 추정되었다. 부가가치세 세수전망치의 GDP 대비 비율은 2015년 3.87%에서 2035년 3.84%(전자) 또는 3.81%(후자)로 조금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었

다. 두 가지 경우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GDP에 대해 조금씩 비탄력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나. 미시적 방법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1998년부터 시작된 패널조사이며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가구 및 개인을 표본으로 소득, 소비 지표를 비롯하여 노동 시장, 사회경제적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는 개인 및 가구의 소비 활동에 집중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소비 품목의 조사는 제한적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가구 및 개인의 소비 활동의 추이와 통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본고의 중요한 점인 부가가치세 추정에 요구되는 과세와 면세 분류를 위한 세분류 단위의 소비 품목의 조사는 없지만, 이는 다른 가구 조사 및 개인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미시 분석에 활용하는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본고의 분석에 필요한 소비 품목 및 소비지출에 대한 자료가 조사되었다. 둘째, 가구 패널조사로 여러 해에 걸친 가구의 특성을 미시 모형 분석에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앞서 살펴 보았듯이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산출한 소비 성향의 크기가 가계동향조사와 유사하고, 소비 추이가 유사하여 소비 측면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별 부가가치세 지출 금액을 추정한다. 둘째, 추정된 가구별 연간 부가가치세수 납부액과 가구의 특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 간에 미시적인 관계를

추정한다. 분석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변수는 가구주 연령, 주소(광역시 단위), 가구원 수, 가구 소득이다. 이는 통계청(2022)의 광역시별 장래인구 추계에서 제시한 기준으로 추후 모형을 통한 장래 부가가치세수 추정에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에서 산출한 개별 가구의 월별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토대로 연간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추정하기 위해 월별 납부액을 연간 수치로 환산하였다. 그리고 개별 가구의 모집단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서베이 가중치를 적용하여 노동패널조사에서 추정하는 가구의 연간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계산하였다. 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납부액과 실제 부가가치세수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실제 부가가치세수 추정치에 이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실제 부가가치세수와, 자료에서 추정된 부가가치세수의 비율이 연도별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어 이 비율의 값을 적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이 비율 값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일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체 방안으로서 추정된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연도별 증가율을 이용하여 실제 부가가치세수를 추정한다.

이렇게 추정한 결과 부가가치세수의 장래 전망 값은 2025년 약 98.7조원, 2030년 126.7조원으로 추정된다.

다. 소결

본고에서 제시한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을 통한 추정 결과와 기존 성명재(2012)의 결과를 비교한다.

성명재(2012)의 추정 결과 2025년의 부가가치세수는 약 123.2조원으로 추정하였으나, 본고에서 분석한 결과는 93조~98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차이는 10년 전에 성명재(2012)의 연구에서 추정 과정에서 전제한 경제 성장이 실제보다 훨씬 둔화되었으며, 사람들의 평균소비성향 역시 예상보다 감소하였고, 인구 구조 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소비 품목의 변화가 원인으로 보인다. 2030년에 이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성명재(2012)의 추정 결과는 약 154.9조원, 본고의 거시적 방법을 적용한 부가가치세수의 전망치는 111.8조원, 미시적 방법을 적용한 부가가치세수의 전망치는 126.7조원으로 나타났다. 2040년, 2050년에는 그 격차가 더욱 커지는데, 이는 가속화되는 우리 사회의 구조 변화가 10년 전 예측보다 더 빨라졌다는 것의 방증이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성명재(2012)의 연구와 유사한 방법을 사용한 본고의 거시적 방법에서의 추정 결과가 성명재(2012)와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유사한 방법과 유사한 자료를 사용했음에도 두 연구에서 추정한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수는 약 40조원 차이가 난다. 거시적 방법을 적용하여 2040년과 2050년의 부가가치세수를 추정하면 이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 적용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미시적 방법을 적용하여 장래 부가가치세수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2050년 기준으로는 부가가치세수의 전망은 약 100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는 방법론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전망의 전제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기존보다 저출산·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가구 구성의 변화도 매

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가구의 소비 성향에 미친 영향은 미시 가구 자료를 통해 포착할 수 있었으며, 장기적으로 이러한 추세에 구조적인 변화가 가미되지 않는다면, 과거 10년 전의 부가가치세 추정과 크게 괴리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3. 정책 시사점 및 결론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이다. 이는 단순히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및 지원 규모도 더 광범위해질 필요성이 높아졌다. 자연스럽게 이와 관련된 재원 확보에 대한 논의도 중요해졌다. 우리나라의 세입을 주도하는 여러 세목 중 부가가치세는 장기적으로 세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원 확보와 관련된 논의에 부가가치세의 논의가 동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의 급격한 사회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부가가치세의 세원 확보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게 되었다.

본고에서 거시적 방법과 미시적 방법을 통해 추정된 부가가치세수는 기존에 작업한 장기 전망치보다 그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세수 확보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가능성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그 안정성은 앞으로 세계 혹은 사회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으로 저해될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는 학술적, 정책적 측면에서 기존 연구에 기

여하였다.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안 및 적용하여 장래 부가가치세수를 전망하였다. 세수 전망은 보통 거시 집계 자료를 사용하여 전망하는 만큼, 기존의 부가가치세수 장래 전망도 산업연관표와 거시 집계 변수를 사용한 전망 방법이 주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방법론에 더해 최근에 미시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본고에서는 이를 토대로 가구의 부가가치세 납부액 추정과 이를 통한 전체 부가가치세수 전망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최소한 단기 시계에서는 미시 모형을 통한 전망치가 비교적 정확하였다. 앞으로 구축된 미시 자료의 기간이 더 누적될수록 본고에서 제안한 미시적 방법의 장기 시계에서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정확성이 검증된 후에야 본고에서 제안한 방법의 활용도가 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기여도는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변화가 야기한 세원의 잠식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현 시점에서 예상한 부가가치세 장래 세수는 미래 시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 전망으로 평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회의 변화가 현재와 같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제의 구조적/근본적 변화를 통해 세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본고의 분석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정책적 측면에서의 기여라 할 수 있다. KIP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3-03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03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

- +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문지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2023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통합고용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로 대표되는 고용창출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기업의 고용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제도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이전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등이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지원 방식, 상시근로자 요건, 사후관리 규정 등의 측면에서 제도 간 비통일성이 상당하여 잠재적 수혜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등 제도 운영상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¹⁾ 이에 제도 전반의 정합성 내지 체계성 제고를 목표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상기 5개의 고용지원 제도들을 통합하는 방안이 ‘2022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통합고

용세액공제」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모든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삼으며, 근로자 유형, 기업 규모, 지역 등에 따라 고용증가 인원당 2~3년간 400만~1,550만원 수준의 기본공제를 허용한다. 나아가 정규직 전환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1년간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의 추가공제를 제공한다. 그러나 일정기간(2년)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수혜 받은 공제액이 추징되도록 사후관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2023년 12월 현재를 기준으로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적용기한이 제한되어 있다.

고용증가 인원당 공제액 규모가 상당한 만큼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조세지출액 역시 상당한 편인데, 2023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조세지출액은 3조

1)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2022. 7. 21., p. 14

5,9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²⁾ 이는 감면액을 기준으로 전체 조세지출 항목 중 여섯 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3조 9,940억원) 또는 면세농산물 등의 제매입세액 공제특례(3조 5,339억원) 등의 조세지출액과 유사한 수준이다.

집약할 수 있는 바와 같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조세지출액 역시 상당한 수준이었는데, 그에 따라 고용창출 세제 지원의 도입·운영 효과에 관한 사후적 평가, 그리고 그에 기반한 정책적 제안들은 상당 수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가령 고용지원 관련 주요 조세특례 제도들을 대상으로 조세특례 심층평가가 다수 수행되었으며, 해당 연구들에서 고용 관련 조세지원 제도들의 효과성 내지 실효성이 다소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됨과 동시에 유사 목적 제도들의 통폐합, 고용지원 재정사업들과의 연계 강화, 경기변동에 따른 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이 고용 관련 조세지원 제도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아쉽게도 고용창출 세제지원 제도들의 효과성이(미)관찰된 이유에 대하여 엄밀히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국내) 연구는 희소한 편인데, 바로 이러한 까닭에 고용창출 세제지원 제도의 세부적·중장기적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 역시 다소 제한적인 수준에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고용창출 세제지원의 직·간접적 효과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을 구축·

활용함으로써 향후 고용창출 세제지원의 효과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론적 모형에 기반한 반사실적 정책실험을 수행함으로써 고용창출 세제지원 제도의 비용효율성을 다양한 시나리오하에서 평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향후 고용창출 조세특례 제도들의 일몰 도래 시 정책적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학술적·과학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제시하고자 한다.

제도 운영 방식에 있어 고려되는 측면은 제도 운영기간, 지원 대상 범주, 공제액의 크기, 경기변동과의 연동 여부, 사후관리 규정의 도입 여부 등이다. 각각의 제도 운영 방식에 따른 비용효율성은 일자리당 창출비용을 바탕으로 비교·평가되는데, 일자리당 창출비용은 실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성이 반영된 구조모형으로부터 이론적 또는 수치적으로 도출된다. 이론적·수치적 분석을 위해 활용하는 구조모형은 프랑스의 고용창출 세제지원 사례를 연구하였던 Cahuc et al.(2019)의 구조모형을 변형·확장하여 구축하였다.

노동시장 내 마찰이 존재하고 임금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기업의 최적 고용량은 일반적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수입이 고용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비용과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³⁾ 이때 고용창출 세제지원이 한시적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가운데 운영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고용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비용은 ‘현재 임금 - 지원금’과 ‘현

2) 대한민국정부,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3, p.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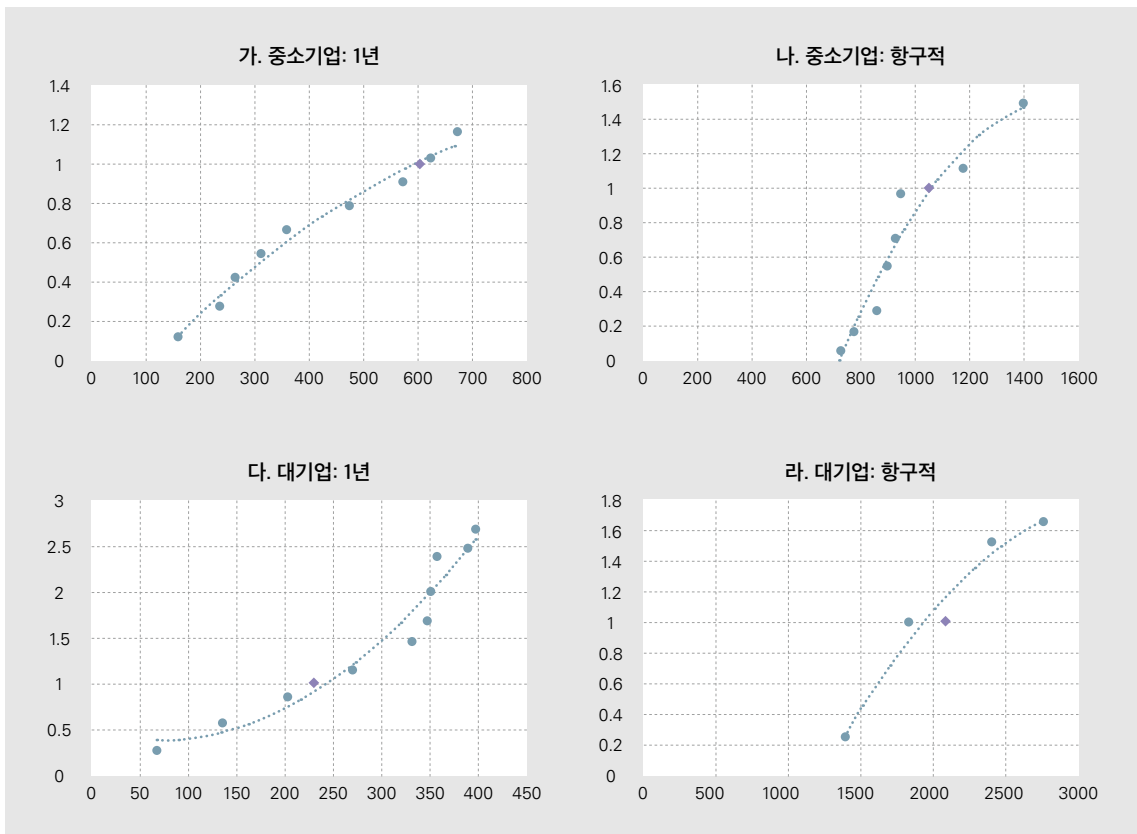
3) 이하 이론적 분석과 관련한 서술은 직관적인 설명을 위하여 엄밀한 논의를 배제하고 있다. 이론적 분석과 관련한 논의는 본 보고서 제IV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재 빈 일자리 유지비용 - 미래 빈 일자리 유지비용 (의 현재가치)'의 합으로 나타난다. 반면 고용창출 세제지원이 비한시적으로(항구적으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가운데 운영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고용의 한 단위 증가에 따른 비용은 앞선 경우에 미래 지원금의 현재가치만큼이 더해져 결정된다. 따라서 고용창출 세제지원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비해 한계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세제지원이 항구적으로 운영될 경우(노동에 대한 한

계수입이 노동에 대해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고용량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아짐과 동시에 일자리당 창출비용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한편 고용창출 세제지원이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일반균형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고용창출 세제지원에 의해 노동시장 내 구인배율이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고용비용의 상승을 의미하게 된다. 즉, 일반균형 효과가 존재할 때 혼잡 외부성 등에 의해 고용창출 세제지원의 일

[그림 1] 공제액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당 창출비용의 변화



- 주: 1. 각 그림의 가로축은 일자리당 창출비용, 세로축은(현행 대비) 전체 고용효과를 의미
- 2. 각 그림의 붉은 점은 현재의 경제 상태, 푸른 점들은 공제액 변화에 대응되는 각 경제의 균제상태를 의미하며, 점선은 해당 점들을 2차식으로 근사한 추세선임
- 3. 위 정책실험에서 일반균형 효과는 고려되지 않음

출처: 저자 계산 및 작성

자리 창출 효과가 일부 상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일반균형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일자리당 창출비용이 높아지게 된다.

이상의 이론적 분석에서 제도 운영기간이 한시적일 때, 또는 일반균형 효과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일자리당 창출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공제액의 크기, 경기변동과의 연동, 사후관리 규정의 도입 등의 측면에서 이론적으로 비용효율성을 평가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앞서 이론적 분석에서 활용하였던 기본모형을 변형·확장하고, 해당 모형의 모수를 자료에 기반하여 설정함으로써 수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수치적 분석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한 부분은 공제액의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당 창출비용의 변화 양상이다. [그림 1]은 해당 분석 결과를 요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공제액의 규모가 커질수록 일자리 창출 효과와 일자리당 창출비용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비용효율성이 반비례 관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공제액의 최적 규모 결정에 있어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고용창출 세제지원이 경기변동과 연동되는지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일자리당 창출비용이 변화하는 양상을 검토한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고용창출 세제지원을 경기변동과 연동하여 운영할 경우, 불경기 시 지원금의 규모를(자동적으로) 증가시켜 기업들의 고용을 촉진함에 따라 경기상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요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원금(상향) 지급의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는데, 수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변동과의 연동 여부가 일자리당 창출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비용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세제지원과 경기변동의 연동 여부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 셈이다.

<표 1> 세제지원이 경기변동과 연동되는 경우의 일자리당 창출비용

(단위: 만원)

제도 운영기간	경기변동과의 연동 여부 및 정도	일자리당 창출비용	
		중소기업	대기업
1년	x	604	231
	$k=1$	604	231
	$k=3$	604	231
5년	x	714	665
	$k=1$	714	665
	$k=3$	724	661
항구적	x	1,053	2,090
	$k=1$	1,064	2,089
	$k=3$	1,044	2,090

주: 1. k 는 경기변동과의 연동 정도를 나타내는 모수
2. 위 정책실험에서 일반균형 효과는 고려되지 않음

출처: 저자 계산 및 작성

<표 2> 사후관리 규정 존재 여부에 따른 일자리당 창출비용


(단위: 만원)

제도 운영기간	사후관리 규정 존재 여부	일자리당 창출비용	
		중소기업	대기업
1년	○	604	231
	×	684	231
5년	○	714	665
	×	927	659
항구적	○	1,053	2,090
	×	986	1,778

주: 위 정책실험에서 일반균형 효과는 고려되지 않음
출처: 저자 계산 및 작성

끝으로 사후관리 규정의 존재 여부에 따라 일자리당 창출비용이 변화하는 양상은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정 기간(2년)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 수

해 받은 공제액을 추정하는 사후관리 규정의 존재는 수혜 기업의 고용유지를 장려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사전적으로 세제지원의 고용창출 효과를 제한할 여지도 있는데, 수치 분석 결과는 제도의 한시적 운영 여부에 따라 사후관리 규정의 비용효율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수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될 경우 사후관리 규정의 존재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으로, 제도가 항구적으로 운영될 경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후관리 규정의 도입·유지가 비용효율성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상의 반사실적 정책실험을 통해, 본 연구는 세액공제액의 크기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는 가운데 적정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경기변동과의 연동 여부 및 사후관리 규정의 존재 여부가 제도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하므로 해당 측면에서의 제도 운영방향은 보완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밝혀내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각 운영 방식에 따른 비용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산된 일자리당 창출비용은 모형의 모수 설정 방식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의 수치 분석 결과 해석 시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함을 마지막으로 언급해 둔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3-04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04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 +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된 환급형 세액공제제도인 근로장려세제는 2009년도에 처음으로 지급된 이래로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서 수혜 대상을 확대해왔다. 근로장려세제의 개정은 수혜가구의 구성 또한 변화시켰는데, 대표적 변화 중 하나는 연령구성의 변화이다. 2010년 수혜가구 가구주는 40~50세(45%)와 30~40세(39%)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60세 이상은 1%로 많지 않았다.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비중은 2013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여 2022년에는 그 비중이 29.1%를 차지하며 가장 컸다.⁴⁾

반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고령의 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대표적으로는 단독가구 연령요건 완화에 따른 노동공급 효과를 다룬 이정우 외(2022)와 60~65세 부표본의 효과를 분석한 박지

혜·이정민(2018) 등이 있으나 은퇴결과와 같은 고령 수급자가 겪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논의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이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이유는 고령 수급자의 경우 이미 노동시장에서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고려 중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고안된 근로장려금의 주된 수혜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대수명의 연장과 함께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저출산 및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직접일자리사업 등 정부주도의 소득보존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령층의 민간노동시장 참여와 그를 통한 소득보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고령층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러한 정책적 수요를 채워주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그다음으로 많은 연령대는 30세 미만(28.7%)과 50~60세(16.3%)였다.

이에 본 연구는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가 고령자의 경제활동 및 소득과 은퇴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정패널(2011~2021년)과 국세청 데이터(2017~2022년)를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표본은 60세 이상뿐만 아니라 50~60세 미만의 준고령자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평균 은퇴연령이 56.9세임을 감안하여 은퇴행위를 포함한 경제활동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기 위함이다. 또한, 50~60세 미만은 2022년 기준 수혜가구 중 16.3%를 차지하여 60세 이상, 30세 미만 다음으로 많은 연령그룹이다.

제Ⅲ장에서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추이 및 소득 관련 현황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조사를 위해서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2022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령대별 경제활동을 분석한 결과 50세 이상 취업자 수와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저소득 70세 이상 취업자 비율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저소득 가구 고령층의 경우 경제활동 필요성이 증가하여 고소득가구와는 달리 경제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50세 이상은 높은 비율로 임시·일용 근로자 및 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자 등 종사상 지위가 열악한 부문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60세 이상에서 그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평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공적이전소득을 살펴보았을 때, 평균근로소득은 2012~2022년도 사이에 전 연령대에서 증가하여 50대 2,200만원, 60대 1,000만원, 70대 이상 200만원 수준이었다. 사업소득은 50대에서는 하

락, 60대에서는 증가하였고, 재산소득은 60대에서 350만원으로 가장 높게, 70세 이상과 50대 연령대에서는 250만원 수준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공적이전소득의 수령은 대체로 60대 이상에서 나타났는데 60대는 3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70대는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공적이전소득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공적연금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50대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60세 이상은 기초연금의 비중이 그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외의 뚜렷한 변화로는 2012~2022년도 기간 동안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점과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의 비중이 2020년 이후 전 연령대에서 높아졌다는 점이다. 특히 50대의 경우 2022년 공적이전소득 구성에서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의 비중이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아, 50대의 경제활동에 근로장려금이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제Ⅳ장에서는 근로장려금이 50세 이상 준고령자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 소득, 은퇴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위해서는 근로장려금의 외생적 수급자격의 변화를 사용하였다. 즉, 2010~2020년도 재산, 배우자·부양자녀, 연령, 대상요건 등과 같이 수급자격 중 외생적인 요건의 변화로 수급자격에 생기는 변동이 근로 여부 및 정도, 소득, 은퇴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별히 전기에 근로장려금에 대한 수급자격을 획득한 경우, 다음 기에 노동공급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기는지 식별하는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외생적 수급자격의 변화를 사용하는 방식은 실제 근로장려금

의 수급 여부를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는데 비슷한 방식으로 근로장려금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해외의 Bastian and Michelmores(2018)와 국내의 박지혜·이정민(2018)이 있다. 본고는 근로장려금 수급 시점과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고려하여 분석한 점과 2015년 이후 세법개정에 따른 변화를 반영한 것, 그리고 준고령자 및 고령자 노동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세분화된 분석을 진행한 점이 차이점이다.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2011~2021년도 4~14차 재정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표본으로는 2013년도 기준 50세 이상(1963년 이전 출생자)을 사용하였다. 50대와 60대의 생애주기가 다르다는 점과 근로장려금의 연령요건 완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2013년 기준 60세 이상(1953년 이전 출생자)인 가구주와 2016년도 기준 50세 이상 59세 미만(1966~1973년 출생자)인 가구주로 부표본을 나눈 이질성분석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이 2013년도부터 60세 이상, 2016년부터 50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사용된 부표본들은 연령요건 완화로 인한 효과를 가장 크게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은퇴 여부, 사업소득별, 가구유형(유배우자·무배우자 가구,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별, 구간(점증, 점감, 평탄)별 이질성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 여부와 근로시간에서는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총소득액 및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업종별 조정률)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총소득액과 총급여액 등은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주어진 다음 해에 각각

764만원, 333만원가량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는데, 표본가구주 평균 소득액과 비교하면 각각 평균 대비 10% 정도의 변화로 다소 크게 측정되었다. 증가효과는 주로 60세 이상, 은퇴하지 않은 가구주,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주, 무배우자가구 혹은 유배우자가구 중 맞벌이가구의 가구주에서 크게 나타났다.

수급가능변수를 사용하는 분석은 내생성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제수급 여부와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분석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를 수급가능변수를 실제수급 여부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의도된 처치효과(Intention to Treat, ITT)를 국소평균처치효과(Local Average Treatment Effect, LATE)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검토해보았다. 분석 결과 기존 결과와 유사하게 총소득 및 총급여액이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총소득의 경우 그 증가가 여전히 유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재정패널의 경우 표본의 다수가 사업소득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질성분석의 결과 소득의 증가가 주로 사업소득자에게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발견된 소득의 증가가 실제 근로의 증가와 연관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근로와 관련되지 않은 매출액의 증가나 보고하는 소득의 증가 등에 의해서도 소득의 변화가 관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세청 데이터를 사용하여 2017~2022년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전기에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50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서 현재기에 총급여액 등의 증가가 발견되었는지와 수급한 근로장려금의 크기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평균 총급여액 등(근로소득+사업소득×업종별 조정

률)의 증가는 3만원가량으로 총급여액 평균 대비 0.2%가량으로 나타나 재정패널에서의 추정치와 차이가 있었다. 60세 이상의 부표본에서는 증가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 33만원, 평균 대비 3%가량으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비중의 차이와, 사업소득자의 경우 업종구성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미시자료는 더 많은 근로소득자와 인적용역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어, 비교적 수입금액 조정의 여지가 많지 않아 소득의 증가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총급여액 등과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증가액은 40만원으로 나타나 평균 대비 4.5%가량의 증가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장려금으로 고령자가 은퇴(노령연금 조기수급 여부 및 주관적 은퇴 여부)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발견되었다. 즉,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기간이 1년 증가하는 경우 노령연금조기수급 여부(1.9%)와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목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의사가 없는 경우’로 정의된 주관적 은퇴 여부(11.4%)가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이 가구의 사업소득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실제 노동공급 및 소득의 증가로 인한 효과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조기노령연금 수급확률이나 은퇴시점을 미룸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이자 중년

기 및 노년기 해당 수혜자의 비율이 높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의 중첩효과를 살펴보았다. 근로장려금 시행 당시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2014년도 세법개정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도 근로장려금을 수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15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개정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실제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게 되면서 2015년부터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고 중복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2009~2021년 한국복지패널데이터를 사용하고 정태적 노동공급모형에 기반한 2 stage least squares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제도 변화가 있었던 2014년과 2015년 사이에 노동공급에 따른 비효용이 작아지면서 노동공급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효과는 1인가구, 단독가구⁵⁾에서 크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의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일자리의 소득보존성은 높지 않을 수 있으며, 공공부문에서의 취업비중 또한 높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제Ⅲ장의 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50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는 증가하고 있으나 대체로 일용·임시직이나 고용자가 없는 자영업과 같이 소득보존성이 약하고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2021년 사회보장복지데이터⁶⁾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5) 1인가구는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구를 의미하며,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수급액 결정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정의된 가구유형 중 하나로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한다.

6) 베타데이터로 2023년 10월 기준 행정데이터를 사용하였다.

60세 이상 근로장려금 수급자들 중 20%, 65세 이상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45%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근로소득자의 많은 경우는 대체로 직접일자리사업, 특히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의 낮은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소득보존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장려금이 고령층의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서의 취업을 유도하고 소득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의 역할은 아직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령층의 민간에서의 근로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 노인인구는 교육수준 및 건강상태의 증가로⁷⁾ 근로참여의 가능성과 근로의욕이 과거에 비하여 높아졌다. 또한, 본고의 제Ⅳ장과 제Ⅴ장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근로장려금 수급은 주관적 은퇴유보의 효과가 있으며, 고령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게도 근로 유인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근로의욕 제고가 실제 외생적 노동시장 참여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에 비추어 보아 노동수요자 측면에서의 유인제공이나 은퇴 이후 재이행을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시행되는 관련 제도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일자리 사업의 참여가 미미하며, 민간으로의 이동실적 또한 저조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사업개선을 통해 효과성 제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창수·이환웅, 2020). 또한, 고령층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자본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 또한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노력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마찰이 해결될 때, 근로장려금으로 증가된 고령 수급자들에 대한 근로유인이 실제 근로 및 소득의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KIPF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2-05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7)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2021,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351000-202000271>, 검색일자: 2023. 12. 15.

05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

- +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 강동익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



1. 연구 배경 및 목적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보유 평균액은 약 5억 4,772만원이다(통계청, 2022). 이 가운데 금융자산은 약 22%인 1억 2천만원, 약 78%는 실물 자산으로 약 4억 3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주택자산이 약 4억원으로 실물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부채를 차감한 가구의 평균 순자산 규모는 약 4억 5,602만원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56%가 3억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순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약 11.4%이다. 소득 5분위 계층의 평균 순자산 규모는 2022년 10억원을 넘었고, 모든 계층에서 2021년 이후 순자산 규모의 증가가 뚜렷하게 관찰된다.

자산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자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다. 코로나19 이후 자산 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자산 규모의 증가는 물론 이에 따른 세 부담 역시 크게 증가하였다. 부동산자산의 경우 2019년 평균 보유 규모는 약 3억원

이었으며 3년 만에 평균 규모가 약 1억원 증가하였다. 2022년 기준으로 소득 5분위의 부동산자산 보유 평균 규모는 약 8억 9천만원이며, 소득 1분위의 부동산자산 평균 규모는 약 1억원이다. 부동산자산 규모가 모든 계층에서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자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도 증가하였다.

주식 및 채권 등 금융 시장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금융자산의 평균 보유 규모는 2019년 1억원에서 2022년 1억 2천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증권 시장의 거래 규모 변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권거래세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9년 약 4.5조원, 2020년 약 8.8조원, 2021년에는 약 10.3조원까지 증가하였다.

자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과세와 관련한 정부의 여러 정책 변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과열된 자산 시장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자산 관련 세제를 개정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하였다. 금융자산과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소득

에 과세를 신설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각종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논의 역시 시도되기도 했다. 부동산자산에 대해서도 취득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과표 기준, 세부적인 기준 등에 대한 여러 차례의 조율이 시도되고 반영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자산 가격의 상승에 따라 개인의 입장에서 기존에 예상하던 세 부담을 넘어서는 부담을 안게 되기도 하였다.

자산 관련 과세제도의 개편은 과열된 자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 목적과 더불어 서로 다른 소득에 이질적인 과세제도 운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형평성의 제고 목적도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부동산자산 위주로 세제 정책의 변화가 주도되었던 우리나라의 과세제도에 금융투자소득세 등의 도입으로 인한 새로운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자산에 따른 세 부담의 정도를 추정하고 검토하는 것이 향후 정책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고의 분석은 각각의 시장, 금융자산 시장, 주택 자산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제도를 개괄하고, 그리고 모형경제를 구축하여 향후 금융투자소득세, 부동산 세제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세 부담을 시뮬레이션하고자 한다. 기존의 자산 시장 및 자산 과세에 따른 연구는 주로 두 가지 차원에 집중하여 진행되어 왔다. 첫째, 미시 개인 및 가구 자료를 활용하여 지금까지의 제도 변화가 현재의 개인과 가구의 경제 활동 및 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혹은 자산 가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이다. 둘째, 현재의 과세제도를 기준으로 제도에 변화가 야기될 경우 예상되는 개인 및 가구의 세 부담 추정 효과를 검토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

구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모형경제를 통한 세 부담 추정에 대한 논의를 추가한다. 모형경제를 통한 세 부담 추정 연구도 기존 연구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는 드물다. 유사한 모형과 동일한 모수 값을 설정하여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보유 행태 등에 따른 개인의 생애 세 부담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본고는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의 형평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모형경제의 특성상 완벽하게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분석은 향후 금융 및 부동산 자산 관련 세제 개편의 장기간 효과를 추정하는 하나의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1) 분석 모형

본고는 모형경제를 통해 금융자산과 주택자산 각각에 대하여 투자하는 개인의 세 부담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가상의 경제를 상정하고 이 경제에서 각 개인들이 금융자산(주식) 또는 부동산(주택)을 거래하는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금융자산(주식)과 부동산자산(주택)에 투자했을 때의 세 부담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인이 20세부터 70세까지 50년간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를 상정한 다. 분석기간을 과세 단위인 1년으로 하여 50년 동안의 경제활동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 부담을 계산하고자 한다.

투자 및 보유 행태를 반영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 개인의 여

러 행동 및 자산 가격과 과세제도에 대한 가정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자산 가격의 변화와 이러한 자산에 대한 개인들의 매매 행태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거래세(증권거래세, 취득등록세 등),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는 상당 부분 변해 왔기 때문에 적용 과세제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제도를 통해(대주주)과세를 할 것인지, 2025년 적용될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로 과세를 할 것인지에 따라 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종합적인 세 부담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 자산에 대한 투자가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들의 거래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과세 제도 등을 통하여 실제 과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금융자산의 경우 배당 소득, 부동산자산의 경우 임대 소득 등이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한 가정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소비 특히 유동성에 대한 필요가 어떻게 발생할지에 대한 가정 역시 필요하다. 개인이 자산을 처분하는 중요한 이유가 소비, 특히 급히 유동성이 필요한 사태(주택의 구매, 병원비 등) 때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중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세 부담을 비교하기 위하여 과세 대상자의 기타소득과 소비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반면 자산 가격의 변화 및 개인의 거래 행태는 자산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투자 대상 자산에 따라 각각 적절하게 가정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분석에서 개인들의 금융 또는 부동산 자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 기타 소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일단 20세의 초기 소득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개인의 초기 소득이 I_0 라고 할 때에는 일정한 정규분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log(I_0) \sim N(\bar{I}, \sigma_I^2) \quad \text{식(1)}$$

이때 정규분포의 모수들(\bar{I}, σ_I^2)은 재정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할 예정이다. 이후 소득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Delta \log I_t = \mu^I (\mathcal{J}(t < t^{\max_I}) - \mathcal{J}(t > t^{\max_I})) + \nu_t \quad \text{식(2)}$$

즉, 소득은 일정한 나이 \max_I 까지는 소득이 매년 일정률 μ^I 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게 된다. 위 식에서 $\mathcal{J}(t < t^{\max_I})$ 는 t 가 t^{\max_I} 보다 작으면 1의 값을 갖고 그렇지 않을 경우 0의 값을 갖는 함수이다. 또한 소득의 증가율은 확률적인 부분도 존재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nu_t \sim N(0, \sigma_\nu^2) \quad \text{식(3)}$$

소득과 관련된 나머지 모수들($\mu_I, t^{\max_I}, \sigma_\nu^2$) 역시 재정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할 예정이다.

소비 역시 소득과 유사하게 결정되는데, 소비의 초깃값은 $C_0 \sim N(\bar{C}, \sigma_C^2)$ 로 주어지며, 정규분포의 모수들(\bar{C}, σ_C^2)은 역시 재정패널조사를 바탕으로 추정할 것이다. 이후 소비는 다음과 같은 변화율을 보인다.

$$\Delta \log C_t = \mu^c (\mathcal{J}(t < t^{\max_c}) - \mathcal{J}(t > t^{\max_c})) + x_t \quad \text{식(4)}$$

소득의 변화과정과 유사하게 소비는 일정한 나이 \max_c 까지는 소득이 매년 일정률 μ^c 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같은 비율로 감소하게 된다. 이때 소득이 최댓값을 갖는 나이와 소비가 최댓값을 갖는 나이는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한편 분석에서 소비의 확률적인 변화가 소득과는 조금 다르게 이루어진다. 소비의 확률적 변화를 나타내는 x_t 의 경우 $(1-q)$ 의 확률로 0의 값을 갖고 q 의 확률로 정규 분포 $x_t \sim N(0, \sigma_x^2)$ 를 따르게 된다. 또한 x_t 가 0보다 큰 값을 갖는 경우 그다음 해 한 번에 한정하여 $x_{t+1} = -x_t$ 가 되어 소비 수준은 원 수준으로 복구하게 된다. x_t 에 대한 이러한 설정은 유동성 충격으로 인하여 자산을 처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자 한 결과이다. 소비의 변화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모수들($\bar{c}, \sigma_c^2, \mu_c, t^{\max_c}, q, \sigma_x^2$)은 재정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할 예정이다.

분석 대상 개인들의 초기 자산 역시 확률적으로 결정된다. 초기 자산의 분포는 $W_0 \sim N(\bar{W}, \sigma_W^2)$ 로 설정한다. 위와 같은 확률적 분포를 통하여 초기 자산과, 일생 동안의 소득과 소비가 결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10만 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세 부담의 각 10분위 값을 보고할 것이다. 또한 자산의 가격과 매매 역시 일부 확률적으로 결정될 것이다.

2) 분석 결과

첫 번째 금융자산 기준경제(Benchmark economy)의 경우 총자산은 1분위의 경우 평균적으로 13억원의 빛이 있고 근로소득의 중앙값은 1,147만원이다. 이러한 빛은 많은 부분 소비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1분위 소비의 중앙값은 다른 분위의 소비보다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자산 분위에 따라 매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10분위의 경우 근로소득의 중앙값이 28억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10분위의 총자산 평균이 447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금융자산의 비율은 5.3%밖에 되지 않는다.

기준 경제를 살펴보면 총자산이 적은 가구들은 대체로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되는 반면, 자산이 많은 가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산의 증가는 대체로 근로소득 증가로 인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보이며 매매 수익보다는 배당과 보유 주식의 가치평가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의 주가상승률이 높을 때와 낮을 때 각각, 주식가격의 변동성이 높을 때, 그리고 무작위적인 매매의 변동성이 높은 경우를 금융투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자산이 낮은 가구들은 대체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때 세 부담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산이 많은 가구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 세율은 중간 분위 가구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자산 분위가 낮은 가구와 높은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낮은 가구들의 경우 금융투자로 인한 손실로 인하여 총소득은 높지 않은 데 비하여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은 여전히 부과되기 때문이며, 자산이 높은 가구에서는 종합과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세 부담은 여러 경제에서 전체적으로 다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주식가격이 하락하는 경제에서는 오히려

자산이 많은 가구가 자산거래 손실로 인하여 금융 소득이 음(-)의 값을 나타냈다.

두 번째 주택자산의 기준경제(Benchmark economy)로 설정한 모수 아래에서 총자산은 1분위의 경우 평균적으로 1.5억원의 빚이 있고, 근로소득의 중간값은 2,454만원이다. 1분위 소비의 중앙값은 3,529만원이다. 자산 분위가 증가할수록 근로소득 값도 증가한다. 10분위의 경우 2.3억원으로 나타났고, 이들 집단의 총자산 규모는 약 36.3억원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시물레이션과 그 특징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인 분포는 유사하다. 총자산 가운데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자산 7분위가 75.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분위는 약 62.7%로 나타났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산 5분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자산 5분위의 자산 대비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80%가 넘는 것에 비해서는 작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보유세 규모를 살펴보면, 자산 10분위가 부담한 총보유세 부담은 연평균 약 1,864만원이며, 이는 7분위가 부담한 146만원 대비 약 10배 높은 수준이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자산 10분위의 경우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의 비율은 자산 10분위의 경우 연평균 약 8%이며, 자산 10분위의 주택자산 가치 대비 보유세의 실효세 연평균 부담은 약 0.82%로 산출되었다. 자산 7분위의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의 비율은 연평균 약 1.5%이며, 주택자산 가치 대비 보유세의 실효세 연평균 부담은 약 0.16%로 산출된다.

기준 경제와 비교하여 경제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을 때와 낮을 때, 그리고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높을 때의 세 부담, 총자산 증가율 등을 산출한

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나리오에 바탕을 두고 추가적으로 보유세 강화 및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의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한다. 주택 양도세(거래세)를 강화하는 것과 보유세를 강화하는 각각의 상황을 상정하여 실효세율 크기를 통해 세 부담을 비교하였다. 본고에서는 본고가 구상한 모형경제 내에서 현재 제도를 기준으로 보유세 강화, 거래세 감소 정책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한다. 보유세를 현재보다 각 과세표준 구간에서 0.2%p 높이는 경우, 양도세를 현재보다 각 과세표준 구간에서 1%p 낮추는 경우, 그리고 둘 다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한다. 기본 전제가 되는 시나리오 오는 앞서 적용한 주택 가격의 변화, 주택 가격 변동성 변화의 시나리오를 적용한다.

각각의 기준 시나리오에 대해 모든 것이 동일한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의 경우, 양도세 인하의 경우에 예상되는 세 부담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준 경제에서 확인된 세 부담 실효세율과 비교하였을 때,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의 상대적 크기의 변화는 자산 분위가 올라갈수록 증가하였다. 7분위와 8분위의 경우 보유세 인상에 따라 기준 경제 대비 약 30%가량 세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9분위는 38%, 10분위는 40% 이상 세 부담이 증가하였다. 반면 양도세 인하는 기준 경제 대비 세 부담의 크기가 10분위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자산 분위가 낮은 계층에서는 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 감소는 크지 않았다.

이러한 세제 개편에 따른 효과를 주택 가격 상승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 그리고 주택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 각각 실효 세 부담을 추정하였다. 주택 가격 상승이 높은 경우, 보유세 인상

은 자산 10분위 계층의 세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보유 주택자산의 규모가 작은 자산 분위가 낮은 계층에서는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하며, 양도소득세 역시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큰 경우에는 모든 계층에서 세 부담이 증가한다.


이러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 것은 개인의 장기간 보유 주택 매매 결정 과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그동안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가 야기할 세 부담의 변화를 자산 계층별로 살펴보는 것이다.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는 전반적으로 자산 고분위 계층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주지만,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심할 때 이러한 개편이 계층별로 역진적인 세 부담의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유세 인상만 하는 정책을 펴는 경우에는 중간 계층 자산가들의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도 크게 요동쳤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코로나19 이후 더 큰 반발에 부딪친 것은 아마도 세 부담이 상대적·역진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일 수 있다.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심화되면 중산층(5분위~8분위 기준)의 경우 매매 결정 과정에서 최적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직면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이 그 이유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유세 인상 혹은 양도세 인하와 같은 기본적인 정부 정책을 실제 제도에 구현해 낼 때, 주택 가격의 변화 정도를 가늠하여 계층별로 차등적인 정책을 보조적으로 활용해 나가는 것이 납세 저항을 줄이고, 합리적인 세 부담 구조를 갖추는 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시사점 및 결론

본고는 우리나라의 금융 시장과 주택 시장에 대해 모형경제를 설정하고 개인 각 자산의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하여 장기간 세 부담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금융자산의 경우 총자산이 적은 가구들은 대체로 증권거래세와 금융투자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부과되는 반면, 자산이 많은 가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기준 경제의 상황을 토대로, 경제의 추가상승률이 높은 경우, 낮은 경우, 주식 가격 변동성이 높은 경우, 그리고 무작위적인 매매의 변동성이 높은 경우를 상정하여 금융투자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세 부담 변화를 각각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자산이 많은 가구들은 세금의 종류와 관계 없이 세 부담 수준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중간 자산 가구들은 낮은 자산 가구 혹은 높은 자산 가구에 비해 세 부담이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 낮은 자산 가구는 금융투자자에 따른 손실로 인한 총소득의 감소와 배당소득과 증권거래세 등에 따른 세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높은 자산 가구는 종합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에 의해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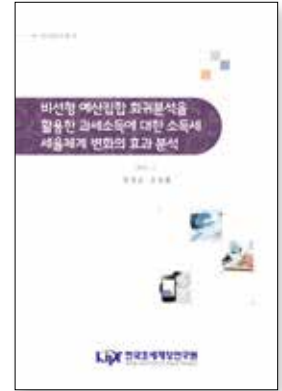
부동산자산의 경우, 금융자산에서 설정한 모형경제와 유사한 경제를 상정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하락하는 경우, 주택 가격의 변동성이 심한 경우를 상정하여 자산 분위별 세 부담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동안 정부의 정책 방향인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양도소득세) 인하에 따른 세 부담의 변화 방향을 추정하였다. 보유세 인상

과 거래세 인하는 전반적으로 높은 자산 가구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키지만, 주택 가격 변동성이 심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세제 변화는 중간 자산 가구들의 세 부담을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시킨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자산의 시나리오 분석과는 차별되는데, 주택자산의 경우 낮은 자산 가구는 주택 자체를 보유하지 않아 세제 개편과는 크게 무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높은 자산 가구의 경우에는 양도세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산에 대한 세 부담 분석을 수행한 기존 연구와 연구 주제는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모형경제를 통한 개인 및 가구의 장기간 투자와 매매 행태를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여가 있다. 비록 단순한 형태의 모형을 통한 분석이지만, 이와 같은 시도는 추후에 개선하여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한 모형으로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동시에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기여가 있다. 또 최근 관심이 높아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하여 세 부담의 크기를 양도소득세 적용과 비교하여 향후 정책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데 기여하였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3-06 『투자 및 보유 행태를 고려한 자산 유형에 따른 세 부담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06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을 활용한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체계 변화의 효과 분석



- + 권성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소득세의 세율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소득세 세율체계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중 하나는 명목소득의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의 증가 효과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 체계는 오랜 기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는데, 이로 인해 명목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납세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목소득의 상승에 맞춰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소득세 세율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 의견 중 다른 하나는 소득세율을 전반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규모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를 대비한 재정 확보를 위해 소득세 수입을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전반적인 소득세율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소득세 세율체계의 변화는 납세자가 근

로시간 또는 보상형태의 조정, 소비의 변화, 탈세, 조세회피 등을 통해 세부담을 줄이는 등 납세자의 행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세율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태 변화를 과세소득탄력성(taxable income elasticity)의 추정을 통해 분석하였다. 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정확한 과세소득탄력성의 추정이 어려웠거나 일부 과세표준 구간의 납세자에 한정된 행태 변화만을 분석할 수 있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Blomquist et al.(2015; 2023)이 개발한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nonlinear budget set regression)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행태 변화를 분석한다.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은 비선형 예산 프론티어(nonlinear budget frontiers) 조건하에 비모수적으로 선택변수(choice variable)의 조건부 기대(conditional expectation)함수를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을 이용하면 특정 소득구간의 세율 변화로 인한 효과가 아닌 전반적 세율체

계의 변화, 즉 과세표준 구간 및 구간별 세율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과세소득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으로 과세소득의 조건부 기대를 추정한다. 여기서 과세소득은 Blomquist et al.(2015; 2023)의 과세소득 개념과 동일하게 세전소득에서 각종 비과세, 공제, 감면 등을 제외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금액, 즉 우리나라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개념으로 정의한다. 추정된 조건부 기대함수로는 다음의 분석들을 수행한다. 먼저, 세율 변화에 의한 과세소득탄력성을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과세소득탄력성은 Blomquist et al.(2015; 2023)의 정의에 따른 것으로,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인상할 때 평균 과세소득이 변화하는 정도로 측정한다. 세율체계 변화의 효과에 관한 시뮬레이션 분석도 수행한다. 소득세 세율체계 개편에 대한 다양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는데, 과세소득이 변화하는 정도를 분석할 뿐 아니라 세율체계 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를 분석하고 행태 변화 반영 여부에 따른 비교분석도 수행한다.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은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부 평균 과세소득(과세표준) 함수를 비모수적으로 추정하는 방법론이다.

$$E[y|B] = \int_y y dF(y|B) \quad \text{식(1)}$$

여기서 y 는 과세소득(과세표준), B 는 세율체계 관련 모수(과세표준 구간별 경계점과 세율)와 통제변수들을 의미하고, $F(y|B)$ 는 과세소득의 조건부 누적분포함수를 나타낸다. 결국 비선형 예산집

합 회귀분석은 데이터상 실증적 분포를 이용하여 $E[y|B]$ (또는 $F(y|B)$)를 추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함수의 형태는 B 에 포함된 변수들이 선형으로 가정된 것이 아닌 변수들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는 형태로 가정한다. 이에 따라 LASSO 방법론을 통해 최적의 함수(또는 설명변수들)를 결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함수를 추정한다.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은 비모수적 추정법으로 선행연구에서 활용하는 모수적 추정법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은 선형이 아닌 비선형의 예산 프론티어를 가정하는데, 효용함수에 대한 이러한 보다 완화된 가정을 바탕으로 모형 추정 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소득분포를 활용하여 소득이 집중된 구간의 가중치를 고려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모형 추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과세표준 구간, 구간별 세율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할 수 있어 보다 현실적인 세율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은 다음과 같은 한계도 존재한다. 먼저, 세율체계가 다른 많은 표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도별 이질성을 모형 내부에서 고려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모형에 고려해야 할 변수의 수가 고려하는 이질적 특성의 배수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이질성을 고려할수록 모형 추정에 이용하는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추정치를 안정적으로 도출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표본의 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독립변수의 개수가 많아짐에 따라 분산의 추정치가 커져서 통계적 추론이 어려

워진다.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은 방법론적으로 세율, 비노동소득 등의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방법론적 발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조건부 과세소득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과세소득과 비노동소득 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과세소득을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인 우리나라의 과세표준으로 정의하므로 과세표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재정패널조사」는 조사 참여가구 가구원들의 소득신고 관련 구체적인 정보들을 조사하고 있어 비교적 정확하게 과세표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금액과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하는데, 이를 위한 정보들이 모두 존재한다. 비노동소득의 경우, 배우자 및 다른 가구원의 소득, 타 가구 이전소득, 정부보조금, 가구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포함하는데, 「재정패널조사」는 이에 관한 정보들도 조사하고 있다.

분석 대상은 가구주 내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으로 정의한 가구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가구주 정의를 이용한 이유는 과세표준 산출 시 인적공제액을 중복 없이 적용하기 위한 조치이다. 「재정패널조사」 자료에는 인적공제금액에 관한 정보가 없어 본 연구는 가구 내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줄 것이라는 가정하에 가구원들의 가족관계, 나이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인적공제금액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2007~2013년에 해당하는 「재정패널조사」의 2008~

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우리나라 소득세 세율체계는 2014년 귀속부터 과세표준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구간에 대해서만 변화하였는데, 「재정패널조사」 자료에는 이에 해당하는 관측치 수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2014년에는 주요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는 소득·지출 등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2014년 전후로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2013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공제제도가 소득공제 방식이었기 때문에 공제제도를 통한 행태 변화까지 반영한 세율체계 변화의 과세표준에 대한 효과도 포착할 수 있다.

과세소득탄력성은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과세소득 조건부 기대함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득세 과세소득탄력성은 Blomquist et al.(2015; 2023)을 따라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인상할 때 평균 과세소득이 변화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Blomquist et al.(2015; 2023)에 따르면, 이렇게 정의한 과세소득탄력성은 Saez et. al.(2012) 등에서 논의된 정책 관련 지표(policy relevant measure)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추정 결과, 전체 표본의 과세소득탄력성은 0.599로 나타났다. 이는 세율이 1% 증가할 때(또는 세후소득률이 1% 감소할 때) 과세소득이 0.599% 감소함을 의미한다. 신고유형, 교육수준, 직종, 연령 등 납세자의 이질적 특성에 따른 과세소득탄력성도 추정하였는데, 신고유형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교육수준에서는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 직종에서는 관리직 및 전문직, 연령에서는 고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세소득탄력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집단들은 공제제도, 필요


경비(사업자의 경우), 노동시간, 소득형태 등의 조정을 통해 과세소득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과세소득탄력성이 크게 추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션 분석에서는 가상의 소득세 세율체계 개편 시나리오의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과세소득의 변화뿐 아니라 세수효과도 가늠해 보기 위해 산출세액 변화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납세자의 행태 변화 고려의 중요성을 살펴보기 위해 납세자의 행태 변화 반영 여부에 따른 산출세액에 대한 비교분석도 수행하였다. 분석 시나리오는 최근 실제로 단행된 세율체계 개편을 반영한 시나리오, 오종현 외(2020)에서 제시한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인상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 권성준·성명재(2022)에서 제시한 과세표준 구간과 구간별 세율이 모두 바뀌는 네 가지 시나리오다. 최근 단행된 세율체계 개편 시나리오와 오종현 외(2020)의 시나리오는 각각 세부담 완화와 세부담 증대 시나리오로 볼 수 있다. 이 시나리오들의 분석 결과, 행태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 완화 효과 또는 세수입 증대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권성준·성명재(2022)의 시나리오는 세율체계의 변화가 복잡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하지 않고 과세소득, 산출세액 등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연구의 방법론은 이러한 경우에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세율체계의 변화가 복잡하면 세율이 상승, 하락, 유지되는 구간이 모두 존재하여 구간에 따라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존재하거나 소득효과만 존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납세자의 행태 변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권성준·성명재(2022)의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

레이션 분석은 소득분포, 세율 변화 폭, 세율이 변화하는 구간의 길이 등이 세율체계의 변화에 따라 산출세액이 변화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율체계 조정 시, 소득분포, 세율 변화 폭, 세율이 변화하는 구간의 길이 등의 종합적 검토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이용한 방법론은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다. 특별히 내생성을 통제하기 어렵고 Blomquist et al.(2015; 2023)처럼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지 못해 분석 결과가 과대추정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13년 이전 자료만 이용하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공제제도가 전환된 영향은 제거할 수 있었지만, 공제제도의 변화에 따른 영향은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석 결과가 과대하게 추정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이를 감안하여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방법론적 측면 외에도 자료의 제약에서 비롯된 한계점들도 존재한다. 가구주 표본으로 추정 및 분석을 수행하여 표본의 대표성이 결여된 문제가 있고, 행태 변화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소득구간의 세율이 인상되었던 2014년부터의 자료를 활용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그리고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함에 따른 측정오류가 있을 수 있고, 고소득계층에 대한 관측치가 부족한 점도 한계이다.

본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세율체계를 조정함에 있어 납세자의 행태 변화를 고려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된다. 세율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태 변화는 본 연구에서뿐 아니라 국내 선행연구들에서도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납세자가 세율 변화에 대한 대응 여력이 충분치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세율 변화에 대한 대응 여력이 충분히 존재하는 집단의 경우 행태 변화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세율체계 개편 시 납세자의 행태 변화를 고려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3-07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을 활용한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체계 변화의 효과 분석』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07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 교육과 보건을 중심으로

- +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박노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김정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교육과 보건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효율성을 측정하고, 국제비교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성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실증적으로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재정지출 비중 추이 면에서 교육분야는 재정지출 비중이 비교적 높고 향상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건분야는 그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재원에 해당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각 분야 내에서의 칸막이나 관성에 의한 지출구조로 인한 비효율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교육분야는 정부지출 내 절대적 비중이 초중등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고,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은 낮은 편에 속하는데, 분야 내 각 항목별 재정지출 효율성 자체에 대한 분석은 찾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이는 보건분야도 유사하다. 보건분야 전체의 증가속도는 매우 빠른 편인데 정작 필요한 질병이나 연령대의 지출보다는 제도적 관성에 의한 지출규모 증가가 클 수 있다고 보았다. 셋째, 국제비교를 통해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교육과 보건 이 두 분야는 재정지출 효율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투입·산출·성과 부분 모두에서 민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우수한 시험성적을 설명할 때 공교육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보건 역시 민간의료병원이 주공급원이므로 역시 ‘정부지출로 인한 한정적인 성과’를 식별하기 곤란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가능한 한 동일한 조건하에서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공공지출 부분의 효율성 부분을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교육분야 효율성 측정은 DEA 방식을 활용하였으며, 중요한 시사점은 ‘산출지표 효율성의 하락 추이’이다. 교육재정의 투입은 ‘산출지표 효율성’ 개선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는데 법정지출로 내국세의 5분의 1 이상이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 순위하락에 대한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반면 PISA 성적, 고등교육 이수율, 고등교육 이수자의 상대적 임금 등을 고려한 성과종합지표 효율성을 측정하였고, OECD 회원국들과 비교 시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재정지출 효율

성의 종합순위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보았듯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알 수 있으며, UNESCO가 지원한 Dolton et al.(2014)에서도 한국 학생의 우수한 시험성적 결과는 유럽국가에서는 공인된 사실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국제비교에서의 성과 종합지표는 단순 가치치 복합지표로 각 요인별 효과와 교육 외적 비재량적 요소들은 반영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 부담, 소득불평등도, 고등교육 비효율성 등과 교육환경 변수, 국가적 특징 및 인종적 이질성을 고려하여 다시 성과종합지표의 순위를 살펴보았다.

본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요 영향변수와 국가적 특징을 반영한 이후에도 종합성과지표 기준 우리나라의 효율성 순위는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고등교육 분야의 비효율성이 반영되었다고 가정한 ‘고용률지표’를 기준으로 살펴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효율성 순위는 ‘중하위권’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분석에서 시도한 바로는 ‘고등교육 이수자의 상대적 임금’ 지표의 경우에도 역시 중하위권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전체 성과종합지표상 나타난 우리나라의 상대적 효율성은 상당 부분 초중등교육 분야의 성과에 따른 것이며, 고등교육 분야의 효율성 수치는 그 성과를 상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분석의 연구 의도는 우리나라의 교육성과 변화와 교육지출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었다. 규모적으로 재정지출의 15%를 꾸준히 투자하고 있으며, 의무지출로서 초중등교육 분야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

도적 지원, 여기에 더하여 초중등과정의 입시 경쟁으로 지불하는 ‘사교육 부담’까지 고려할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분야 투입 비효율성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초중등 시험성적을 기준으로 한 성과지표 효율성만으로 재원투입 대비 교육성과, 즉 교육분야 재정지출 효율성이 여전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분석은 투입, 산출, 성과를 일반화하기 위하여 지표화하고, 계량화하는 단계별 약점이 존재하는 분석을 기반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분석이 갖는 의의는 2010년 이후 선진국들의 교육분야 효율성을 견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나라는 어떠한 분야에서 그 추이를 견인하고 혹은 보완되어야 하는지, 분야 내에서는 초중등 혹은 고등교육 분야 간의 재원투자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국가적 이질성 면에서 인종적 차별화된 교육성과 특징은 다수 모형에서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난 점으로 보아 추가 분석을 요구한다. 교육 외 변수 중에는 소득불평등도, 출산율 등 지표와의 내생성을 고려한 이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건분야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지금까지의 생산성을 진단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향후에는 우리나라 자체의 보건 생산성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연구와 이를 활용한 구체적인 성과관리와 평가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교육분야 지출 대비 성과구조는 ‘고투입’ 및 ‘고성과’ 국가에 해당한다. 나아가 우리나라

의 교육성고가 매우 우수하다는 해외연구와 기존 연구결과에 기반한 인식으로 인하여 교육분야 효율성 개선의 동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규모가 정해져 있어서 재원효율성 제안이 유명무실한 구조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적 과제를 감안하여 교육지출 효율성 관련 정책적 논점과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출지표와 성과지표 효율성의 격차가 큰 점에 대한 분석과 산출지표 분야 효율성 확보 대안 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DEA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산출지표 효율성은 중하위권에 해당하고, 성과지표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격차는 기존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 있었다. 각국 정부가 산출지표를 관리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이 산출지표를 통하여 우수한 성과를 내기 위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지표가 우수하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결과의 산출지표에 대한 효율성 검증이 간과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전체 교육비 지출 재원배분 방향은 현재 고등교육 분야 성과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본 분석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성과 전체는 우수하나 고등교육 분야 성과에 대한 비효율성 가능성을 추정하였고, 교육비 지출 국제비교에 따른 고등교육 분야 재원투자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교육재정의 80% 이상이 초중등교육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재정칸막이 구조 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 본 연구는 2023년 비로소 시도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자하기로 한 특별회계 지원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한다.

셋째, 재원 대안과 관련해서는, 교육재원의 경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지원 효율화 대안이 지금보다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현재 지자체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의 35% 정도의 법정전입금 이외에 지원되고 있는 재원은 각 지방마다의 자치권에 의하여 주민요구에 따라 지원되고 있다. 해당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재정수요(교육수요 및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와 인구규모에 따른 ‘지방 및 교육재정 중기계획’의 틀을 갖추어, 공교육 분야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금의 초중등 교육과정에 집중된 공교육 재원의 일부를 RISE 사업 등 고등교육 분야 사업비 전출이 가능하도록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 분야의 민간 가구부담의 효율성 제고방안 필요성이다. 고등교육 분야 민간 가구부담은 그 특성상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 전후 지불하는 비용인데, 대학 대학교육의 방향성과 질 개선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전공비적합성 비용이 높은 부분은 학벌 위주 사회를 반영한 입시환경, 노동시장 경쟁구도,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것이므로 중장기적 정책 아젠다에 해당한다. 이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으면, 막대한 공공과 민간의 교육분야 지출의 효율성 저하는 출산율 등의 사회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본 분석에서의 출산율, 지니계수 값과 교육변수들과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는 사회변화를 위한 조세·재정 정책의 근본적인 역할을 환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다 근본적으로는 내국세의 일정 부분으로 고정배분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 성격상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재원(세입)과 교육수요(세출) 연계성을 근본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서 오늘날의 초중등 교육재정 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예를 들면, 교육의 지자체 책임성 강화를 근간으로 한 지자체 법정전입금 제도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지자체의 고등교육, 평생교육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보건분야 재정지출 효율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보건분야 지출의 효율성 순위는 강건하게 상위권을 보이고 있다.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이라는 제도적 장치는 타 복지분야에 비하여 수익자부담+공공부조 비중을 절묘히 충족하면서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유례 없는 낮은 출산율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영역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보다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분석 결과, 기대수명, 건강수명 등 국제기준이 명확한 주요 지표에서의 우리나라의 보건지출 효율성은 상위권을 유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세부지표를 활용한 효율성 측정을 통한 보건분야 내 투자우선순위 등이 추가로 분석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보건분야 내 효율성 측정과 관련하여, 저위험 질병 과잉진료 문제, 지역의료 미비 문제, 건강보험의 기금화 등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문제제기 역시 재정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에 해당한다. 이는 의료서비스 공공성의 역할이 단순히 비용 절감에만 머무르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본 분석에서는 고령화 비중 증가에 의한 높은 보건지출 비중 국가들 중 영국과 호주 등을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개별 의료서비스 기관의 생산성을 관리하여 수가 지급과 관련한 의사결정에도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보건지출 효율성 측정을 위한 보건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에 관한 분석과 진단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질적 부분이 반영된 투입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산출지표도 질적인 측면이 반영된 산출 또는 결과 지표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분야의 생산성 제고와 관리에 대한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3-08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교육과 보건을 중심으로』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2025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 발표]

■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3월 11일, 약 7조 3천억 달러¹⁾ 규모의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대통령 예산안²⁾을 발표함^{3), 4), 5)}

- 연방의회가 예산안 심의 권한을 행사하고 현재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음
 - 동 예산안은 2024년 11월에 있을 대선을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예산안을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 중산층을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국제조세제도의 개편을 제안함

- (법인)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고자 함
 - 법인세 최고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10억달러⁶⁾ 규모의 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alternative minimum tax rate)을 15%에서 21%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미국 다국적기업(US multinationals)의 해외소득에 대한 세율을 10.5%에서 21%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개인) 부자에 대한 증세, 서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안함
 - 상위 0.01% 억만장자(1억달러⁷⁾ 이상의 자산을 가진 납세자의 소득(income)에 대해 최소 25% 세율로 부과할 것을 제안함
 - 연소득 40만달러⁸⁾ 이상인 고소득자(부부 개별 또는 독신 신고) 및 45만달러⁹⁾ 이상인 고소득자(부부합산 신고)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39.6%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고소득납세자의 이전사업소득에 대해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¹⁰⁾를 적용할 것을 제안함

1) 2024년 4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53조 5,400억원임

2) 미국의 연방예산편성과정은 대통령의 예산안 제출 → 상하원의 예산결의안 채택 → 상하원의 예산법안 의결 →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되며 매년 10월 1일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됨(한국은행, 「미국 의회의 2023 회계연도 예산법안 의결 내용」, 2022. 12. 28., <http://www.bok.or.kr/portal/bbs/P0002223/view.do?nttlid=10074670&menuNo=200082&searchWrd=2023&searchCnd=1&sdate=&edate=&pageIndex=1>, 검색일자: 2024. 3. 19.)

3) THE WHITE HOUSE, “FACT SHEET: The President’s Budget for Fiscal Year 2025,” 2023. 3. 1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3/11/fact-sheet-the-presidents-budget-for-fiscal-year-2025/>, 검색일자: 2024. 3. 19.

4) THE WHITE HOUSE, “FACT SHEET: The President’s Budget Cuts Taxes for Working Families and Makes Big Corporations and the Wealthy Pay Their Fair Share,” 2023. 3. 1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4/03/11/fact-sheet-the-presidents-budget-for-fiscal-year-2025/>, 검색일자: 2024. 3. 19.

5) IBFD, “President Biden Proposes Income Tax Hikes for Big Corporations, Middle Class Income Tax Cuts, International Tax Measures in FY 2025 Budget,” 2024. 3. 13.,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3-13_us_3.html, 검색일자: 2024. 3. 19.

6) 2024년 4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3,473억원임

7) 2024년 4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348억 3천만원임

8) 2024년 4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5억 3,940만원임

9) 2024년 4월 3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6억 678만원임

10)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수동적 투자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별개로 고소득납세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 자녀를 양육하는 납세자의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를 확대하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를 확대하고자 함
- (국제조세) 국제조세제도의 세제개편을 제안함
 - 주식환매(Stock Back) 세율을 기존 1%에서 4%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 피지배외국법인의 과세연도를 미국 대주주의 과세연도와 일치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함
 - 해외발생무형자산소득공제(FDII deduction,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deduction)를 폐지하고자 함
 - 혼성단체(hybrid entities) 매각으로 인한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s)를 제한하고자 함

<자료수집 및 정리: 권정교 세무사>

지역의 탄소세 수익금을 해당 지역의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의미함

- 연방정부는 독자적인 탄소가격책정시스템이 없는 지역에 연방지원시스템을 적용하여 탄소세를 부과함
- 탄소 리베이트는 지역별로 다르고 4인 가족 기준 리베이트 금액은 <표 1>과 같음

<표 1> 2024~2025년 지역별 탄소 리베이트

(단위: CAD¹⁾)

지역	탄소 리베이트
앨버타(Alberta)	1,800(분기별 450)
매니토바(Manitoba)	1,200(분기별 300)
온타리오(Ontario)	1,120(분기별 280)
서스캐처원(Saskatchewan)	1,504(분기별 376)
뉴 브런즈윅(New Brunswick)	760(분기별 190)
노바스코샤(Nova Scotia)	824(분기별 206)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Prince Edward Island)	880(분기별 220)
뉴펀들랜드(Newfoundland)	1,192(분기별 298)
래브라도(Labrador)	1,192(분기별 298)

주: 1) 2024년 4월 3일 현재 1CAD는 994.33원임



캐나다

[탄소 리베이트 인상]

- 캐나다 재무부는 2024년 2월 14일, ‘탄소 리베이트(the Canada Carbon Rebate, CCR)’ 인상을 발표함^{11), 12)}
 - 탄소 리베이트는 연방지원시스템을 적용받는

- 납세자는 개인소득세 신고 시 탄소 리베이트를 신청할 수 있고 탄소 리베이트는 분기별로 지급됨¹³⁾
- 또한 동 발표를 통해 이전 ‘기후행동인센티브(the Climate Action Incentive Payment, CAIP)’에서 ‘탄소 리베이트’로 명칭을 변경함
- 인상된 탄소 리베이트는 2024년 4월부터 적용함

<자료수집 및 정리: 권정교 세무사>

11) Government of Canada, “Government announces Canada Carbon Rebate amounts for 2024-25,” 2024. 2. 14.,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news/2024/02/government-announces-canada-carbon-rebate-amounts-for-2024-25.html>, 검색일자: 2024. 3. 19.

12) IBFD, “Canada Rebrands Carbon Rebate Payments, Increases Rebate Amounts for 2024,” 2024. 2. 19.,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2-19_ca_1.html, 검색일자: 2024. 3. 19.

13) Government of Canada, “Canada Carbon Rebate(CCR),” 2024. 2. 13.,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child-family-benefits/cai-payment.html>, 검색일자: 2024. 3. 19.



영국

[2024년 봄 예산안 발표]

■ 영국은 2024년 3월 6일, 2024년 봄 예산안 (Spring Budget 2024)을 발표함^{14), 15)}

-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영국 비거소자(non-domiciled individuals)¹⁶⁾의 국외 소득 및 이익이 영국으로 송금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영국 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현행 송금 기반 제도(remittance basis of taxation)를 폐지하고 더 간단한 거주지 기반 제도(residence-based regime)로 대체하는 안이 담김^{17), 18)}

- 기존 제도하에서는, 10년 연속 영국에 거주하지 않았던 개인은 이후 영국에 거주하는 4년 동안 해외 소득 및 그 4년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전액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
- 동 제도는 2025년 4월 6일부터 더 간단한 거주지 기반 제도로 대체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개인이 영국 거주자가 된 후 4년간 해외 소득 및 이익에 대해 100% 영국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됨

- 향후 2년간은 경과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 하반기 발표 예정임
- (법인소득세) 법인세와 관련하여 발표된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4월 6일부터 직원 소득에 대한 1종 국민보험(Class 1 National Insurance)의 기본세율을 10%에서 8%로 인하함
 - 2024년 4월 6일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4종 국민보험(Class 4 National Insurance)의 세율을 8%에서 6%로 인하함
 - 지출이 발생한 연도에 지출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즉시공제 제도(Full Expensing)를 리스 자산(leased assets)에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임
 - 2024년 4월 1일부터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관련 등록을 해야 하는 소득 기준을 8만 5천 파운드¹⁹⁾에서 9만파운드²⁰⁾로 인상함
 - 비 이코노미석 항공편에 대한 항공여객세 (air passenger duty)를 인상함
 - 석유·가스회사 등의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에너지이익부담금(energy profits levy)은 2028년 3월까지 적용되는 것에서

14) GOV.UK., "Spring Budget 2024," 2024. 3. 6., <https://www.gov.uk/government/topical-events/spring-budget-2024>, 검색일자: 2024. 3. 25.
 15) IBFD, "United Kingdom - Chancellor's Spring Budget Would Abolish Tax Regime for Non-Domiciled Individuals," 2024. 3. 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3-06_uk_1.html, 검색일자: 2024. 3. 25.
 16) 영국 '비거소자(non-domiciled)'란 영국 이외의 곳에 영구적 주소지(domicile)를 둔 영국 거주자(UK resident)를 의미함(자료: GOV.UK., "Tax on foreign income," <https://www.gov.uk/tax-foreign-income/non-domiciled-residents>, 검색일자: 2024. 4. 9.)
 17) GOV.UK., "Spring Budget 2024: Non-UK domiciled individuals policy summary," 2024. 3. 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ring-budget-2024-non-uk-domiciled-individuals-policy-summary/spring-budget-2024-non-uk-domiciled-individuals-policy-summary>, 검색일자: 2024. 4. 2.
 18) IBFD, "United Kingdom - Spring Budget 2024 in Depth: UK Plans to Abolish Tax Exemptions for Non-Domiciles, Proposes Other PIT Measures," 2024. 3. 8.,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3-08_uk_1.html, 검색일자: 2024. 4. 2.
 19) 2024년 3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394만원임
 20) 2024년 3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5,242만원임

2029년 3월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연장될 예정이다, 시장 가격이 예상보다 빨리 역사적 수준으로 하락할 경우 폐지될 수 있음

- (개인소득세) 개인소득세와 관련한 주요 조치들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에 대한 28%의 높은 양도소득세율을 24%로 인하함
 - 현재 개인에게 적용되는 아동수당 고소득자 부담금(child benefit higher income charge)은 2026년 4월부터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로 변경될 예정임
 - 새로운 개인저축계좌(ISA)인 ‘영국 ISA (British ISA)’를 통해 투자자가 연간 최대 5천파운드²¹⁾까지 영국 주식에 저축할 수 있도록 하며 일반적인 ISA 과세 면제 혜택도 함께 주어짐
- (기타) 법인 및 개인소득세 이외의 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유류세(fuel duty)는 12개월 동안 현행 수준으로 유지됨
 - 주세(alcohol duty)는 2025년 2월까지 동결됨
 - 2026년 10월부터 베이핑(vaping) 제품에 대한 소비세가 부과될 예정임
 - 담배세(tobacco duty)는 인상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정리: 이희경 회계사>



프랑스

[녹색산업 투자 세액공제 시행]

- 프랑스 재무부는 2024년 3월 11일, 녹색산업 투자 세액공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발표하였고, 제도는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됨²²⁾
 - 녹색산업 투자 세액공제는 재생에너지 생산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및 열 펌프 생산 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함²³⁾
 - 기본공제율은 20%이며, 투자 대상의 소재지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지역 등의 경우에는 25%, 「조세일반법」 부록에 열거된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40%임
 - 위 공제율에 중간규모의 기업이 투자한 경우에는 10%p, 소규모의 기업이 투자한 경우에는 20%p가 추가됨
 - 공제 총액은 기업당 1억 5천만유로²⁴⁾를 초과할 수 없음
 -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승인된 투자에 한함
 -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월 8일, EU State Aid 규칙에 따라 프랑스의 녹색산업 투자 세액

21) 2024년 3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847만원임

22) IBFD, "Tax Credit for Investments in Green Industry Enters into Force on 14 March 2024," 2024. 3. 14.,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3-13_fr_1.html, 검색일자: 2024. 3. 26.

23) 프랑스, 「조세일반법(Code général des impôts)」, Article 244 quater I.

24) 2024년 4월 2일 원화 환산 시 약 2,176억 9,500만원임

공제가 ‘그린 딜 산업 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승인함²⁵⁾

<자료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독일

[법인세법 개정안(Growth Opportunities Bill) 의 회 최종승인]

■ 독일 의회는 2024년 3월 22일, 법인세법 개정안 「성장기회법(Growth Opportunities Bill)」을 최종 승인함²⁶⁾

- 이번 법인세법 개정안은 2023년 11월 24일 연방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으나 2024년 2월 21일 양원이 협의하여 법인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고, 이번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것임
- 부결된 법인세법 개정안은 7억유로 상당의 감세안을 담고 있었으나,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3억유로 상당의 감세안을 담고 있음
- 이 법안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함²⁷⁾

■ 「성장기회법」은 성장기회, 투자, 혁신, 조세간소화, 조세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법인세법 개정내용으로 1) 그룹 계열사 간 금융거래 시 이자비용 공제제한, 2) 결손금 공

제율 인상, 3) 임상시험 연구개발비 공제율 인상, 4)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률 인상이 있음

- (그룹 간 차입거래 이자비용 공제제한) 그룹 내 해외 계열사와 대출거래 시 납세자가 실제 사업목적의 대출거래임을 입증하고, 이자율 요건을 만족해야 이자비용의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함^{28), 29)}
 - 납세자는 해외 계열사와 대출거래 시 전체 대출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가 지급될 것(debt capacity test)과 사업목적이 대출거래이고 실제 사업목적으로 사용할 것(business purpose test)임을 입증해야 함
 - 또한, 그룹이 제3자를 통해 차입을 할 경우의 이자율을 초과해서는 안 됨(maximum interest test)

- (결손금 공제율 인상)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결손금 차기이월공제액이 1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60%까지만 결손금 공제를 허용하던 것에서 70%까지 허용으로 인상함³⁰⁾
 - 현행 제도에서는 연간 1백만유로를 한도로 2년간 소급공제하거나 기한 없이 결손금의 차기이월공제가 가능하며, 1백만유로를 초과하는 결손금에 대해서는 결손금의 60%만 공제가 가능함³¹⁾

25) IBFD, “State Aid: European Commission Approves French Scheme to Support Investment in Green Industrie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1-09_e2_1%23tns_2024-01-09_e2_1, 검색일자: 2024. 3. 26.

26) “Germany - Federal Council Approves Compromise on Growth Opportunities Bill(22 Mar. 2024),” News IBFD(accessed 26 Mar. 2024).

27) “Germany - Growth Opportunities Bill Enters Into Force(28 Mar. 2024),” News IBFD(accessed 2 Apr. 2024).

28) Bloomberg Tax, “Germany Gazettes Law Implementing Growth Opportunities Act,” 2024. 4. 1., 검색일자: 2024. 4. 2.

29) EY, “German Federal Council approves amended Growth Opportunities Act bill on corporate tax reform,” <https://taxnews.ey.com/news/2024-0676-german-federal-council-approves-amended-growth-opportunities-act-bill-on-corporate-tax-reform>, 검색일자: 2024. 4. 2.

30) 상동

31) A. Perdelwitz, “Germany - Corporate Taxation sec. 1.8.1,” Country Tax Guides IBFD(accessed 2 Apr. 2024).

■ (임상시험 연구개발비 공제율 인상) 독립적인 임상시험(Independent Contract Research) 기관에 지급한 연구개발비에 대해 현재 총비용의 60%를 공제하던 것에서 70%를 공제하도록 공제율을 인상함

- 연간 3백만유로를 한도로 공제가 가능함

■ (유형자산 감가상각률 인상)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구입하거나 생산한 이동가능 고정자산(movable fixed assets)에 대해 정률법(declining balance method)으로 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

- 현행 제도에서는 정률법의 상각방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³²⁾
- 이번 개정으로 정률법의 감가상각방법을 허용하나 정액법 상각액의 2배를 한도로 감가상각이 가능하며, 상각률은 20%를 초과할 수 없음

<자료수집 및 정리: 김민경 선임연구원>



스위스

[국외 원격근무자의 소득세 과세를 위한 초안 채택]

■ 스위스 연방의회(federal council)는 국외에 거주하며 원격으로 일하는 근무자의 소득세 과세

를 위한 법안의 초안을 채택함³³⁾

- 이중과세협약(Double Tax Convention)에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곳에 과세권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원격근무의 경우 고용주가 거주하는 국가가 아닌 근로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과세권이 이동하게 되어 스위스의 세수 손실을 야기함

- 이 법안은 스위스의 세수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목적이 있음

■ 법안 초안에서는 스위스 고용주에 고용되어 인근 국가에서 원격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소득을 스위스에서 과세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만들고자 함

- 인근 국가는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을 말함³⁴⁾

■ 또한, 원격근무자 소득에 대해 스위스가 과세권을 갖도록 프랑스, 이탈리아와 조세조약을 개정할 내용을 내국법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음

- 스위스는 프랑스와 조세조약 개정을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서 원격근무한 시간이 총근무시간의 40%를 초과하지 않는 한 스위스에서 과세권을 갖도록 함³⁵⁾
- 스위스는 이탈리아와의 조세조약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원격근무

32) A. Perdelwitz, "Germany - Corporate Taxation sec. 1.5.1," Country Tax Guides IBFD(accessed 2 Apr. 2024).

33) Switzerland - Federal Council Creates Domestic Legal Framework to Tax Telework Performed by Cross-Border Commuters(06 Mar. 2024), News IBFD(accessed 22 Mar. 2024).

34) Switzerland Cabinet Approves Draft Bill on Taxation of Teleworking for Cross-Border Commuters Due to Coronavirus, <https://news.bloombergtax.com/daily-tax-report-international/switzerland-cabinet-approves-draft-bill-on-taxation-of-teleworking-for-cross-border-commuters-due-to-coronavirus>, 검색일자: 2024. 4. 2.

35) "France; Switzerland - France and Switzerland Agree on Permanent Tax Regime for Teleworking(23 Dec. 2022)," News IBFD(accessed 2 Apr. 2024).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한 시간이 총근무시간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한 스위스에서 과세권을 갖도록 함

- 스위스 과세당국에 따르면 현재 스위스 인근 국가에 거주하는 원격근무자는 총 40만명이고, 프랑스에 22만명, 이탈리아에 9만명이 거주함³⁷⁾

- 이 법안은 향후 의회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³⁸⁾ 조세조약상 소득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준과 스위스 국내법을 일치시키게 됨

<자료수집 및 정리: 김민경 선임연구원>

- 이탈리아 거주 기업 또는 이탈리아에 고정사업장을 둔 외국기업이 2024-2025년 중 신규로 구입한 적격 유·무형 자산가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함

- 적격유형자산은 시설, 컴퓨터 시스템 또는 센서로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계, 재료 및 원자재를 가공하여 제품생산을 하기 위한 설비, 금속 및 기타재료의 플라스틱 변형기계 등 각종 기계 및 장비 등을 포함함⁴⁰⁾
- 적격무형자산은 3D 설계, 모델링과 같은 제품 설계, 시뮬레이션, 실험 등 품질 보증 및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플랫폼 및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함⁴¹⁾



이탈리아

[에너지 절약 기업의 투자금액 세액공제 인상]

- 이탈리아는 2024년 3월 2일, 에너지절약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기업의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법안(Law Decree No. 19/2024)을 승인함³⁹⁾

- 현재 에너지절약 기업에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으나 에너지절약을 많이 할수록 세액공제율을 높이도록 개정된 것임

-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세액공제율은 에너지 절약정도 및 투자금액에 따라 상이함(<표 2> 참고)

- 현행 규정에서는 생산시설에서 3%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생산과정에서 5%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따라 5%, 15%, 35%의 세액공제를 허용함
- 투자금액의 250만유로까지는 35%, 250만 유로 초과 1천만유로 이하인 경우 15%, 1천만유로 초과 5천만유로 이하까지는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36) "Italy; Switzerland - Italy and Switzerland: Agreement on Taxation of Frontier Workers and Amending Protocol Under Tax Treaty Enter into Force(20 July 2023)," News IBFD(accessed 3 Apr. 2024).

37) "Tax on Telework: New Regulations for Cross-border Commuters(2024. 3. 1. 기사)," <https://theswisstimes.ch/tax-on-telework-new-regulations-for-cross-border-commuters/>, 검색일자: 2024. 4. 2.

38) "Switzerland Cross Border Teleworking - Tax Implications(2024. 3. 17. 기사)," <https://taxnatives.com/switzerland-cross-border-teleworking-tax-implications/>, 검색일자: 2024. 3. 26.

39) "Italy - Italy Introduces Tax Credit for Investments Achieving Energy Savings(05 Mar. 2024)," News IBFD(accessed 27 Mar. 2024).

40) 적격유형자산은 Annex A of Law 232/2016에 명시되어 있음, <https://www.agenziaentrate.gov.it/portale/documents/20143/2254661/Allegato+A+della+legge+232+del+2016.pdf/b752d9a1-2886-2473-075d-d68f9598cf90>, 검색일자: 2024. 4. 4.

41) 적격무형자산은 Annex B of Law 232/2016에 명시되어 있음, <https://www.agenziaentrate.gov.it/portale/documents/20143/2254661/Allegato+B+della+legge+232+del+2016.pdf/759945e3-1d03-eb36-3b3a-d3572c9c4284>, 검색일자: 2024. 4. 4.

<표 2> 이탈리아의 에너지 절약 기업의 세액공제율

구분	현행규정	개정된 내용	
세액공제 요건	-생산시설에서 3% 이상 -생산과정에서 5% 이상	-생산시설에서 6% 이상 -생산과정에서 10% 이상	-생산시설에서 10% 이상 -생산과정에서 15% 이상
~250만유로 이하	20%	40%	45%
250만유로 초과 ~1천만유로 이하	10%	20%	25%
1천만유로 초과 ~5천만유로 이하	5%	10%	15%

- 이번 개정을 통해 생산시설에서 6%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생산과정에서 1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경우 10%, 20%, 40%의 인상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투자금액의 250만유로까지는 40%, 250만유로 초과 1천만유로 이하인 경우 20%, 1천만유로 초과 5천만유로 이하까지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또한, 더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경우(생산시설에서 1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 생산과정에서 15%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 15%, 25%, 45%의 인상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투자금액의 250만유로까지는 45%, 250만유로 초과 1천만유로 이하인 경우 25%, 1천만유로 초과 5천만유로 이하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함

■ 이번 개정안은 2024년 3월 19일부터 시행됨

<자료수집 및 정리: 김민경 선임연구원>



네덜란드

[국가별 공개 보고(EU Public CbCR) 지침에 관한 시행령 공포]

- 네덜란드는 2024년 3월 1일, 특정 사업 및 지점의 소득세 정보 공개에 관한 EU 회계지침(Accounting Directive: 2013/34/EU)의 개정 지침(2021/2101)에 관한 시행령을 공포함⁴²⁾
 - 지침은 유럽연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적격 다국적기업이 특정 소득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함
 - 공개 보고의 시작은 2024년 6월 22일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임
- (대상 법인) 의무 공개 대상 법인은 과거 연속적인 2개의 회계연도의 총 연결 매출이 7억 5천만유로⁴³⁾를 초과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기업임
 - 의무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다국적기업의 최종 모기업은 매년 다국적기업 그룹 전체에 대한 별도의 이익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함

42) IBFD, “Netherlands Gazettes Implementation Decree on 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ing Directive,” 2024. 3. 1.,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3-01_nl_1.html, 검색일자: 2024. 3. 25.

43) 2024년 3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조 884억원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그룹에 속하지 않은 매출 7억 5천만유로 이상의 독립기업도 지침 적용 대상에 해당됨
 - EU 회원국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최종 모회사가 네덜란드에 있는 중간규모 및 대규모 중속기업의 경우에도 가능한 경우 그룹 전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EU 회원국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네덜란드 지점의 경우, 순매출액이 1,200만유로⁴⁴⁾ 이상이면 그룹 전체의 보고서를 공개해야 함
- (대상 정보) 국가별 보고서에는 총수익에 관한 정보뿐 아니라, 수익 및 종업원 수 등 관련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함
- 이러한 정보와 데이터는 EU 회원국별, EU 비협조 관할국(EU 블랙리스트 및 그레이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별로 보고해야 함
 - 나머지 관할국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합산하여 공개 가능함

<자료 수집 및 정리: 이미현 세무사>



인도

[특정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 승인]

- 인도 상공부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회사가 수입하는 전기 자동차(EV)에 대한 수입 관세

인하의 승인을 발표함⁴⁵⁾

- 해당 관세 인하는 인도를 EV 제조 목적지로 홍보하기 위해 승인된 계획의 일환임
- 발표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일정액의 투자를 실행해야 하며, 일정 수준의 현지화를 달성해야 함
- 해당 관세 인하를 적용받기 위해 회사는 인도에 최소 5억달러⁴⁶⁾를 투자해야하며, 회사가 인도에 제조 시설을 설치하고 3년 이내에 EV의 상업 생산을 시작해야 함
 - 그리고 국내 생산 촉진을 위해 제조사는 3년차까지 25%, 5년차까지 50%의 국산화 수준을 달성해야 함
- 관세 인하 요건을 충족하고 최소 8억달러⁴⁷⁾를 투자한 경우, 취득원가가 3만 5천달러⁴⁸⁾ 이상인 수입 차량에 대해 5년간 연간 8천대를 한도로 15%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함
- 즉, 5년간 연간 8천대 한도로 최대 4만대의 전기를 수입할 수 있으며, 연간 수입이 8천대 미만인 경우, 한도에 미달하는 수입 가능 수량은 이월됨
 - 기업의 투자 약속은 국내 생산 가치 기준 및 최소 투자 기준을 요건으로 하는 은행 보증에 의해 보증되어야 함

<자료수집 및 정리: 권순오 세무사>

44) 2024년 3월 25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74억원임

45) IBFD, "India Approves Lower Import Duty for Certain Electric Vehicle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3-20_in_1.html, 2024. 3. 20., 검색일자: 2024. 3. 27.

46) 2024년 3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6,741억원임

47) 2024년 3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1조 786억원임

48) 2024년 3월 29일 원화 환산 시 약 4,700만원임



호주

[복리후생세 행정 관련 변경사항 발표]

■ 호주 국세청은 2024년 3월 20일, 온라인 성명을 통해 복리후생세(Fringe Benefit Tax)와 관련한 행정 변경 사항을 발표함^{49), 50)}

- 복리후생세와 관련하여 여행일지나 직원 진술서와 같은 증빙이 고용주에게 요구될 때, 국세청장이 입법 문서를 통해 대체 문서 또는 기록의 종류를 명시하는 경우 기존 기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음
 - 여러 개의 서로 다른 기록을 함께 검토할 때 해당 기록들이 법령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담고 있다면 대체 기록 요건을 충족함
 - 전자 또는 서면 양식으로 보관된 고용계약서, 급여기록, 직무설명, 고용주와 직원 간 서신(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호텔 영수증, 회의 프로그램 및 개인의 여행 영수증 등 다양한 유형의 문서가 포함됨⁵¹⁾
- 2024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며, 고용주가 신고 시 대체 기록을 사용하더라도 「복리후생세

법」에 따라 보관 의무가 있는 정보는 변경되지 않음

<자료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뉴질랜드

[도박세, GST 및 소득세 관련 규정 일부 개정]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24년 3월 14일, 역외 도박세(Offshore Game Duty)를 도입하고 GST 및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수정 문서 20호인 ‘Annual Rates for 2023-24, Multinational Tax, and Remedial Matters’을 발표함^{52), 53)}
- 1971년 「도박세법」을 개정하여 역외도박세를 부과하고, GST 플랫폼 경제규정과 관련하여 1985년 GST법에 경과조치를 도입함
 -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뉴질랜드 거주자에게 제공되는 스포츠 및 레이싱 베팅과 같은 원격 도박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일반적인 GST 원격서비스 규정과 동일하게 12%의 세율로 역외도박세가 적용됨

49) Australian Taxation Office, “Changes to fringe benefits tax record keeping(updated 2024. 3. 20.),” <https://www.ato.gov.au/about-ato/new-legislation/in-detail/businesses/proposed-changes-to-fringe-benefits-tax-record-keeping>, 검색일자: 2024. 3. 26.

50) Australian Taxation Office, Whats new in FBT, “Upcoming Law Changes: Changes to FBT record keeping(updated 2024. 3. 20.),” <https://www.ato.gov.au/forms-and-instructions/fringe-benefits-tax-return-2024-instructions/whats-new-in-fbt>, 검색일자: 2024. 3. 26.

51) Australian Taxation Office, Fringe benefits tax alternative record keeping - “Types of alternative records”(updated 2024. 3. 25.), <https://www.ato.gov.au/businesses-and-organisations/hiring-and-paying-your-workers/fringe-benefits-tax/fbt-registration-ldgment-payment-and-reporting/record-keeping-for-fbt/fringe-benefits-tax-alternative-record-keeping>, 검색일자: 2024. 3. 26.

52) New Zealand Legislation, “Amendment Paper No.20 - Taxation(Annual Rates for 2023-24, Multinational Tax, and Remedial Matters) Bill”, <https://www.legislation.govt.nz/sop/government/2024/0020/latest/whole.html#LMS939611>, 검색일자: 2024. 3. 26.

53) IBFD, “New Zealand - Government Proposes Amendments to 2023-24 Tax Bill to Introduce Offshore Gaming Duty and Amend GST and Income Tax Legislation, 2024. 3.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3-18_nz_1, 검색일자: 2024. 3. 26.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GST 플랫폼 경제규정 발효일 이전 체결된 단기 체류 또는 방문 숙박 시설을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함
 - 2024년 4월 1일 규정 시행 전 GST 가격을 예상하지 못하고 숙소 예약을 하였으나, 공급이 그 이전에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 대한 해소를 위한 규정임
- 조세조약 원천 규칙에서 제외된 ‘기술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개념을 ‘기술 및 관리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로 확대함
 - 뉴질랜드와 관련성이 미약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뉴질랜드의 과세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비과세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
 - 본 개정안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소득 연도에 적용됨
- 거래 주식을 시장 가치 이하로 처분한 자의 소득을 처분 당시의 주식 시장 가치로 간주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함
 - 주식의 처분 대상자가 특수관계인이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과세 대상 소득, 비과세 소득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함

- 본 규정은 2024년 4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주식 처분부터 적용됨

<자료수집 및 정리: 박하얀 연구원>



OECD

[BEPS Action 6 제6차 상호검토 결과보고서 발표]

- OECD는 2024년 3월 20일, BEPS Action 6의 조약혜택 남용(treaty shopping) 방지의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이행과 관련하여 제6차 상호검토(peer review) 결과보고서를 발표함⁵⁴⁾
 - OECD·G20 BEPS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회원국은 조세조약 남용 방지와 관련한 Action 6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평가한 상호검토 결과보고서를 발표함
 -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포괄적 이행체계 회원국들이 체결한 약 1,360개의 협정은 최소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는 2022년과 비교하여 약 30%가 증가한 것임
 - BEPS Action 6의 최소기준 이행 평가 기준을 일부 수정한 ‘수정 상호검토 문서’도 함께 발표함⁵⁵⁾

<자료수집 및 정리: 김재경 변호사>

54) OECD, “Steady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BEPS Action 6 minimum standard: latest peer review results,” https://www.oecd.org/tax/beps/steady-progress-in-the-implementation-of-the-beps-action-6-minimum-standard-latest-peer-review-results.htm?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2021-03-24&utm_content=Read%20more&utm_term=ctp&utm_medium=email&utm_source=Adestra, 검색일자: 2024. 3. 26.

55) OECD, “BEPS Action 6 on 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s,” <https://www.oecd.org/tax/beps/beps-action-6-peer-review-documents-2024.pdf>, 검색일자: 2024. 3. 26.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원회, 2021~2027년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개정에 따른 2024년도 EU 예산 수정안 채택(2024. 2. 29.)¹⁾
 - (배경) 2021~2027년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 개정²⁾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2024년도 EU 예산³⁾ 수정이 필요

- (주요 변경 사항) 우크라이나 관련 지원 강화, 핵심 기술 및 국방 관련 투자 확대, 서 발칸반도 지역 추가 지원 등을 반영하여 기존 예산안 대비 승인기준⁴⁾ 58억 3,370만유로, 지급기준 41억 4,360만유로의 예산 증액
 - 우크라이나 지원 기금(Ukraine Facility) 강화 및 우크라이나 지원 준비금(Ukrainian Reserve)⁵⁾을 위한 자금(승인기준 48억유로, 지급기준 38억유로)
 - 유럽 전략 기술 플랫폼(STEP)⁶⁾ 제도의 유럽 방위기금 확대(승인기준 3억 7,600만유로)

<표 1> 2024년 EU 예산 수정안

(단위: 백만유로)

구분	당초 2024년 예산		변경 내역		2024년 예산 수정안	
	승인기준	지급기준	승인기준	지급기준	승인기준	지급기준
1. 단일시장, 혁신 및 디지털	21,493	20,828	-	-	21,493	20,828
2. 결속, 회복력 및 가치	74,561	33,716	-	-	74,561	33,716
2.a. 경제·사회·지역적 통합	64,665	24,156	-	-	64,665	24,156
2.b. 회복력 및 가치	9,895	9,560	-	-	9,895	9,560
3. 천연자원 및 환경	57,339	54,151	-	-	57,339	54,151
4. 이주 및 국경관리	3,893	3,249	-	-	3,893	3,249
5. 안보 및 국방	2,321	2,035	376	-	2,697	2,035
6. 파트너 및 세계	16,230	15,291	501	24	16,731	15,315
7. 유럽 공공 행정	11,988	11,988	-	-	11,988	11,988
8. 기타 특수 기금	1,561	1,371	4,957	4,120	6,518	5,491
합계	189,385	142,630	5,834	4,144	195,219	146,774

주: 기타 특수 기금은 연대 및 긴급원조 준비금(Solidarity and Emergency Aid Reserve), 유럽 세계화 조정 기금(the European Globalisation Adjustment Fund for Displaced Workers), 브렉시트 조정 준비금(Brexit Adjustment Reserve)을 포함

출처: European Commission, "Draft Amending Budget No1 to the General Budget 2024-Amendments of the 2024 budget required due to the MFF revision," 2024. 2. 29., https://commission.europa.eu/document/download/e085ec11-091f-436b-8e65-4181cc1a60de?filename=COM_2024_80_1_EN_ACT_part1_v4.pdf, 검색일자: 2024. 3. 21.

- 1) European Commission, "Commission proposes amendment to EU budget 2024 in record time to continue delivering on EU priorities," 2024.2.29.,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4_1229, 검색일자: 2024.3.21; European Commission, "Draft amending budget No 1/2024," 2024.2.29. https://commission.europa.eu/publications/draft-amending-budget-no-12024_en, 검색일자: 2024.3.21.
- 2)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동향」 2024년 2월호를 참고
- 3)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11월에 최종 채택되었음
- 4) 승인기준 예산은 특정 프로젝트, 계약, 연구 등을 위해 승인된 해 또는 이후에 지급하기 위한 법적 약속을 의미하고 지급기준 예산은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임
- 5) 다년도 재정 프레임워크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새로운 특별 자금
- 6) Strategic Technologies for Europe Platform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연대 및 긴급 원조 준비금을 강화하여 유럽 연대 준비금과 긴급 구호 준비금으로 구분 (승인 기준 및 지급기준 3억 6,500만유로)
 - 서 발칸반도 개혁 및 성장 기금을 위한 지원 강화(승인기준 5억 1천만유로, 지급기준 2,390만유로)
 - 난민 근로자를 위한 유럽 세계화 조정 기금의 준비금 축소(승인기준 △1억 7,570만유로)
 - (향후 절차) EU 집행위원회는 예산 승인 절차를 위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예산 수정안을 제출
- 유로그룹, 2024년 3월 회의에서 유로지역의 2025년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성명 채택(2024. 3. 11.)⁷⁾
- 유로그룹은 유로지역 거시 경제 및 재정 상황과 전망을 점검하고 2025년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 유로그룹은 2월 에 이루어진 EU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에 대한 정치적 합의⁸⁾에 환영 의사를 표명하고 이행에 대비한 작업이 진행중이라고 설명
 - 개혁안은 채무 지속가능성 강화, 구조개혁과 투자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촉진, 회원국의 주인 의식 제고, 구속력 강화 등을 위해 설계
 - (경제 상황) EU 집행위원회의 전망에 따르면 2024년에 경제가 약세로 시작했으나 2025년에 유로지역 경제활동이 촉진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
 -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로 2025년에 ECB의 목표 인플레이션에 근접할 전망
 -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제전망 리스크는 하방에 치우쳐 있음
 - (재정 정책) 유로지역은 재정 여력 개선 필요성과 함께 다양한 재정 수요에 직면하고 있으며, 회원국 재정정책의 긴밀한 조정은 유로 지역 강화와 통합에 기여하므로 예산안 및 재정 기조에 대한 방향이 여전히 중요
 -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안의 요건으로 인해 2025년 유로지역의 전반적 재정기조는 다소 긴축적이며, 이는 거시경제 전망, 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및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 시 적절하지만 불확실성을 고려해 정책의 민첩성은 유지해야 함
 - 유로그룹은 계속해서 야심찬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녹색 및 디지털 전환, 국방 역량 강화 등 공동 우선순위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지·확대할 예정
 - 또한 공공지출의 효율성, 질, 구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24년에는 남은 에너지 지원 조치를 가능한 빨리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걸림분은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사용할 예정

7) European Council and Council of the EU, "Eurogroup statement on the fiscal policy orientation for 2025," 2024. 3. 11.,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3/11/eurogroup-statement-on-the-fiscal-policy-orientation-for-2025/>, 검색일자: 2024. 3. 21.

8) 관련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동향」 2024년 2월호를 참고

■ EU 통계청, 2023년 4분기 경제성장률 및 고용 통계 발표(2024. 3. 8.)⁹⁾

- (경제성장률) 2023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 유로지역과 EU 27개국의 계절조정 경제성장률

은 모두 0%를 기록했고, 유로지역은 3분기 -0.1%에서 4분기에 0%로 소폭 상승했으며 EU는 전분기와 동일한 성장률을 보임 (<표 2> 참고)

<표 2> 유로지역 및 EU 27개국 2023년 4분기 경제성장률(계절조정)

(단위: %)

국가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Q1	Q2	Q3	Q4	Q1	Q2	Q3	Q4
벨기에	0.4	0.3	0.4	0.3	1.7	1.3	1.4	1.5
독일	0.1	0.0	0.0	-0.3	-0.1	0.1	-0.3	-0.2
에스토니아	-0.7	-0.3	-0.8	-0.7	-3.9	-3.0	-3.1	-2.5
아일랜드	-3.4	-0.1	-2.5	-3.4	2.4	-0.4	-5.7	-9.1
그리스	0	1.1	-0.1	0.2	2	2.7	2.1	1.2
스페인	0.5	0.5	0.4	0.6	4.1	2.0	1.9	2.0
프랑스	0.0	0.6	0.0	0.1	0.9	1.2	0.6	0.7
크로아티아	1.0	1.5	0.5	1.3	1.6	2.2	3.0	4.3
이탈리아	0.5	-0.2	0.2	0.2	2.3	0.6	0.5	0.6
사이프러스	0.8	-0.4	1.3	0.6	3.1	2.1	2.4	2.2
라트비아	-0.2	-0.3	0.1	0.8	-0.2	-0.5	0.2	0.4
리투아니아	-1.9	2.4	0.0	-0.1	-2.2	0.7	0.0	0.2
룩셈부르크	0.6	0.2	-1.4	0.0	-1.3	-0.5	-2.1	-0.6
몰타	0.9	0.8	2.3	0.3	6.3	4.9	7.0	4.3
네덜란드	-0.5	-0.4	-0.3	0.3	1.7	-0.2	-0.7	-0.3
오스트리아	0.1	-1.3	-0.3	0.0	1.8	-1.5	-1.7	-1.4
포르투갈	1.5	0.1	-0.2	0.8	2.5	2.6	1.9	2.2
슬로베니아	0.3	1.1	0.0	1.1	1.2	1.8	1.9	2.6
슬로바키아	0.2	0.5	0.3	0.3	0.9	1.3	1.2	1.3
핀란드	-0.1	0.4	-1.1	-0.7	-0.1	-0.3	-1.6	-1.8
유로지역 20개국	0.0	0.1	-0.1	0.0	1.3	0.6	0.1	0.1
불가리아	0.4	0.4	0.4	0.5	2.4	2	1.8	1.6
체코	0.1	0.2	-0.8	0.2	-0.3	-0.2	-0.8	-0.2
덴마크	1.2	-0.6	0.4	2	2.7	0.8	0.7	3.1
헝가리	-0.3	0	0.8	0.0	-1.1	-2.1	-0.2	0.5
폴란드	0.7	-0.1	1.1	0.0	-1.3	-0.4	0.3	1.7
루마니아	-0.8	1.4	1.0	-0.5	1.0	2.9	3.5	1.1
스웨덴	0.7	-0.7	-0.1	-0.1	1.7	-0.3	-1.1	-0.2
EU 27개국	0.1	0.1	0.0	0.0	1.2	0.6	0.1	0.2

주: 1. 이 표의 경제성장률은 일반적으로 계절 조정 및 달력효과 조정된 자료에 기초

2.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의 전년 동기 대비 퍼센트 변화는 달력효과 조정 자료로 계산

출처: EU 통계청, "GDP stable and employment up by 0.3% in the euro area," 2024. 3. 8.,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08032024-ap>, 검색일자: 2024. 3. 11.

9) EU 통계청, "GDP stable and employment up by 0.3% in the euro area," 2024. 3. 8., <https://ec.europa.eu/eurostat/web/products-euro-indicators/w/2-08032024-ap>, 검색일자: 2024. 3. 12.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전년 동기 대비) 3분기에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두 지역 모두 0.1% 성장했으나, 4분기에는 유로지역이 0.1%, EU가 0.2%로 성장률이 증가
- (연간 성장률) 2022년에는 유로지역과 EU 모두 3.4%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팬데믹 이후 강한 경제성장세를 나타낸 후 모멘텀 저하¹⁰⁾로 2023년에는 각각 0.4%로 크게 감소함
- (부문별 기여) 가계 최종 소비지출은 EU에서 0.1%p, 유로지역에서 0%p 기여하였고, 정부 최종지출은 두 지역 모두 0.1%p, 총고정자본형성은 두 지역 모두 0.2%p로 양(+)의 기여
- (국가별) 전 분기 대비 4분기 성장률은 덴마크가 2.0%, 크로아티아 1.3%, 슬로베니아 1.1% 순으로 높았으며, 아일랜드¹¹⁾ -3.4%,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각각 -0.7% 순으로 낮은 성장률을 보임
 - (고용) 전분기 대비 2024년 4분기 취업자 수는 유로지역에서 0.3%, EU에서 0.2%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는 3분기에 유로지역 1.4%, EU 1.2%에서 4분기에 유로지역 1.2%, EU 1%로 변화



IMF

- IMF 집행위원회, 일반재원계정(General Resources Account, GRA) 자금 대출에 대한 연간 및 누적 한도 임시 확대 연장(2024. 3. 11.)¹²⁾
 - (배경) IMF 집행위원회는 2023년 3월에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이 직면한 어려운 경제 환경과 불확실한 전망을 반영하여 자금 대출의 연간 및 누적 한도를 각각 회원국 지분 쿼터(Quota)¹³⁾의 145→200%, 435→600%로 12개월간 한시적으로 늘리도록 승인함
 - 2024년 3월 4일, IMF 집행위원회는 GRA 자금 대출에 대한 회원국의 연간 및 누적 한도 임시 확대를 2024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함
 - 확대된 연간 및 누적 한도는 각각 200%, 600%로 기존과 동일하며, 2024년 말에 계획된 GRA 자금 대출 한도에 대한 포괄적 검

10) EU집행위, "Autumn 2023 Economic Forecast: A modest recovery ahead after a challenging year," 2023.11.15.,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forecast-and-surveys/economic-forecasts/autumn-2023-economic-forecast-modest-recovery-ahead-after-challenging-year_en, 검색일자: 2024. 3. 26

11) 아일랜드 통계청에 따르면 전분기 대비 2023년 4분기 아일랜드 경제성장률은 산업(건설 제외) -7.7%, 전문·행정 및 지원 서비스 -3.8%, 건설 -1.9%, 수출 -1.0% 등의 부문별 감소에 따라 -3.4%로 나타남(Quarterly National Accounts Quarter 4 2023, <https://www.cso.ie/en/release/sandpublications/ep/p-na/quarterlynationalaccountsquarter42023/gdpbysector/>, 검색일자: 2024. 3. 15.)

12) IMF, "IMF Executive Board Extends Temporary Increase in Access Limits Under the General Resources Account," 2024. 3. 11., <https://www.imf.org/en/News/Articles/2024/03/11/pr-2482-imf-extends-temporary-increase-in-access-limits-under-the-general-resources-account>, 검색일자: 2024. 3. 19.

13) IMF 쿼터는 각국의 GDP, 경제개발정도, 변동성, 외환보유액 등이 반영되며 출자한도, 투표권, 자금인출한도, SDR 배분 등을 결정하는 데 사용됨. 이 사회는 적어도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할당량 증액 여부 검토를 실시

토가 완료되기 전까지 자금 대출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



OECD

■ OECD, 『글로벌 부채 보고서(Global Debt Report)』 제1판 발표(2024. 3. 7.)^{14), 15)}

- (현황) 채권시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확장적 통화정책, 특히 양적완화와 함께 급속하게 성장해왔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채권 발행이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2023년 말 기준 국제 및 회사채 총액은 약 100조달러로 전 세계 GDP와 비슷한 규모를 기록
 - OECD 중앙정부의 시장성부채(marketable debt)¹⁶⁾는 2008년에 30조달러에서 2023년 말 54조달러로 증가했으며, 2024년에 56조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회사채는 2008년에 21조달러에서 2023년 말 기준 34조달러로 증가했으며, 회사채 시장에서 비은행 금융 부문의 확대가 두드러짐
 - 녹색·사회·지속가능성(GSS) 채권¹⁷⁾ 발행 총

액은 동 기간에 6,410억달러에서 4조 3천억달러로 지난 5년간 빠르게 성장함

- 정부와 기업은 2008년 이후 저금리 환경이 장기화되면서 만기를 연장*하고 고정금리 발행 비중을 늘려 우호적인 자금조달 여건을 누렸으며, 이로 인해 2022년 초 급격한 정책 금리 인상의 여파가 일부 완화됨

* OECD 국제 평균 만기가 2008년에 약 6년에서 2023년에 8년으로 늘어났으며, 절반 이상이 2027년 이후 만기 도래 예정

- (전망) 중앙은행의 양적긴축이 시행되면서 차입수요와 채권의 순공급을 증가시켜 투자자 기반과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단기간에 자금 조달 압박이 증가
 - 중앙은행이 지난 10년간 증가한 차입금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으나, 양적긴축으로 채권의 순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비은행 금융부문 및 가계가 보유하는 채권의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서 가격에 더욱 민감한 투자자 기반으로 변화될 것
 - 2024~2026년 기간 동안 전 세계 국제채의 약 40%와 회사채의 37%가 만기 도래 예정으로 단기간에 상당한 금액의 부채를 더 높은 이자율로 추가 차입이 요구됨

14) OECD, *Global Debt Report 2024: Bond Markets in a High-Debt Environment*, 2024. 3. 7., <https://www.oecd.org/finance/global-debt-report/>, 검색일자: 2024. 3. 19.

15) 금번에 처음 발행된 OECD 글로벌 부채 보고서는 국가 및 기업 부채 시장을 조사하여 현재 시장 상황과 금융 안정성 위험 등 관련 정책 고려사항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며, 이전의 OECD 차입 전망 보고서(Sovereign Borrowing Outlook) 간행물과 통합되어 발행됨. *Global Debt Report 2024* 중 'Executive summary'를 요약한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원본 보고서를 참조 바람

16) 시장성 부채는 2차 시장(secondary market)에서 사고팔 수 있는 금융 증권 및 상품으로 자본시장에서 발행된 채권과 어음이 해당되며, 비시장성 부채는 공식 부문의 다자간 및 양자 간 대출로 양도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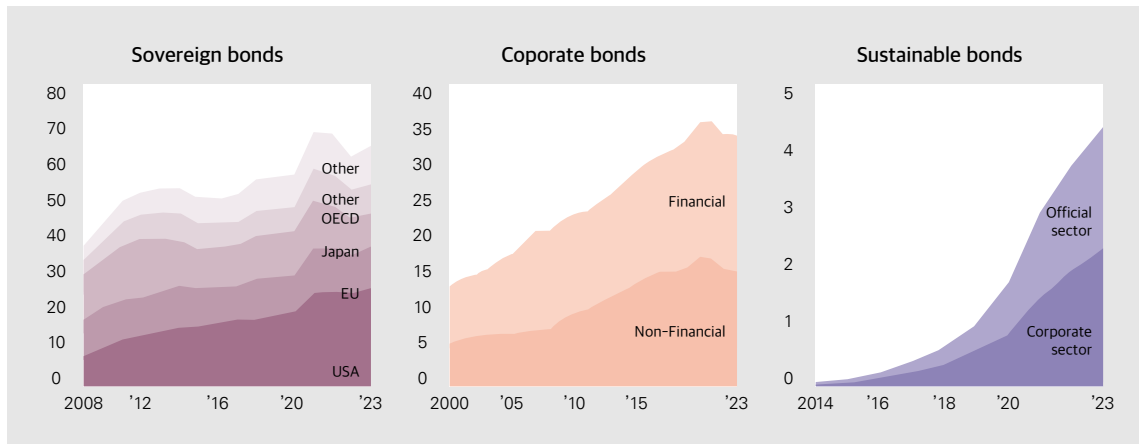
17) 녹색 및 사회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거나 재투자하는 채권에 중점을 둔 시장 부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특히 3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가 상당한 신흥경제국가의 자금 조달 압박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신규 차입과 고정금리 채용자로 이자 지불 압력이 높아져, 이자 지급액이 2026년 까지 GDP 대비 0.5%에 달할 것으로 예상
- (위험) 주요 위험은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aggregate debt-to-GDP ratio)¹⁸⁾이 높은 특정 선진국과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 국가, 부동산 등 일부 부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금융기업 부문의 위험이 크게 증가함
- 비금융기업의 전체 투자 등급 발행 중 53%가 투자적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BBB 등급으로 이는 2000년도 점유율의 2배 이상이며, Debt/EBITDA¹⁹⁾ 지표가 4를 넘
- 는 BBB 등급 채권 비중은 2008년 11%에서 2023년 42%로 증가
- (권고) 높은 물가상승률과 제한된 통화 정책으로 자금압력이 높아지는 새로운 거시경제 환경에서 면밀한 감독과 신중한 정책 접근을 권고
- 정부 지출은 고도로 타겟팅되어야 하며 생산성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함
- 채무관리 당국은 기업의 부채 지속가능성 지표와 금융 부문의 위험노출을 면밀히 감독해야 함
- GSS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GSS 채권 표준을 채택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함

[그림 1] 채권시장의 성장

(단위: 1조달러)



출처: OECD, "Governments and firms need to address the key risks from a sharp increase in global bond borrowing" Newsroom, 2024. 3. 7.

18) 중앙정부 시장성부채(central government marketable debt)로 측정된 국가부채(sov reign debt)임

19) Debt/EBITDA(감가상각 전 영업이익 대비 부채비율)는 기업의 부채부담도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지표로 기업이 부채를 상환할수록 이익을 늘려갈수록 Debt/EBITDA 지표는 낮아짐(출처:FN위키)



미국

[예산·결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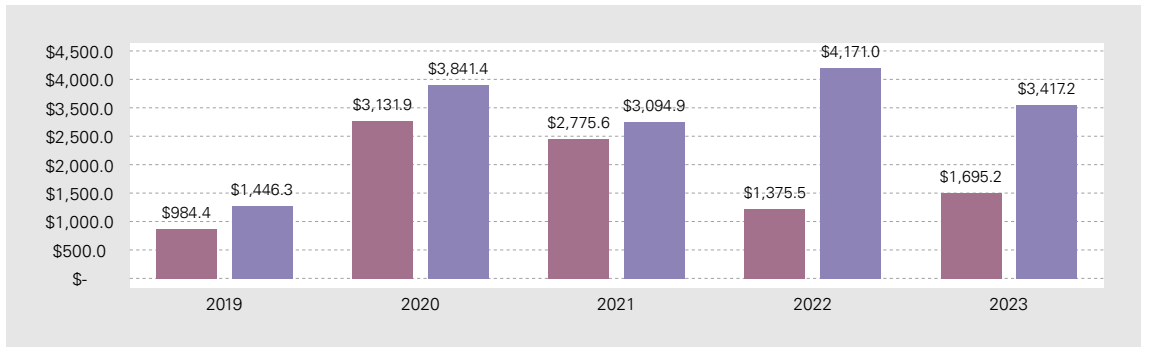
■ 미국 재무부 재정관리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 『2023회계연도²⁰⁾ 발생주의 결산보고서²¹⁾』 발표(2024. 2. 15.)²²⁾

- (발생주의 기준 연방 비용)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총비용(gross cost)은 7조 6,617억달러로, 전년 대비 3.3% 증가

[그림 2] 미국 재정적자(현금주의)와 순운영비용(발생주의) 추이

(단위: 십억달러, 회계연도)



주: 빨간색 막대그래프는 현금주의 재정적자, 하얀색 막대그래프는 발생주의 순 운영비용을 의미
출처: 미 재무부, "FY2023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4.2.15. Chart 1, p.3

<표 3> 미국 연방정부 자산 및 부채

(단위: 십억달러, %)

구분	2022회계연도	2023회계연도	증감	증감률
자산	4,962.4	5,419.1	456.7	9.2
현금 및 화폐성 자산(Cash & Other Monetary Assets)	877.8	922.2	44.4	5.1
순재고자산(Inventory & Related Property, Net)	406.9	423.0	16.1	4.0
순대출금(Loans Receivable, Net)	1,434.1	1,695.1	261.0	18.2
순유형자산(General PP&E, Net)	1,197.5	1,235.0	37.5	3.1
기타(Other)	1,046.1	1,143.8	97.7	9.3
부채	39,022.3	42,898.3	3,876.0	9.9
연방채무 및 미지급 이자(Federal Debt and Interest Payable)	24,328.0	26,347.7	2,019.7	8.3
연방공무원 및 재향군인 연금 등 (Federal Employee & Veteran Benefits Payable)	12,811.9	14,327.4	1,515.5	11.8
기타(Other)	1,882.4	2,223.2	340.8	18.1

출처: U.S. Treasury, "FY2023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4. 2. 15. Table 4, p. 22

20) 2022년 10월 ~ 2023년 9월

21) FY2023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2) 미 재무부, "FY2023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024. 2. 15., [https://www.fiscal.treasury.gov/files/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2023/02-15-2024-FR-\(Final\).pdf](https://www.fiscal.treasury.gov/files/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2023/02-15-2024-FR-(Final).pdf), 검색일자: 2024. 3. 27.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2023회계연도 순운영비용²³⁾(net operating cost)은 전년 대비 34.8%(1.08조달러) 증가한 3조 4,172억달러
- (재정수지와 비교)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1조 6,592달러로 순운영비용(발생주의)과 재정적자(현금주의)의 차이는 2023회계연도 기준 약 1.7조달러에 이릅니다
- 재정적자와 순운영비용의 차이는 연방 공무원 및 재향군인 혜택 프로그램 같은 순운영비용에 포함되지만 재정적자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²⁴⁾ 규모에서 주로 기인
- (자산) 2023회계연도 연방정부 소유 자산(2023. 9. 30. 기준)은 전년 대비 9.2%(4,567억달러) 증가한 5조 4,191억달러
- (부채) 2023회계연도 부채는 전년 대비 9.9%(3조 8,760억달러) 증가한 42조 8,983억달러
- 미국 관리예산처(OMB), 2025회계연도²⁵⁾ 대통령 예산안 발표(2024. 3. 11.)^{26), 27)}
 - (예산목표 및 주요정책) 증세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 가계 비용 절감, 메디케어 등 사회보장 강화, 미국 국민에 대한 투자, 안전 및 안보 강화를 중점으로 한 예산 편성
 - (재정적자 관리) 세금 공정성을 높여 재정적자 감축 추진
 - 1억달러 이상 재산²⁸⁾을 보유한 상위 0.01%에 대해 소득세 최저세율 25% 적용
 - 기업 소득²⁹⁾ 10억달러 이상 기업에 대한 법인 최저세율(CAMT)을 15%에서 21%로 인상
 - 글로벌 무형자산 발생소득(GILTI)³⁰⁾의 유효세율을 10.5%에서 21%로 인상
 - (가계비용 절감) 단가협상, 세금공제, 지원비 지급 정책 등을 통해 가계비용 절감 실현
 - (메디케어 보호 및 강화) 고소득층 대상 메디케어 세율 인상으로 메디케어를 강화하여 사회보장 제도 강화
 - (미국과 미국 국민에 대한 투자) 교육, 의료, 보육, 근로 등 광범위한 가계 지원 및 복지 향상
 - (미국 국내외 안전 도모) 국내 강력범죄 단속, 마약 유통 근절, 법 집행력 강화, 국제 위협 대응에 지원 및 투자
 - (경제전망) 2023년 경제성장률은 2.4%이며 2020년대 후반까지 평균 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2023년 실업률은 평균 3.6%로 추정되며, 2024년에는 완만한(modestly) 증

23) 순운영비용은 순비용에서 정부 세금 및 기타 수입(other unearned revenues) 등을 차감한 수치

24) 연방 비용 추계가 발생주의를 따르므로 발생했지만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닌 성격의 비용

25) 2024년 10월~2025년 9월

26) 백악관, "fiscal year 2025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4. 3. 11.,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4/03/budget_fy2025.pdf, 검색일자: 2024. 3. 25.

27) 백악관, "FACT SHEET: The President's Budget for Fiscal Year 2025," 2024. 3. 11., <https://www.whitehouse.gov/omb/briefing-room/2024/03/11/fact-sheet-the-presidents-budget-for-fiscal-year-2025/>, 검색일자: 2024. 3. 25.

28) 2023회계연도부터 추진되었던 부유세(Billionaire Minimum Income Tax)의 연장선상으로 현재 세제상 과세 대상뿐만 아니라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도 재산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을 계획(H.R.8558 법안 참고)

29) 주주 대상으로 공시되는 경영 보고서의 기업 소득(Book income) 기준

30) 미국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고정 자산(감가상각자산) 대비 10% 이상 초과 소득이 발생 시 무형자산 소득(GILTI;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으로 인식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

- 가세를 보인뒤 2028년까지 장기 실업률은 3.8%로 하락할 전망
- (물가) 2021~2022년도 사이, 물가의 가파른 상승 이후 2023~2024년 2개 연도 동안 물가 상승률은 감소하여 2023년도 4.2%, 2024년도 2.9%로 감소세 전망
 - (재정전망) 2025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4.2% 감소한 1조 7,810억달러(GDP 대비 6.1%)로 전망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6년도 5.1%를 거쳐 2027년도부터 4%대에 진입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4년에는 3.9%에 이를 전망
 - 2025회계연도 연방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 대비 6.5% 증가한 29조 9,840억달러에 이르며 GDP 대비 비율 또한 2025년 102.2%에서 계속 증가하여 2030년에는 106%에 이를 전망
 - (수입) 2025회계연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7.9% 증가한 5조 4,850억달러(GDP 대비 18.7%)로 전망
 - GDP 대비 재정수입은 2026회계연도에 19%대에 진입하고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31회계연도에 20%대에 들어서 2034년에는 20.3%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5회계연도 주요 수입 항목의 GDP 비중 순위는 개인소득세(9.1%), 사회보험세 등(4.4%), 법인세(2.3%), 소비세(0.4%)³¹⁾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출) 2025회계연도 재정지출은 전년 대비 4.7% 증가한 7조 2,660억달러(GDP 대비 24.8%)로 계획
 - GDP 대비 재정지출은 2025년 이후로 감소하여 24% 초반대를 2034년까지 유지할 전망
 - 2025회계연도의 총재량지출³²⁾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1조 9,290억달러(GDP 대비 6.6%)로 계획

<표 4> 미국 2025회계연도 예산안 재정전망

재정 전망(회계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	2033	2034	2025~2034
예산총량(십억달러)											
수입	4,047	4,897	4,441	5,082	5,485	5,873	6,186	...	8,258	8,639	70,328
지출	6,822	6,273	6,135	6,941	7,266	7,419	7,697	...	10,060	10,316	86,625
재정적자	2,775	1,376	1,694	1,859	1,781	1,547	1,510	...	1,801	1,677	16,297
연방채무 ¹⁾	22,284	24,252	23,236	28,156	29,984	31,639	33,250	...	43,339	45,056	-
예산총량(GDP 대비 %)											
수입	18.1	19.6	16.5	18.0	18.7	19.2	19.4	...	20.2	20.3	19.7
지출	30.5	25.1	22.7	24.6	24.8	24.3	24.2	...	24.6	24.2	24.4
재정적자	12.4	5.5	6.3	6.6	6.1	5.1	4.7	...	4.4	3.9	4.6
연방채무 ¹⁾	99.6	97.0	97.3	99.6	102.2	103.6	104.5	...	106.0	105.6	-

주: 1) 정부 내부거래 제외

출처: 관리예산처, "Fiscal Year 2025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24. 3. 11., Table S-1

31) 주에서 부과하는 소비세가 아닌 연방정부에서 특정 재화 및 서비스 등에 부과하는 소비세를 의미

32) Proposed budget 기준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2025회계연도의 의무지출(순이자지출 9,650억 달러 제외)³³⁾은 전년 대비 4.9% 증가한 4조 3,720억달러(GDP 대비 14.9%)로 전망
- 2025회계연도 예산 기능별(총 20개 기능) 지출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는 항목은 사회보장지출, 순이자, 메디케어, 소득보장(income security), 국방, 보건(의료) 순 등으로 나타남
- 미국 의회, 2024회계연도 정규예산안(H.R. 4366, H.R. 2882) 최종 확정^{34), 35)}

<표 5> 2024회계연도 12개 세출분야 확정 예산 추정치

(단위: 억달러, %)

분야	2023회계연도 확정예산	2024회계연도 확정예산 추정치	증감률
농업	255	262	2.9
통상·사법·과학	839	699	-16.6
국방	8,055	8,245	2.4
에너지·수자원	701	719	2.5
재무·일반정부	278	139	-50.1
국토안보	821	834	1.6
내무·환경	555	575	3.5
노동·보건복지·교육	2,130	1,974	-7.3
입법부	69	68	-2.2
군사시설·보훈	1,542	1,539	-0.2
국무부·외교	642	593	-7.6
교통·주택·도시개발	1,261	1,343	6.5

주: 1. 긴급 지출을 포함한 예산 권한 기준

2. 증감률은 표에 제시된 예산 규모가 반올림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계산됨

출처: 1. 의회예산처, "CBO Estimate for Divisions A through N of H.R. 2617(as modified by S.A. 6552), th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3," 2022. 12. 21.

2. 의회예산처, "Further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4," 2024. 3. 21.

3. 의회예산처,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24," 2024. 3. 5.

<표 6> 미국 2024년 3월 FOMC 경제전망 요약(SEP)

전망치(중간값)	2023년	2024년	2025년	장기
실질 GDP 상승률	2.1	2.0	2.0	1.8
- 12월 전망치	1.4	1.8	1.9	1.8
실업률	4.0	4.1	4.0	4.1
- 12월 전망치	4.1	4.1	4.1	4.1
PCE 물가상승률	2.4	2.2	2.0	2.0
- 12월 전망치	2.4	2.1	2.0	2.0
근원 PCE 물가상승률	2.6	2.2	2.0	
- 12월 전망치	2.4	2.2	2.0	

주: 1. 모든 지표의 전망치는 중간값으로 나타냄

2. GDP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은 기준연도 전년도의 4분기 수치와 기준연도 4분기 수치를 기준으로 변화율 계산하였으며, 실업률은 해당연도 4분기의 실업률 의미

3. 근원 PCE 물가상승률은 PCE 물가상승률에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

4. 장기 전망은 각 위원들이 적정 통화정책 하에서 경제에 충격이 없을 경우 각 지표가 수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을 나타냄

출처: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Table 1, 2024. 3. 20.

33) Proposed budget 기준

34) 백악관, "Press Release: Bill Signed: H.R. 4366," 2024. 3. 9.,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4/03/09/press-release-bill-signed-h-r-4366/>, 검색일자: 2024. 3. 26.

35) 백악관, "Press Release: Bill Signed: H.R. 2882," 2024. 3. 23.,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legislation/2024/03/23/press-release-bill-signed-h-r-2882/>, 검색일자: 2024. 3. 26.

- (배경) 3차 임시 세출예산에 이어 4차 임시 세출예산의 만료시한(2024년 3월 8일, 2024년 3월 22일)의 도래를 앞두고 정규예산안 총 12개의 분야를 6개씩 두 부문으로 편성하여 정규예산안 최종 입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
 - (1차 정규 예산안 분야) ①농업 ②통상·사법·과학 ③에너지·수자원 ④내무·환경 ⑤군사시설·보훈 ⑥교통·주택·도시개발
 - (2차 정규 예산안 분야) ①국방 ②재무·일반정부 ③국토안보 ④노동·보건복지·교육 ⑤입법부 ⑥국무부·외교
 - 4차 임시 세출 예산안의 만료 이후에 2차 정규 예산안이 상원 가결 및 대통령 서명 되어 몇 시간의 정부 예산 공백이 존재하였으나 관련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³⁶⁾
- (예산 규모) 2024회계연도 정규 세출안의 규모는 지출권한 1조 6,990억달러 및 지출(Outlays) 2조 2,280달러로 추산³⁷⁾

[기타]

-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유지 결정(2024. 3. 20.)³⁸⁾
 - 3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기존 수준(5.25~5.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

- 함께 발표된 연준의 경제전망 요약(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SEP)에 따르면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은 2.1%, 물가상승률은 2.4%, 올해 말 적정 기준금리는 4.6%로 전망³⁹⁾
 - 2023년 12월 전망치 대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실업률 전망은 2024년과 2026년에 1%p 하락하였고, 기준금리는 2025년 말과 2026년에 상승할 것으로 전망

일본

[예산·결산 등]

- 일본 재무성, 2023회계연도 3분기⁴⁰⁾ 예산사용 현황 발표(2024. 3. 5.)⁴¹⁾
 - 2023회계연도 3분기 일반회계 국가 수납금액은 54조 3,594억엔, 국가 지출금액은 25조 6,261억엔으로 세입액이 세출액을 28조 7,333억엔 초과
 -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대비 3분기 수입 비율은 42.6%로 전년 동기 대비

36) CRFB, "Appropriations Watch: FY 2024," 2024.3.23., <https://www.crfb.org/blogs/appropriations-watch-fy-2024>, 검색일자: 2024.3.27.

37) 의회예산처(CBO)의 비용추정에 기반하여 1,2차 정규세출안을 합산한 결과임

38)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 2024. 3. 20.,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monetary20240320a1.pdf>, 검색일자: 2024. 3. 27.

39) 미국 연방준비제도,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2024. 3. 20., <https://www.federalreserve.gov/monetarypolicy/files/fomcproptabl20240320.pdf>, 검색일자: 2024. 3. 27.

40) 일본의 2023회계연도는 2023. 4. 1.~ 2024. 3. 31.로, 2023회계연도 3분기는 2023. 10. 1. ~ 2023. 12. 31.을 의미

41)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https://www.mof.go.jp/policy/budget/report/budget_use/fy2023/05_3gai.html, 검색일자: 2024. 3. 11.

<표 7> 일본의 2023회계연도 3분기 예산사용 현황 개요

(단위: 억엔, %)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세입		세출	
세입예산액(A)	1,275,803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¹⁾ (D)	1,455,332	세입예산액(A)	4,352,264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¹⁾ (D)	4,375,805
3분기 국가 수납 금액(B)	543,594	3분기 국가 지출 금액(E)	256,261	3분기 국가 수납 금액(B)	891,761	3분기 국가 지출 금액(E)	839,083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42.6% (41.0%)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17.6% (16.6%)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B/A)	20.4% (22.8%)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지출 비율(E/D)	19.1% (21.5%)
3분기 누계(C)	778,057	3분기 누계(F)	879,767	3분기 누계(C)	3,364,431	3분기 누계(F)	3,359,361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60.9% (57.2%)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60.4% (54.1%)	세입예산액 대비 비율(C/A)	77.3% (78.7%)	이번 연도 사용 가능 금액 대비 비율(F/D)	76.7% (78.6%)

주: 1)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은 세출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 등 감감 금액을 의미(우리나라 예산현액에 해당)

1. () 안의 수치는 전년 동기 비율
2. 단위 미만 절사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5年度第3・四半期予算使用の状況の概要」, 2024. 3. 5.

1.6%p 증가

-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17.6%로 전년 동기 대비 1.0%p 감소하였으며, 이는 지방교부세·교부금 등의 감소에 기인
- 2023회계연도 3분기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대비 수입 비율은 20.4%로 전년 동기 대비 2.4%p 감소하였으며, 이번 연도 사용가능 금액 대비 국가 지출 비율은 19.1%로 전년 동기 대비 2.4%p 감소

- 전분기 대비 2023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1%(연율 0.4%), 명목 GDP 성장률은 0.5%(연율 2.1%)로 1차 속보치⁴³⁾에서 상향 조정
- (내외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내수) 기여도는 -0.1%p로 민간기업 설비의 상향 조정 등에 기인하여 1차 속보치(-0.3%p)에서 상향 조정되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외수) 기여도는 0.2%p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민간수요) 전분기 대비 민간수요 증가율은 0%로 1차 속보치(-0.3%)에서 상향 조정
 - 전분기 대비 민간 최종소비지출 증가율은 -0.3%로 수산식품 및 가전 등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1차 속보치(-0.2%)에서 하

[기타]

- 일본 내각부, 2023년 4분기 GDP 2차 속보치 발표(2024. 3. 11.)⁴²⁾

42) 일본 내각부, 「2023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2024. 3. 11., https://www.esri.cao.go.jp/sna/data/data_list/sokuhou/gaiyou/pdf/main_1.pdf, 검색일자: 2024. 3. 18.

43) 1차 속보치에서 발표된 전분기 대비 2023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0.1%(연율 -0.4%), 명목 GDP 성장률은 0.3%(연율 1.2%).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4), 「재정동향」 2024년 2월호 p.35를 참고(<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094>, 검색일자: 2024. 3. 18.)

- 향 조정되었으며, 민간주택 증가율은 1차 속보치와 동일한 -1.0%, 민간기업 설비 증가율은 1차 속보치(-0.1%)에서 상향 조정된 2.0%를 기록
- 민간재고 변동의 GDP 기여도는 -0.1%p로 1차 속보치(-0.0%p)에서 하향 조정
- (공적수요) 전분기 대비 공적수요 증가율은 -0.3%로 1차 속보치(-0.2%)에서 하향 조정
- 전분기 대비 정부 최종소비지출의 증가율은 -0.2%로 각종 기초통계의 반영 등에 기인하여 1차 속보치(-0.1%)에서 하향 조정되었으며, 공적자본형성 증가율

- 은 -0.8%로 1차 속보치(-0.7%)에서 하향 조정
- 공적재고 변동의 GDP 기여도는 -0.0%p로 1차 속보치(0.0%p)에서 하향 조정
- (수출입) 전분기 대비 재화·서비스 수출입 증가율은 각각 2.6%, 1.7%로 1차 속보치와 동일

- 일본은행, 금융정책 운영방침 변경 발표(2024. 3. 19.)⁴⁴⁾
 - 일본은행은 3월 18~19일 개최된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향후 금융정책 운영방침 변경을

<표 8>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분기 대비) 추이

(단위: %, %p)

구분	2022년		2023년				2023년 ¹⁾
	Q4	Q1	Q2	Q3	Q4 (1차 속보치)	Q4 (2차 속보치)	
실질 GDP	0.4	1.0	1.0	-0.8	-0.1	0.1	0.4
국내수요	0.0	1.3	-0.6	-0.8	-0.3	-0.1	-0.2
민간수요	-0.3	1.6	-0.9	-1.0	-0.3	0.0	0.1
민간최종소비지출	0.2	0.8	-0.7	-0.3	-0.2	-0.3	-1.0
민간주택	0.7	0.3	1.8	-0.6	-1.0	-1.0	-3.9
민간기업설비	-1.3	2.0	-1.4	-0.1	-0.1	2.0	8.4
민간재고변동	(-0.1)	(0.5)	(-0.1)	(-0.6)	(-0.0)	(-0.1)	-
공적수요	0.9	0.4	0.2	0.0	-0.2	-0.3	-1.1
정부최종소비지출	0.7	0.1	-0.1	0.3	-0.1	-0.2	-0.7
공적고정자본형성	0.1	2.0	2.2	-1.0	-0.7	-0.8	-3.0
공적재고변동	(0.1)	(-0.0)	(-0.0)	(-0.0)	(0.0)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 ²⁾	(0.4)	(-0.4)	(1.7)	(-0.0)	(0.2)	(0.2)	-
재화·서비스 수출	1.4	-3.5	3.8	0.9	2.6	2.6	10.7
재화·서비스 수입	-0.8	-1.6	-3.6	1.0	1.7	1.7	6.9
명목 GDP	1.9	2.3	2.5	-0.1	0.3	0.5	2.1
GDP 디플레이터	1.4	1.2	1.5	0.8	0.4	0.4	-

주: 1) 2023년 4분기 GDP 2차 속보치에서 발표된 연율 환산 수치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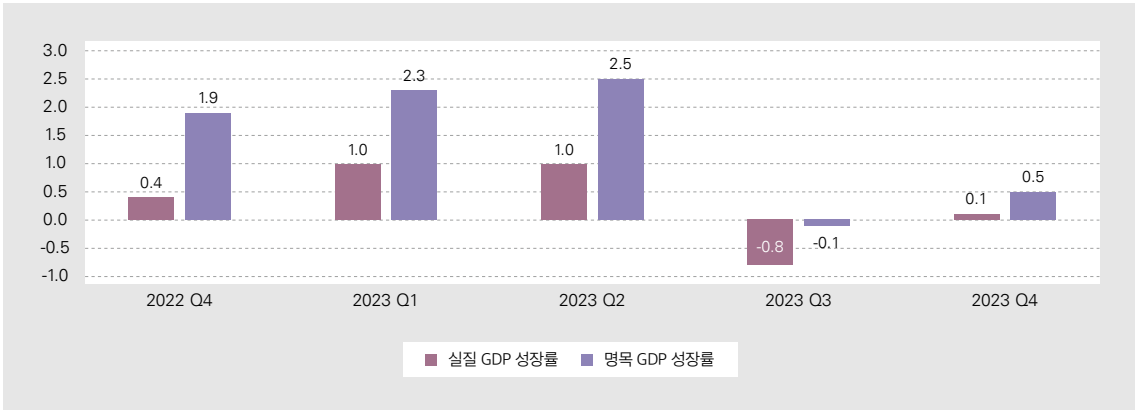
1. () 안의 수치는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출처: 일본 내각부, 「2023년10~12月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p. 5 <표 3-1> 및 p. 7 <표 3-3> 재구성

44) 일본은행, 「金融政策の枠組みの見直しについて」, 2024. 3. 19., https://www.boj.or.jp/mopo/mpmdeci/mpr_2024/k240319a.pdf, 검색일자: 2024. 3. 25.

[그림 3] 일본의 분기별 GDP 성장률(계절조정, 전 분기 대비) 추이

(단위: %)



출처: 일본 내각부, 「2023년10~12月四半期別GDP速報(2次速報値)」, p. 5 표 3-1 및 p. 7 표 3-3을 참고하여 작성

결정, 최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5년도에 2%의 물가안정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단기금리의 조절을 주된 정책수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예정⁴⁵⁾

- 지난 1월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⁴⁶⁾에 의하면 2%의 물가안정 목표가 안정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전망되어 마이너스 금리정책, 수익률곡선 제어정책(Yield Curve Control) 등 지금까지의 장단기 금리조절을 수반한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은 그 역할을 완수했다고 판단

- 2%의 물가안정 목표는 지속하면서 단기금리 조절을 주된 정책수단으로 변경하여 경제·물가·금융 정세에 따라 적절히 금융정책을 운영할 예정

• (금융시장 조절방침)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⁴⁷⁾를 0~0.1%*로 유지되도록 운용

* 현재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는 평균 0.077%(3.27. 기준)⁴⁸⁾

• (장기국채 매입) 지금까지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으로 장기국채 매입을 지속하고, 장기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매월 매입예정액과 관계 없이 매입액 증액 등을 실시

* 현재 장기국채의 월 매입액은 6조엔 수준

45) 일본은행은 기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약 0%로 유지되도록 장기국채 매입을 시행하고 있었음.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2023년 11월 재정동향」, p.33을 참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2023년 11월 재정동향」,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073>, 검색일자: 2024. 3. 25.

46) 지난 1월 일본은행의 경제·물가 정세 전망에 의하면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2024회계연도에는 2.4%를 나타낼 것이며, 2025년도에는 상승폭이 축소되어 1%대 후반을 나타낼 전망(출처: 일본은행, 「經濟·物價情勢の展望,(2024年 1月)」, 2024. 1. 24.,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401b.pdf>, 검색일자: 2024. 1. 29.)

47)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無担保コールレート (オーバーナイト物))는 콜시장에서 계약일에 자금을 수령 및 지급하고 다음 영업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무담보자금 대출 및 차입에 부과되는 이자율을 의미. 출처: 일본은행 홈페이지, <https://www.boj.or.jp/about/education/oshiete/seisaku/b32.htm>, 검색일자: 2024. 3. 26.

48) 일본은행, 市場開連統計 (毎営業日), https://www3.boj.or.jp/market/jp/menu_m.htm, 검색일자: 2024. 3. 28.

- (자산매입 방침) ETF 및 J-REIT⁴⁹⁾ 자산의 신규 매입을 종료하고 CP 등은 매입액을 단계적으로 감액하여 1년 후 매입을 종료



독일

- 독일 연방재무부,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6차 보고서(Sechster Bericht zur Tragfähigkeit der öffentlichen Finanzen)』 제출(2024. 3. 20.)^{50), 51)}

* 동 보고서의 목적은 독일의 공공재정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예산 및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를 진단하는 것으로 연방재무부는 입법기간마다 한 번씩 관련 정보를 제공

- 현재의 구조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 자금을 조달할 수 없으며,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으로 작용
 - 긍정적인 인구전망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은 2020년 보고서 대비 악화되었으며 주로 연방 차원의 연금보험, 건강보험, 요양보험 등 사회보험에 대한 책임과 코로나19 및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기인
- (공공지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이탈로 인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은퇴인구의 증가로 연결되고, 관련 공공지출이 비관적 가정에

서는 2022년 GDP의 27.3%에서 2070년 36.1%로 증가할 수 있음(낙관적 가정: GDP의 30.8%)

- (채무) 공공지출의 증가는 일반정부의 재정적자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며, 2070년 채무수준은 비관적 가정에서 GDP의 약 365%, 낙관적 가정에서는 GDP의 약 140%까지 증가
-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정책 영역에서의 구조적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언급

- 미래위기를 극복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재정여력을 재구축하고, 국가차원에서의 효율적 지출을 통해 공공재정의 질을 향상시켜 경제역동성과 지속가능성 강화에 기여해야 함

- 재정준칙을 준수하고 독일의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관련된 의료 지출 증가를 제한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함

- 독일 연방의회, 「성장기회법(Wachstumschancengesetz)」 승인(2024. 3. 22.)⁵²⁾

- 연방의회는 독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세금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32억유로 규모의 「성장기회법(Wachstumschancengesetz)」을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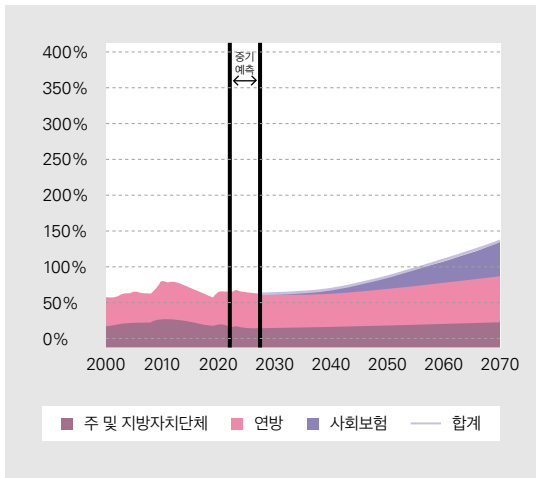
49) J-REIT는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오피스빌딩, 상업시설, 아파트 등 여러 부동산을 구입하여 그 임대 수입이나 매매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상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만 법률상 투자신탁의 일종.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REIT라는 구조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로 REIT라고 지칭하며, 일본에서는 앞에서 J를 붙인 J-REIT라고 지칭. J-REIT는 투자신탁의 일종이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2001년 9월에 처음 상장.(출처: 사단법인 투자신탁협회 홈페이지, <https://www.toushin.or.jp/reit/about/index.html>, 검색일자: 2023. 1. 26.)

50) 독일 연방재무부, "Sicherung tragfähiger öffentlicher Finanzen bleibt eine Daueraufgabe," Press Release, 2024. 3. 20.,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03/2024-03-20-bericht-zur-tragfaehigkeit-der-oeffentlichen-finanzen.html>, 검색일자: 2024. 3. 26.

51) 5차 보고서는 지난 2020년 3월 발표

[그림 4] 독일의 국가채무 전망(낙관적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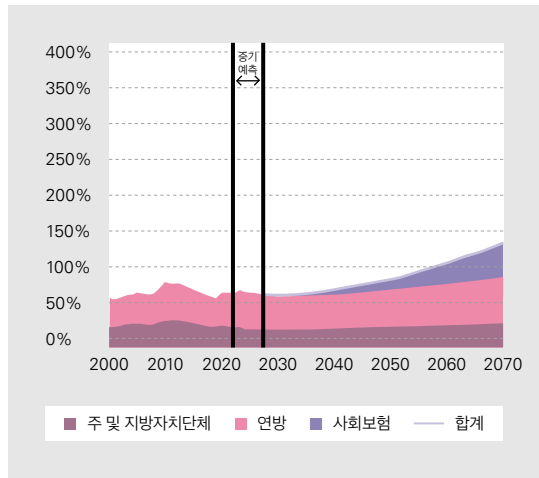
(단위: GDP 대비 %)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Sechster Bericht zur Tragfähigkeit der öffentlichen Finanzen*, 2024. 3. 20., p. 47, Abbildung15

[그림 5] 독일의 국가채무 전망(비관적 가정)

(단위: GDP 대비 %)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Sechster Bericht zur Tragfähigkeit der öffentlichen Finanzen*, 2024. 3. 20., p. 47, Abbildung14

- 「성장기회법」에 대한 정부 초안은 총 63억 유로 규모의 50개의 개별조치로 구성되었으나 의회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해 중재과정에서 32억유로 규모로 조정
 - 초안은 중소기업 지원과 기후 친화적인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으나 조정과정에서 특히, 기후보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삭제됨
- (주요 내용) 연구에 대한 지원 확대, 감가상각 정률법 적용, 결혼금 공제한도 상향,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한 인센티브,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

- (연구지원 확대) 각 위탁 연구에 대한 회계처리비용(Förderfähige Aufwendungen)⁵³⁾ 지원 금액은 각 연구수당의 60%에서 70%까지 확대되고, 이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 연구수당 최대 지원 금액은 202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200만유로에서 400만유로로 증가
- (감가상각 정률법)⁵⁴⁾ 2024년 4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업의 고정 자산(동산) 항목을 구매할 때 기업은 감가상각 정률법을 선택 가능

52) 독일 연방정부, “Treibhausgasemissionen sinken deutlich”, 2024. 3. 22., <https://www.bundesrat.de/pk-top.html?id=24-1042-02>, 검색일자: 2024. 3. 27. 독일 연방정부, “Wachstumschancengesetz beschlossen”, 2024. 3. 22.,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aktuelles/wachstumschancengesetz-2216866>, 검색일자: 2024. 3. 27.

53) 연구수당은 농업, 임업, 산업 등 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가 연구개발프로젝트 범주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액은 연구개발프로젝트의 회계처리비용에 따라 달라지는데, 회계처리비용은 소득세법 제38조 1항에 따라 고용주로부터 직접 받는 급여세 공제 대상 직원의 임금과 해당 직원의 일자리 보장을 위한 고용주의 비용임

54)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기업에 세금 감면을 제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의 고정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 감가상각 정률법을 도입·적용하였으며, 취득 또는 생산비용의 최대 25%

- (현황 기준과세(Ist-Besteuerung)⁵⁵⁾ 매출 한도 상향) 2024년부터 현황 기준과세 대상 기준이 전년도 매출액 60만 미만에서 80만유로로 미만으로 상향
- (수익잉여신고 기준한도 상향) 2024년부터 전년도 매출액 기준은 60만→80만유로로 상향, 이익한도 역시 6만→8만유로로 상향
- (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2024~2027년 과세연도에는 결손금에 대해 총소득 70%까지 공제 가능(기존 60%)
- 태양광 발전 시스템 및 저장 시스템 건설에 대한 세금 감면, 건설 산업에 대한 감가상각 규정 간소화, 2028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등의 조치를 함께 시행
- GDP 대비 재정지출의 비중이 57%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특히 사회지출의 비중이 높음
- GDP 대비 공공채무는 유로존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
- 독일과 프랑스의 2001년 GDP 대비 공공채무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격차가 점차 확대됨
 - 다른 유럽 국가들처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였지만, 위기 이후에도 재정지출이 감소하지 않아 채무가 계속 증가함
- 다만, 강력한 재정지출의 영향으로 2017~2024년 프랑스의 누적 성장률은 유럽 주요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음

- 프랑스의 조세부담률이 이미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세금 인상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전략으로 고려할 수 없음
- GDP 대비 재정적자를 2027년 3%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재정 전략이 필요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인 지원 조치의 종료
 - 2024년도 예산법안 100억유로 규모의 지출 취소
 - 세수 전망 변경에 대응해 2024년 여름 수정



프랑스

-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부 장관,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2024년도 예산법안의 지출 취소와 관련한 정책 설명(2024. 3. 6.)^{56), 57)}
 - 프랑스는 현재 GDP 대비 재정지출 비중과 공공채무가 매우 높은 수준

55) 판매세법(Umsatzsteuergesetz, UStG) 20조 1항에 따르면 기업은 전년도 총 매출액이 특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담당 세무서에서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총 매출액은 동법 19조 3항에 따라 계산됨

56) 프랑스 상원, "Audition de MM. Bruno Le Maire, minist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et Thomas Cazenave, ministre délégué auprès du ministre de l'économie, des finances et de la souveraineté industrielle et numérique, chargé des comptes publics," 2024. 3. 6., <https://www.senat.fr/compte-rendu-commissions/20240304/finc.html#toc6>, 검색일자: 2024. 3. 25.

57) 2024년도 예산법안의 지출 취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동향」 2024년 2월호를 참고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예산법안 발표

- 2025년도 예산법안에서 다양한 부문에 걸쳐 지출 재검토 시행
-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
 - 연금 개혁을 지속하고, 기업 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많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

■ 토마스 카제나브 프랑스 공공회계부 장관,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2025년 예산 절감 노력은 예상보다 더 클 것이라고 발표(2024. 3. 6.)⁵⁸⁾

- 2024년 예산법안의 100억유로 규모 지출 취소에 이어 2025년 예산 절감액은 당초 예상했던 120억유로보다 큰 200억유로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
- 2024년 경제성장률이 1.4%에서 1%로 하향 조정되면서, 2027년 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미만⁵⁹⁾으로 낮추기 위해 2025년에 필요한 재정절감 노력이 증가했다고 설명
- 중앙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보장부문 예산에서도 재정절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



영국

[예산·결산 등]

■ 영국 재무부, 2024-25회계연도 봄 예산안(Spring Budget) 발표(2024. 3. 6.)⁶⁰⁾

- (경제 전망) 2024년 1분기에 경제성장이 회복되고 연중 강화됨에 따라, 영국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등 외부 충격으로부터 벗어나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
- (경제성장률)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0.8%, 2025년 1.9% 전망
 - 2023년 실질 기업 투자가 6.1% 증가하는 등 기업 투자가 팬데믹 위기에서 크게 회복되었는데, 특히 주요 공장 및 기계 투자에 대한 100% 자본공제⁶¹⁾ 혜택을 통한 지원이 크게 기여
- (물가) 물가상승률은 2024년 2.2%, 2025년 1.5% 전망
 -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정부의 재정정책에 힘입어, 예상보다 약 1년 빠른 2024년

58) 프랑스 상원, "Le ministre délégué aux Comptes publics Thomas Cazenave a annoncé devant les commissions des finances du Parlement que l'effort budgétaire l'an prochain sera plus conséquent que prévu. Les économies à trouver se chiffreront à 20 milliards d'euros, à répartir entre l'État et la Sécurité sociale." 2024. 3. 6., <https://www.publicsena.fr/actualites/economie/budget-2025-les-economies-seront-proches-de-20-milliards-deuros-et-non-plus-12-milliards-annonce-thomas-cazenave>, 검색일자: 2024. 3. 27.

59) EU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의 GDP 대비 재정적자 기준

60)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4," Policy paper, 2024. 3. 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pring-budget-2024>, 검색일자: 2024. 3. 8.

61) Full expensing: 정부는 2023년 3월 봄 예산안에서 2023. 4. 1.~2026. 3. 31. 동안 한시적으로 적격 주요 공장과 기계 투자 시 첫 해에 100% 자본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특별 공제율(6%)이 적용되었던 자산에 대해서는 50% 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는데, 2023년 11월 가을 보고서를 통해서 이를 영구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

- 2분기에 2%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도매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2024년 4월에 OFGEM⁶²⁾이 평균 가구당 에너지 가격 상한⁶³⁾을 1,690파운드로 200파운드 낮추었는데, 이는 2분기 물가 상승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노동시장) 실업률은 2024년 4.4%에서 2028년 4.1%까지 하락하고, 고용자 수는 2024년 3,320만명에서 2028년 3,43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비경제활동 인구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건강 문제(질병, 건강 악화 등)로 인한 비경제활동의 증가가 계속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
- (재정 전망) 2024-25회계연도의 총관리지출은 1조 2,260억파운드(GDP 대비 44%), 공공 부문 경상수입은 1조 1,390억파운드(GDP 대비 40.9%) 전망
- (순차입) GDP 대비 공공부문 순차입은 2023-24회계연도에 4.2%에서 2028-29회계연도에는 1.2%로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해당 기간 감소폭 2.9%p 중 수입 증가가 0.9%p, 지출 감소가 2.1%p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채무) 중앙은행을 제외한 GDP 대비 공공부문 순채무는 2027-28회계연도에 93.2%로, 정점에 이르고 2028-29회계연도에 92.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정책) '장기 성장을 위한 예산(Budget for Long Term Growth)'을 통해 세금 감면, 공공서비스 개선,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공공재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준수
- (세금 감면) 경기가 회복되고 GDP 대비 채무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에 대한 보상, 성장 촉진, 생활비 지원 등 근로자를 위한 감세 조치를 시행
- 근로자의 국민보험료 기본요율을 1월에 12%에서 10%로, 2%p 인하한 데 이어 4월에 8%로, 2%p 추가 인하하는 등의 정책 시행
- (공공서비스 개선) 국가의료서비스(NHS)에

<표 9> 주요 경제전망

(단위: %, 백만명)

구분	실적	전망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실질 GDP 성장률	4.3	0.3	0.8	1.9	2.0	1.8	1.7
소비자물가(CPI) 상승률	9.1	7.3	2.2	1.5	1.6	1.9	2.0
고용자 수	32.9	33.1	33.2	33.5	33.8	34.1	34.3
실업률	3.9	4.1	4.4	4.4	4.2	4.2	4.1

출처: HM Treasury, Spring Budget 2024, 2024. 3. p. 20, Table 1.2 발췌

62)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영국의 에너지 규제기관

63) 영국은 에너지 가격 보증제(Energy Price Guarantee)를 통해 가정용 에너지 연간 요금에 상한을 두고 있는데, OFGEM이 3개월마다 에너지 공급자의 에너지 단위당 청구가격을 검토하고 단위당 요금과 기본요금을 조정하여 에너지 연간 요금이 상한을 넘지 않게 설정

<표 10> 주요 재정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GDP 대비 %)

구분	실적	전망					
	2022-23 회계연도	2023-24 회계연도	2024-25 회계연도	2025-26 회계연도	2026-27 회계연도	2027-28 회계연도	2028-29 회계연도
수입·지출							
공공부문 경상수입 ¹⁾	1,029	1,102	1,139	1,174	1,222	1,272	1,322
(GDP 대비 %)(a)	(40.3)	(40.4)	(40.9)	(40.8)	(40.9)	(41.1)	(41.2)
총관리지출(TME) ¹⁾	1,157	1,216	1,226	1,252	1,290	1,323	1,362
(GDP 대비 %)(b)	(45.3)	(44.5)	(44.0)	(43.5)	(43.2)	(42.8)	(42.5)
공공부문 경상지출(c)	41.2	39.6	39.1	38.9	38.8	38.5	38.4
공공부문 순투자(d)	1.8	2.5	2.4	2.1	2.0	1.8	1.7
감가상각(e)	2.4	2.4	2.5	2.5	2.4	2.4	2.4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a)	5.0	4.2	3.1	2.7	2.3	1.6	1.2
경기조정 순차입	5.9	4.3	2.7	2.3	2.1	1.6	1.2
경상예산 적자(c+e-a)	3.2	1.7	0.7	0.6	0.3	-0.2	-0.4
채무							
공공부문 순채무(중앙은행 제외) ²⁾	84.9	88.8	91.7	92.8	93.2	93.2	92.9
공공부문 순채무 ²⁾	95.7	97.6	98.8	96.4	95.5	95.1	94.3

주: 1) 단위는 십억파운드

2) 3월 말 기준, GDP는 3월 말에 중심화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 March 2024, 2024.3., p.150, p.152, p.154, Table A.5, Table A.7, Table A.9 발췌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부문 생산성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첫 단계에 돌입

- 공공부문 생산성 계획(Public Sector Productivity Plan)을 수립하여 42억파운드를 투자하고, 더 나은 기술을 통해 공공서비스 제공 및 관리 업무를 개선

- (투자 활성화) 창조산업, 제조업, 녹색산업, 생명과학 부문 등에 대한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고, 모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계획을 수립

- 창조 산업을 위해 10억파운드 이상의 세금 경감, 자동차 및 항공우주 R&D 프로젝트

에 2억 7천만파운드 투자 등의 정책 시행 - (지속가능한 공공재정) ‘장기 성장을 위한 예산’은 책임 있는 방식으로 세금 감면, 공공서비스 개선, 투자 활성화에 투입되어 재정 준칙이 충족될 것으로 전망

- 중앙은행을 제외한 공공부문 순채무는 전망 5년차인 2028-29회계연도에 GDP 대비 92.9%로 전년 대비 0.3%p 감소할 것으로 전망(채무준칙⁶⁴⁾ 충족

- 공공부문 순차입은 2025-26회계연도에 GDP 대비 2.7%로, 계획 보다 3년 일찍 3%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재정수지준칙 충족)

64) 영국의 채무준칙: 전망기간의 5년차인 2028-29회계연도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감소EU의 채무준칙: GDP 대비 채무 비율은 60% 초과 금지

- 2024-25회계연도의 복지지출 상한은 74억 파운드 초과될 것으로 전망(복지지출 상한 미충족)

■ 영국 재무부, 『2021-22회계연도 공공부문 결산 보고서(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1-22)』⁶⁵⁾ 발표(2024. 3. 26.)⁶⁶⁾

- (당기 순지출) 2021-22회계연도 당기 순지출은 3,596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448억파운드 감소하였으나, 팬데믹 위기 이전인 2019-20회계연도의 1,918억파운드 대비 여전히 큰 수치를 기록(<표 11> 참고)
- (공공서비스 순지출) 2021-22회계연도의

순지출은 전년 대비 1,687억파운드 감소한 1,628억파운드를 기록

- 총지출은 전년 대비 186억파운드 감소, 총 수입은 1,501억파운드 증가*

* 팬데믹 위기 대응으로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제도(CJRS)⁶⁷⁾, 자영업 소득지원제도(SEISS)⁶⁸⁾의 경우 지원금에 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수급한 경우 소득세로 환수 조치됨에 따른 영향 등을 포함

- (장기 부채 금융 비용) 2021-22회계연도 장기 부채 금융 비용은 전년 대비 1,415억파운드 증가한 1,972억파운드를 기록

- 이는 2021-22회계연도에 총당금의 단기, 중기, 장기 할인율이 모두 인상되어 총당금⁶⁹⁾이 증가한 영향이 컸기 때문

<표 11> 수입 및 지출

(단위: 십억파운드)

항목	2020-21회계연도	2021-22회계연도
공공서비스 총지출(Total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 [a]	1,063.0	1,044.4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	258.4	259.7
인건비(Staff costs)	253.5	284.5
재화, 서비스 구매 및 기타 지출(Purchase of goods, services and other expenditure)	258.7	256.2
교부금 및 보조금(Grants and subsidies)	197.2	121.0
감가상각 및 감손(Depreciation and impairment)	61.9	47.9
차입이자(Interest costs on government borrowing)	21.2	47.1
기타(Other)	32.1	28.0
공공서비스 총수입(Total public services revenue) [b]	731.5	881.6
조세수입(Taxation revenue)	650.7	774.7
기타수입(Other revenue)	80.8	106.9
공공서비스 순지출(Net expenditure on public services) [a-b]	331.5	162.8
장기 부채 금융 비용(Financing costs of long-term liabilities, including discounting) [c]	55.7	197.2
금융 자산·부채의 재평가(Revaluation of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d]	17.2	-0.4
당기 순지출(Net expenditure for the year) [a-b+c+d]	404.4	359.6

출처: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1-22*, 2024. 3. p. 113, 저자 재구성

65)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 영국 공공부문의 1만개 이상 기관에 대한 통합 감사 회계보고서

66)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1-22," 2023. 3. 2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hole-of-government-accounts-2021-22>, 검색일자: 2024. 3. 28.

67)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 정부가 고용주들에게 노동자 임금의 최대 80%를 지원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 고용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2020년 3월 도입, 2021년 9월 30일 종료)

68) 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정부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3년간 평균 월수익의 80%, 3달치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2020년 3월 도입, 2021년 9월 30일 종료)

69) provision: 차기 이후의 지출할 것이 확실한 특정 비용에 대비하여 미리 그 이전에 각 기간의 대차대조표 부채항목에 미리 계상하는 금액

<표 12> 자산 및 부채

(단위: 십억파운드)

항목	2020-21회계연도	2021-22회계연도
총자산(Total assets) [a]	2,206.7	2,414.3
유형고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	1,270.3	1,340.4
기타 금융자산(Other financial assets)	605.7	724.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Trade and other receivables)	202.9	215.6
기타 자산(Other assets)	127.8	133.5
총부채(Total liabilities) [b]	5,533.0	6,289.2
공공부문연금(Public sector pension schemes)	2,306.2	2,639.1
정부 차입(Government borrowings)	1,520.3	1,575.7
기타 금융부채(Other financial liabilities)	1,118.8	1,334.0
충당금(Provisions)	366.4	527.8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Trade and other payables)	221.3	212.6
순부채(Net liabilities) [b-a]	3,326.3	3,874.9

출처: HM Treasury, *Whole of Government Accounts, 2021-22, 2024. 3.*, pp. 115~116, 저자 재구성

- (순부채) 2021-22회계연도의 순부채는 전년 대비 5,486억파운드 증가한 3조 8,749억파운드를 기록(<표 12> 참고)
 - (총자산) 2021-22회계연도 총자산은 2조 4,143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2,076억파운드 증가
 - (총부채) 2021-22회계연도 총부채는 6조 2,892억파운드로 전년 대비 7,562억파운드 증가

[기타]

- 영국 노동·연금부, 2022-23회계연도 생활비 지원 정책의 영향에 대해 발표(2024. 3. 21.)⁷⁰⁾
 - (배경) 영국은 글로벌 공급망 부족과 우크라이나

- 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에 대응해 2022-23회계연도에 여러 가지 생활비 지원 정책을 시행
 - 생활비 지원 정책에는 생활비 보조금, 장애인 생활비 보조금, 연금수급자 생활비 보조금, 에너지 요금 지원, 동절기 난방 지원, 지방세 환급(council tax rebate) 등을 포함
- (주요 내용) 2022-23회계연도에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에 있는 인구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생활비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그 증가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 빈곤) 2022-23회계연도의 생활비 지원 정책으로 인해 주거비 지출 전, 상대적 빈곤에 있는 인구는 60만명(1%) 감소

70)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Cost of Living Support – impact on Households Below Average Income FYE 2023 low-income statistics," Research and analysis, 2024. 3. 2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st-of-living-support-impact-on-households-below-average-income-fye-2023-low-income-statistics>, 검색일자: 2024. 3. 26.

<표 13> 2022-23회계연도의 생활비 지원 정책의 영향

(단위: 백만명, %)

구분			2021-22회계연도	2022-23회계연도		
				생활비 지원 정책 O	생활비 지원 정책 X	생활비 지원 정책 영향
상대적 빈곤	주거비 지출 전	인구	11.0	11.4	12.0	-0.6
		비중	17	17	18	-1
	주거비 지출 후	인구	14.4	14.3	15.1	-0.8
		비중	22	21	23	-1
절대적 빈곤	주거비 지출 전	인구	8.9	9.5	10.7	-1.2
		비중	13	14	16	-2
	주거비 지출 후	인구	11.4	12.0	13.3	-1.3
		비중	17	18	20	-2

출처: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Cost of Living Support - impact on HBAI FYE 2023 low-income statistics," 2024. 3. 21. p. 3, Table 1.

- (절대적 빈곤) 2022-23회계연도의 생활비 지원 정책으로 인해 주거비 지출 전, 절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인구는 120만명(2%) 감소

9,900만호주달러, 총수입(total revenue)은 전분기 대비 8.7% 증가한 2,390억 3,100만 호주달러를 기록

- 총비용(total expenses)은 전분기 대비 3.1% 증가한 2,367억 8,400만호주달러로 집계됨
-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순운영수지(net operation balance)는 22억 4,700만 호주달러, 여기서 비금융자산 순취득을 차감한 순차입은 122억 9,800만호주달러를 기록



호주

■ 호주 통계청, 2023년 4분기 정부재정통계 발표 (2024. 3. 5.)⁷¹⁾

- 호주 일반정부의 2023년 4분기 세입(taxation revenue)은 전분기 대비 13.1% 증가한 2,015억

■ 호주 통계청, 2023년 4분기 국민계정 발표 (2024. 3. 6.)⁷²⁾

<표 14> 2023년 4분기 정부재정통계(일반정부)

(단위: 백만호주달러, %)

구분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4분기	전분기 대비
세입(Taxation revenue)	181,098	224,024	178,248	201,599	13.1
총수입(Total revenue)	222,869	265,579	219,868	239,031	8.7
총비용(Total expenses)	216,399	233,702	229,665	236,784	3.1
GFS 순운영수지(Net operation balance)	6,470	31,878	-9,796	2,247	-
GFS 순융자/차입(Net lending(+)/borrowing(-))	-5,642	9,285	-21,035	-12,298	-

출처: 호주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ustralia," 2024. 3. 5.

71) 호주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ustralia," 2024. 3. 5.,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government/government-finance-statistics-australia/dec-2023>, 검색일자: 2024. 3. 25.

72) 호주 통계청,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2024. 3. 6.,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national-accounts/australian-national-accounts-national-income-expenditure-and-product/dec-2023>, 검색일자: 2024. 3. 20.

<표 15> 호주의 2023년 4분기 국민계정

(단위: %, 계절조정)

구분	전 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최종소비지출(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0.2	0.9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0.6	2.7
가계(Households)	0.1	0.1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0.2	6.7
재고증감(Changes in inventories)	na	na
국민총지출(Gross national expenditure)	-0.2	1.3
수출(Exports of goods and services)	-0.3	4.2
수입(Imports of goods and services)	-3.4	3.5
통계적불일치(Statistical discrepancy)	na	na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0.2	1.5

출처: 호주 통계청,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National Income, Expenditure and Product," 2024. 3.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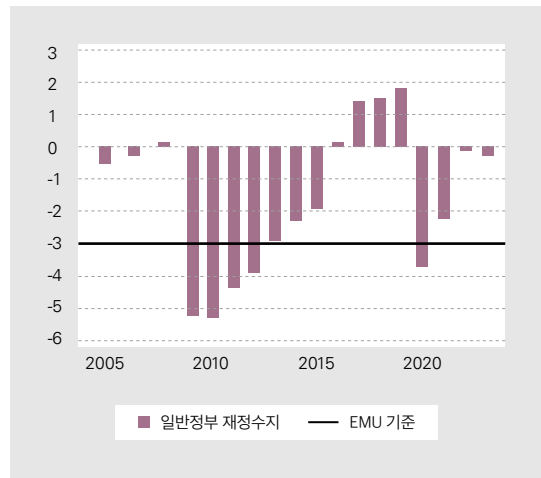
- 호주 경제성장률(계절조정)은 2023년 연간 1.5%, 4분기 0.2%를 기록
 - 가계 최종소비지출은 전분기 대비 0.1% 증가
 -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전분기 대비 0.6% 증가
 - 민간 투자 및 공공 투자는 전분기 대비 각각 0.2% 감소
 - 수출은 전분기 대비 0.3% 감소, 수입은 전분기 대비 3.4% 감소

유로(GDP 대비 0.3%)로 집계되었으며, 일반정부 총부채는 4,810억유로(GDP 대비 46.5%)로 집계됨

- (재정수지) 2023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그림 6] 네덜란드 일반정부 재정수지(2005~2023년)

(단위: GDP 대비 %)



출처: 네덜란드 통계청, "Overheidstekort 2023 uitgekomen op 0,3 procent bbp," 2024. 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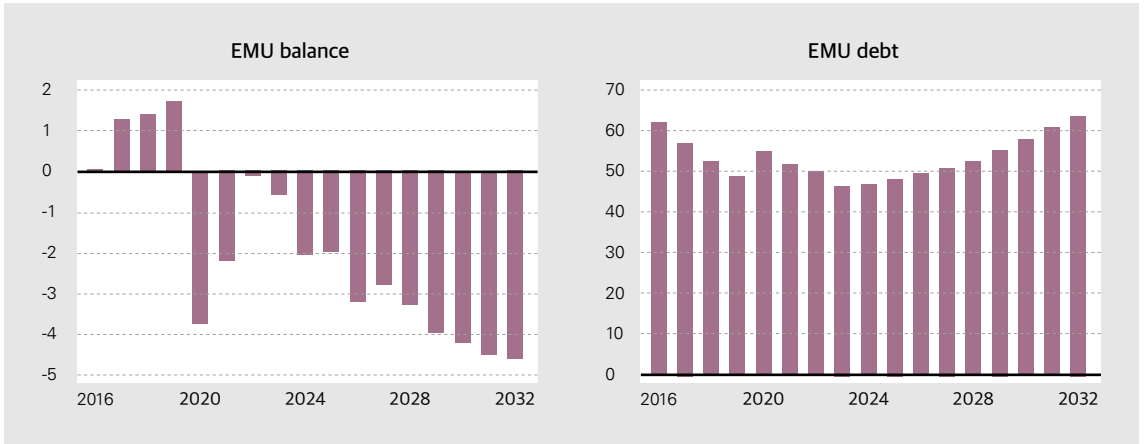
[예산·결산 등]

- 네덜란드 통계청(CBS), 2023년도 일반정부 재정 통계 발표(2024. 3. 25.)⁷³⁾
 - 2023년 네덜란드의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35억

73) 네덜란드 통계청, "Overheidstekort 2023 uitgekomen op 0,3 procent bbp," 2024. 3. 25., <https://www.cbs.nl/nl-nl/nieuws/2024/13/overheidstekort-2023-uitgekomen-op-0-3-procent-bbp>, 검색일자: 2024. 3. 27.

[그림 7] 네덜란드 EMU 재정수지 및 정부채무 전망(2016~2032년)

(단위: GDP 대비 %)



주: 왼쪽 그림은 GDP 대비 EMU 재정수지 비율이며 오른쪽 그림은 GDP 대비 EMU 기준 국가채무 비율을 나타냄
출처: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Raming februari 2024(CEP 2024)," 2024.2.14.

- 2022년(GDP 대비 0.1%) 대비 약간 높은 수준
- (총부채) 2023년 일반정부 총부채 규모는 2022년과 비슷하나 GDP 대비 비율(2022년 50.1%)은 하락
- 2023년 네덜란드의 일반정부 재정수입은 4,459억 100만유로, 일반정부 재정지출은 4,494억 5천만유로로 집계됨⁷⁴⁾
- (수입) 2022년 대비 수입은 7% 증가하였으며, 근로 및 소득세의 증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출) 2022년 대비 지출은 8% 증가하였으며, 보건을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 지출의 증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남

[기타]

-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CPB), 『중앙 경제계획 2024년 2월』 보고서 발표(2024. 2. 22.)⁷⁵⁾
- (정부 재정) CPB는 동 보고서에서 2032년까지 정부재정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EU의 재정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향후 경로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
- 2024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세수의 약화로 인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현행 정책을 바탕으로 2032년까지 전망한 결과,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8년

74) 네덜란드 통계청이 발표하는 일반정부 수입과 지출은, EMU 관련 일반정부 수입과 지출만을 계상하는 네덜란드 예산안의 수입과(순)지출과는 집계기준이 다르며 그 규모 및 범위가 예산안의 수입 및(순)지출 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됨. IMF Fiscal Monitor의 일반정부 수입 및 지출의 수치는 네덜란드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와 양립 가능하여 일반적인 의미의 총지출 및 총수입의 의미에 보다 부합하는 자료는 네덜란드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로 보임. 따라서 통계청의 수입 및 지출 실적치와 예산안의 수입 및 지출 수치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며, 예산안과 실적치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5월에 발표되는 결산보고서를 참조해야 함

75) 네덜란드 중앙정책기획국, "Raming februari 2024(CEP 2024)," 2024. 2. 22., <https://www.cpb.nl/sites/default/files/omnidownload/CPB-Raming-Centraal-Economisch-Plan-CEP2024.pdf>, 검색일자: 2024. 2. 23.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3.3%, 2032년에는 4.6%로 증가하여 EU의 3%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2032년 63.5%로 증가하여 EU의 60%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스웨덴

- 스웨덴 재무부, 스웨덴 경제에 대한 현황 및 새로운 전망 발표(2024. 3. 20.)⁷⁶⁾
 - 스웨덴의 인플레이션은 확실하게 완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데 도움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Reduktionsplikt)와 유류세 인하로 연료 가격이 낮아진 동시에 전기요금도 1년 전보다 하락했기 때문
- 근원물가지수는 하락하였으나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수준
-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지수가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스웨덴은 올해 중 인플레이션 목표인 2%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
- 스웨덴 재무부는 2024년 스웨덴의 GDP가 0.7%, 2025년에는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스웨덴 경제활동은 한동안 침체되어 왔으며 민간 소비와 주택 투자 등 금리에 민감한 경

〈표 16〉 2023~2027년 스웨덴 주요 경제 지표 전망

(단위: %)

기준 일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3. 12. 23.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7.6	3.0	2.0	2.0	-
	CPIF	6.1	2.7	1.7	2.0	-
	CPIF-XE	8.7	3.9	1.4	1.6	-
	민간소비	-2.4	0.6	3.5	4.2	-
	GDP	-0.5	0.6	2.7	3.2	-
	실업률	7.7	8.4	8.5	7.6	-
2024. 3. 5.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7.5	2.7	2.0	2.0	2.0
	CPIF	6.0	2.1	1.7	2.0	2.0
	CPIF-XE	8.5	3.1	0.8	1.6	2.1
	민간소비	-2.5	1.2	3.2	4.1	3.4
	GDP	-0.2	0.7	2.5	3.2	2.4
	실업률	7.7	8.3	8.4	7.8	7.6

주: 스웨덴 통계청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인플레이션 측정치를 계산.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일반적인 척도로 사용되고, CPI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는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는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뱅크(Riksbank)의 통화정책 목표변수로 사용. CPI와 CPIF의 차이점은 CPIF에서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고, 이로 인하여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의 영향이 CPIF가 아닌 CPI에만 반영됨. 또한 에너지요금을 제외한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XE)도 인플레이션의 척도로 자주 사용(「재정동향」 2024년 1월호 참고)

출처: Finansminister Elisabeth Svantesson, "Ekonomiska läget och utsikter," 2024.3.20., Nyckeltalstabell VÅP24(Dec23 i kursivt) 참고하여 작성성(<https://www.regeringen.se/contentassets/eee8801b024949cd838a8a0aa0a2a603/presentationbilder-fran-presstraffen-den-20-mars-2024/>, 검색일자: 2024. 3. 21.)

76) 스웨덴 재무부, "Inflationen i Sverige har fallit tillbaka tydligt," 2024. 3. 20.,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3/inflationen-i-sverige-har-fallit-tillbaka-tydligt/>, 검색일자: 2024. 3. 21.

- 제 부문이 GDP 성장에 부담을 줌
 - 올해는 성장률이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경제는 침체에 있는 것으로 여겨짐
- 스웨덴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수요가 낮고, 파산하는 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수요 약세로 인하여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2024년에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업률은 2024년 8.3%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노동시장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2025년에도 실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부 장관은 “스웨덴의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하락하고 있으나 여전히 성장세가 약하고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며,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늘어나지만 다시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언급

재정포럼

2024년 4월호 통권 제334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원종학(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권성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신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지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송경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장정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제작 장은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전문원)

월간 재정포럼

2024년 4월 15일 발행 / 통권 제334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37 / **E-mail:** pub@kipf.re.kr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044)-414-2137
- FAX:(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